목 차

정 정 신 고 (보고) 1
투 자 설 명 서 7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77
【 본 문 】 79
요약정보 79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92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92
1. 공모개요 92
2. 공모방법 94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0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2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37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44
III. 투자위험요소 147
1. 사업위험 149
2. 회사위험 166
3. 기타위험 177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97
V. 자금의 사용목적 248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57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258
I. 회사의 개요 258
1. 회사의 개요 258
2. 회사의 연혁 264
3. 자본금 변동사항 267
4. 주식의 총수 등 268
5. 정관에 관한 사항 270
II. 사업의 내용 272
1. 사업의 개요 273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275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276
4. 매출 및 수주상황 277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280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283
7. 기타 참고사항 286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12
1. 요약재무정보 312
2. 연결재무제표 313
3. 연결재무제표 주석 313
4. 재무제표 314
5. 재무제표 주석 319
6. 배당에 관한 사항 374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377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377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379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380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386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386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388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389
1. 이사회에 관한 사항.....389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394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399
VI. 주주에 관한 사항.....403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405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405
2. 임원의 보수 등.....408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411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412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13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41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41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413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414
XI. 상세표.....418
【 전문가의 확인 】.....419
1. 전문가의 확인.....419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419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4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4월 13일

3. 정정사유 : 공모가격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굵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 모집(매출)가액(예정): 11,000원 ~ 14,000원 - 모집(매출)총액(예정): 19,524,637,000원 ~ 24,849,538,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443,742주 ~ 532,49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242,477주 ~ 1,331,225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0% ~ 30.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0% ~ 75.00%	- 모집(매출) 확정가액: **17,000원** - 모집(매출) 확정총액: **30,174,439,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443,742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331,225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0%**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주2>	<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주3>	<주3>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주4>	<주4>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5>	<주5>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주6>	<주6>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주7>	<주7>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3.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바. 인수인과 일반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	<주8>	<주8>
4. 종합평가결과 - 가. 평가결과	<주9>	<주9>
4. 종합평가결과 - 다. 희망 공모가액의 결정	<주10>	<주10>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주11>	<주11>
2. 자금의 사용목적	<주12>	<주12>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1,774,967	500	11,000	19,524,637,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1,774,967	19,524,637,000	904,967,415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04.19 ~ 2022.04.20	2022.04.22	2022.04.19	2022.04.22	-

주1)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종합평가 결과』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1,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포바이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2년 04월 19일 ~ 04월 20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2년 04월 19일 ~ 04월 20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2년 04월 19일 ~ 20일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0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년 03월 1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외 대표주관회사를 대상으로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성과수수료를 총 조달금액의 1.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0)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11)	비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53,250주	585,75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 계		53,250주	585,75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1,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1,000원 기준 53,25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1,774,967	500	17,000	30,174,439,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1,774,967	30,174,439,000	1,398,586,005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04.19 ~ 2022.04.20	2022.04.22	2022.04.19	2022.04.22	-

주1)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4. 종합평가 결과』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포바이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2년 04월 19일 ~ 04월 20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2년 04월 19일 ~ 04월 20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2년 04월 19일 ~ 20일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0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년 03월 1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0)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11)	비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53,250주	905,25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 계		53,250주	905,25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 17,000원 기준**입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확정공모금액17,000원**기준 53,25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포바이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590,000주(공모주식의 89.6%), 구주매출 184,967주(공모주식의 10.4%)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1,774,967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774,967주	10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443,742 주 ~ 532,490 주	25.00% ~ 30.00%	11,000원 (주1)	4,881,159,250원 ~ 5,857,391,100원	-
기관투자자	1,242,477 주 ~ 1,331,225 주	70.00% ~75.00%		13,667,245,900원 ~ 14,643,477,75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	1,774,967 주	100.00%		19,524,637,000원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1,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일반투자자	397,500 주 ~ 477,000 주	25.00% ~ 30.00%	11,000원	4,372,500,000 원 ~ 5,247,000,000 원	-
기관투자자	1,113,000 주 ~ 1,192,500 주	70.00% ~75.00%		12,243,000,000 원 ~ 13,117,500,000 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590,000주	100.00%		17,490,000,000 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주당모집가액	배정비율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590,000 주	11,000 원	100%	17,490,000,000 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원)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97,500 주 ~ 477,000 주	11,000 원	4,372,500,000 원 ~ 5,247,000,000 원

주3)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주5)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각각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주6)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7)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1,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184,967 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84,967 주	100.00%	-

【참조】 매출세부내역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공모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46,242 주 ~ 55,490 주	25.00% ~ 30.00%	11,000 원	508,659,250 원 ~ 610,391,100 원	-
기관투자자	129,477 주 ~ 138,725 주	70.00% ~ 75.00%		1,424,245,900 원 ~ 1,525,977,750 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84,967 주	100.00%		2,034,637,000 원	-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주1)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매출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84,967 주	100.0%	11,000 원	2,034,637,000 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포함)
합계		184,967 주	100.0%		2,034,637,000 원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주2)

구분		일반청약대상 매출주식수	주당 매출가액	일반청약대상 매출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46,242 주 ~ 55,490 주	11,000 원	508,659,250 원 ~ 610,391,100 원
합계		46,242 주 ~ 55,490 주		508,659,250 원 ~ 610,391,100 원

주3)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주5)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각각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

주6) 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7) 주당 매출가액 및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1,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금번 매출 대상 184,967주는 ㈜포바이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해당하므로, 매출을 위한 별도의 위탁은 없습니다.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증권의 종류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주1)	매출후 보유증권수
㈜포바이포	본인	기명식보통주	184,967주	184,967주	-
합 계			184,967주	184,967주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미래에셋증권㈜	53,250주	11,000원	585,750,0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1,000원 ~ 14,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포바이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590,000주(공모주식의 89.6%), 구주매출 184,967주(공모주식의 10.4%)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1,774,967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774,967주	10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443,742 주	25.00%	17,000원 (주1)	7,543,614,000원	-
기관투자자	1,331,225 주	75.00%		22,630,825,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	1,774,967 주	100.00%		30,174,439,000원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일반투자자	397,500 주	25.00%	17,000 원	6,757,500,000 원	-
기관투자자	1,192,500 주	75.00%		20,272,500,000 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590,000 주	100.00%		27,030,000,000 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주당모집가액	배정비율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590,000 주	17,000 원	100%	27,030,000,000 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원)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97,500 주	17,000 원	6,757,500,000 원

주3)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주5)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각각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주6)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7)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184,967 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84,967 주	100.00%	-

【참조】 매출세부내역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공모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46,242 주	25.00%	17,000 원	786,114,000 원	-
기관투자자	138,725 주	75.00%		2,358,325,000 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84,967 주	100.00%		3,144,439,000 원	-

주1)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매출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84,967 주	100.0%	17,000 원	3,144,439,000 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포함)
합계		184,967 주	100.0%		3,144,439,000 원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주2)

구분		일반청약대상 매출주식수	주당 매출가액	일반청약대상 매출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46,242 주	17,000 원	786,114,000 원
합계		46,242 주		786,114,000 원

주3)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주5)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각각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

주6) 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7) 주당 매출가액 및 매출총액은**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금번 매출 대상 184,967주는 ㈜포바이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해당하므로, 매출을 위한 별도의 위탁은 없습니다.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증권의 종류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주1)	매출후 보유증권수
㈜포바이포	본인	기명식보통주	184,967주	184,967주	-
합 계			184,967주	184,967주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미래에셋증권㈜	53,250주	17,000원	905,250,0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11,000원 ~ 14,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포바이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 결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11,000원 ~ 14,000원
주당**확정**공모가액	**1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 상기 주당**확정공모가액은**㈜포바이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 결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기재사항 추가)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주1)	거래실적(무)	
건수	268	217	274	914	69	151	1,893
수량	354,038,000	284,460,000	357,742,000	1,188,345,000	73,587,000	199,692,000	2,457,864,000
경쟁률	265.95	213.68	268.73	892.67	55.28	150.01	1,846.32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주1)		거래실적(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250	330,518,000	211	278,042,000	264	346,475,000	880	1,146,933,000	1	1,331,000	104	137,353,000	1,710	2,240,652,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7	9,286,000	1	1,331,000	4	3,972,000	12	14,741,000	0	0	0	0	24	29,330,000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	-	-	-	-	-	-	-	-	-	-	-	-	-
밴드하단미만	-	-	-	-	-	-	-	-	-	-	-	-	-	-
미제시	11	14,234,000	5	5,087,000	6	7,295,000	22	26,671,000	68	72,256,000	47	62,339,000	159	187,882,000
합계	268	354,038,000	217	284,460,000	274	357,742,000	914	1,188,345,000	69	73,587,000	151	199,692,000	1,893	2,457,864,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가격미제시	159	8.40%	187,882,000	7.64%

17,000원 이상	1,522	80.40%	1,999,467,000	81.35%
14,000원 초과 ~ 17,000원 미만	188	9.93%	241,185,000	9.81%
14,000원	24	1.27%	29,330,000	1.19%
11,000원 이상 ~ 14,000원 미만	0	0.00%	0	0.00%
11,000원 미만	0	0.00%	0	0.00%
합계	1,893	100.00%	2,457,864,000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주1)		거래실적(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6개월 확약	30	39,618,000	8	10,648,000	22	29,278,000	89	118,458,000	0	0	14	18,634,000	163	216,636,000
3개월 확약	104	137,748,000	48	63,150,000	50	66,517,000	276	360,963,000	2	2,662,000	42	55,498,000	522	686,538,000
1개월 확약	28	37,007,000	26	34,606,000	31	40,330,000	97	126,068,000	3	3,993,000	15	19,748,000	200	261,772,000
15일 확약	15	19,965,000	20	26,620,000	14	18,634,000	45	59,892,000	14	17,277,000	43	57,159,000	151	199,547,000
확약합계	177	234,338,000	102	135,024,000	117	154,759,000	507	665,401,000	19	23,932,000	114	151,039,000	1,036	1,364,493,000
총 참여건수 및 수량 대비 비율(%)	66.04%	66.19%	47.00%	47.47%	42.70%	43.26%	55.47%	55.99%	27.54%	32.52%	75.50%	75.64%	54.73%	55.52%
미확약	91	119,700,000	115	149,436,000	157	202,983,000	407	522,944,000	50	49,655,000	37	48,653,000	857	1,093,371,000
합 계	268	354,038,000	217	284,460,000	274	357,742,000	914	1,188,345,000	69	73,587,000	151	199,692,000	1,893	2,457,864,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포바이포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주5>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774,967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11,000원 주1)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9,524,637,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2년 04월 19일(화)
		종료일	2022년 04월 20일(수)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2년 04월 19일(화)
		종료일	2022년 04월 20일(수)
청약 증거금 주4)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22년 4월 22일(금)

주1)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포바이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포바이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4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2년 4월 22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4월 22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②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③일반청약자는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한 청약처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④일반청약자는 청약취급처를 통해 복수 청약처에서의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의 각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미래에셋증권㈜	443,742주 ~ 532,490주	주)	50%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44,000주 ~ 52,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2,000주 ~ 26,000주 (100%)

주)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2,000주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 ~ 75.0%(1,242,477주 ~ 1,331,225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 30.0% (443,742주 ~ 532,49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 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443,742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포바이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443,742주 ~ 532,49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21,871주 ~ 266,245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2년 04월 21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의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2년 4월 22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개별통지하여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후략)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774,967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17,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30,174,439,000원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2년 04월 19일(화)
		종료일	2022년 04월 20일(수)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2년 04월 19일(화)
		종료일	2022년 04월 20일(수)
청약 증거금 주4)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22년 4월 22일(금)

주1)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포바이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포바이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4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2년 4월 22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4월 22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②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③일반청약자는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한 청약처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④일반청약자는 청약취급처를 통해 복수 청약처에서의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의 각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미래에셋증권㈜	443,742주	주)	50%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44,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2,000주 (100%)

주)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2,000주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 (1,331,225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443,742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 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443,742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주)포바이포 공모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물량이 없으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443,742주 이외의 추가 배정은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포바이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443,742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21,871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2년 04월 21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의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2년 4월 22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개별통지하여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

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후략)

<주6>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단위: 원)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	인수금액	인수 조건
구분	명칭	주소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기명식 보통주 1,774,967주	19,524,637,000원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1,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원)

구분	인수인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증권㈜	904,967,415 원	대표주관회사

주1)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1,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총 조달금액의 1.5%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포바이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53,250 주	585,750,000 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발행회사인 ㈜포바이포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1,000원 ~ 14,000원의 최저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53,25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보호예수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는 당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보통주식 108,7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 내역】

주주명	구 분	주식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지분율 (공모 전)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의무보유 기간
미래에셋증권(주)	상장주선인	기명식보통주	2021년 09월 10일	108,700주	1.27%	9,200원	1,000,040,000 원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1)

주1)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가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주식 108,7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5호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합니다.

주2)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9,2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11,000원과의 괴리율은 19.57%, 최고가액인 14,000원과의 괴리율은 52.17%입니다.

인수인	증권의 종류	희망 공모가액	취득가액	괴리율	비고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1,000원~14,000원	9,200원	19.57%~52.17%	-

주1)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27%(공모 후 1.06%, 의무인수분 53,250주 0.52% 별도)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미래에셋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

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상장주선인의 내부통제 기준]

제52조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관리)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①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

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③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업실사 절차, 조사·검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업실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 시 회사와 주관회사 간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단위: 원)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	인수금액	인수 조건
구분	명칭	주소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기명식 보통주 1,774,967주	30,174,439,000원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기준입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원)

구분	인수인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증권㈜	1,398,586,005 원	대표주관회사

주1)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포바이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53,250 주	905,250,000 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발행회사인 ㈜포바이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53,25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보호예수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는 당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보통주식 108,7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 내역】

주주명	구 분	주식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지분율 (공모 전)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의무보유 기간
미래에셋증권(주)	상장주선인	기명식보통주	2021년 09월 10일	108,700주	1.27%	9,200원	1,000,040,000 원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1)

주1)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가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주식 108,7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5호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은 17,000원으로 괴리율이 84.78%인 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2)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9,2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과의 괴리율은 84.78% 입니다.**

인수인	증권의 종류	**확정** 공모가액	취득가액	괴리율	비고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7,000 원**	9,200 원	84.78%	-

주1) **확정**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확정**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27%(공모 후 1.06%, 의무인수분 53,250주 0.52% 별도)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미래에셋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상장주선인의 내부통제 기준]

제52조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관리)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①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③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업실사 절차, 조사·검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업실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 시 회사와 주관회사 간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7>

(정정 전)

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는 당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27%(공모 후 1.06%, 의무인수분 53,250주 0.52% 별도) 로 이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 및 상장 이후 미처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는 당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보통주식 108,7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 내역]

주주명	구 분	주식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지분율 (공모 전)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의무보유 기간
미래에셋증권(주)	상장주선인	기명식보통주	2021년 09월 10일	108,700주	1.27%	9,200원	1,000,040,000 원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1)

주1)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가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주식 108,7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5호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합니다.

주2)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공모 후 기준으로는 1.06%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9,2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11,000원과의 괴리율은 19.57%, 최고가액인 14,000원과의 괴리율은 52.1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인	증권의 종류	희망 공모가액	취득가액	괴리율	비고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1,000원~14,000원	9,200원	19.57%~52.17%	-

주1)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정 후)

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는 당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27%(공모 후 1.06%, 의무인수분 53,250주 0.52% 별도) 로 이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 및 상장 이후 미처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는 당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보통주식 108,7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 내역]

주주명	구 분	주식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지분율 (공모 전)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의무보유 기간
미래에셋증권(주)	상장주선인	기명식보통주	2021년 09월 10일	108,700주	1.27%	9,200원	1,000,040,000 원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1)

주1)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가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주식 108,7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5호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은 17,000원으로 괴리율이 84.78%인 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2)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공모 후 기준으로는 1.06%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9,200원으로 금번 공모시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과의 괴리율은 84.78%입니다.

인수인	증권의 종류	**확정** 공모가액	취득가액	괴리율	비고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7,000원**	9,200원	**84.78%**	-

주1) **확정**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확정**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8>

(정정 전)

바. 인수인과 일반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

동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동사와 대표주관회사의 주요 이해관계로서, 미래에셋증권㈜ 는 동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동사의 보통주식 108,7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명	구 분	주식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지분율	주당	총	의무보유
					(공모 전)	취득가액	취득금액	기간
미래에셋증권(주)	상장주선인	기명식보통주	2021년 09월 10일	108,700주	1.27%	9,200원	1,000,040,000 원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1)

주1)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가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주식 108,7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세칙에 따라,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9,2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11,000원과의 괴리율은 19.57%, 최고가액인 14,000원과의 괴리율은 52.17%입니다.

인수인	증권의 종류	희망 공모가액	취득가액	괴리율	비고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1,000원~14,000원	9,200원	19.57%~52.17%	-

주1)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27%(공모 후 1.06%, 의무인수분 53,250주 0.52% 별도)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후략)

(정정 후)

바. 인수인과 일반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

동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동사와 대표주관회사의 주요 이해관계로서, 미래에셋증권㈜ 는 동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동사의 보통주식 108,7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명	구 분	주식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지분율	주당	총	의무보유
					(공모 전)	취득가액	취득금액	기간
미래에셋증권(주)	상장주선인	기명식보통주	2021년 09월 10일	108,700주	1.27%	9,200원	1,000,040,000 원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1)

주1)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가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주식 108,7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세칙에 따라,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은 17,000원으로 괴리율이 84.78%인 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9,2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과의 괴리율은 84.78%입니다.

인수인	증권의 종류	**확정**공모가액	취득가액	괴리율	비고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7,000원**	9,200원	**84.78%**	-

주1) **확정**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확정**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후략)

<주9>

(정정 전)

4. 종합평가결과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포바이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11,000원 ~ 14,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포바이포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포바이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4. 종합평가결과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포바이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확정**공모가액	**1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포바이포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포바이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0>

(정정 전)

(다)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SR 및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포바이포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

습니다.

[표: 포바이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PSR 평가가치	25,958 원
	PER 평가가치	10,224 원
	평균 주1)	18,091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2)	39.20% ~ 22.61%	
공모희망가액 밴드	11,000원 ~ 14,000원	
확정 공모가액	주3)	

주1)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평균은 2021년온기기준 PSR 비교가치 및 PER 비교가치를 산술평균한 수치입니다.

주2)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평가기준일 최근 6개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법인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주)포바이포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9.20% ~ 22.6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1,000원 ~ 14,0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금번 공모 투자자 유인을 위한 할인율, COVID-19 전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증시 변동성, 과거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 내역]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지투파워	2022-04-01	22.5%	5.9%
공구우먼	2022-03-23	32.6%	19.6%
유일로보틱스	2022-03-18	44.4%	54.1%

비씨엔씨	2022-03-03	37.6%	20.3%
스톤브릿지벤처스	2022-02-25	41.5%	31.7%
브이씨	2022-02-24	26.1%	3.9%
나래나노텍	2022-02-08	36.1%	25.2%
아셈스	2022-02-07	28.3%	18.0%
케이옥션	2022-01-24	40.7%	30.2%
오토앤	2022-01-20	28.5%	18.3%
KTB네트워크	2021-12-16	41.7%	27.6%
알비더블유	2021-11-22	38.1%	29.1%
트윔	2021-11-17	36.7%	27.5%
아이티아이즈	2021-11-11	32.1%	22.3%
디어유	2021-11-10	34.1%	12.2%
피코그램	2021-11-03	19.1%	8.1%
엔켐	2021-11-01	34.2%	23.2%
리파인	2021-10-29	28.3%	18.1%
지앤비에스엔지니어링	2021-10-29	41.2%	28.4%
아이패밀리에스씨	2021-10-28	36.7%	22.1%
지아이텍	2021-10-21	26.2%	15.9%
씨유테크	2021-10-08	32.9%	26.3%
원준	2021-10-07	41.7%	32.8%
아스플로	2021-10-07	23.1%	10.9%
실리콘투	2021-09-29	47.2%	39.6%
프롬바이오	2021-09-28	24.4%	13.9%
바이오플러스	2021-09-27	29.0%	21.5%
평균		33.5%	22.5%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1) SPAC 상장, SPAC 합병, 리츠 공모, 특례상장, 이전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코스닥시장 신규 일반상장 기준입니다.

(정정 후)

(다)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SR 및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포바이포의 확정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포바이포의확정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비교가치	PSR 평가가치	25,958 원

주당 평가가액	PER 평가가치	10,224 원
	평균 주1)	18,091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2)	39.20% ~ 22.61%	
공모희망가액 밴드	11,000원 ~ 14,000원	
확정 공모가액	17,000원	

주1)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평균은 2021년온기기준 PSR 비교가치 및 PER 비교가치를 산술평균한 수치입니다.

주2)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평가기준일 최근 6개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법인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주)포바이포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9.20% ~ 22.6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1,000원 ~ 14,0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금번 공모 투자자 유인을 위한 할인율, COVID-19 전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증시 변동성, 과거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평가액 대비할인율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 내역]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지투파워	2022-04-01	22.5%	5.9%
공구우먼	2022-03-23	32.6%	19.6%
유일로보틱스	2022-03-18	44.4%	54.1%
비씨엔씨	2022-03-03	37.6%	20.3%
스톤브릿지벤처스	2022-02-25	41.5%	31.7%
브이씨	2022-02-24	26.1%	3.9%
나래나노텍	2022-02-08	36.1%	25.2%
아셈스	2022-02-07	28.3%	18.0%
케이옥션	2022-01-24	40.7%	30.2%

오토앤	2022-01-20	28.5%	18.3%
KTB네트워크	2021-12-16	41.7%	27.6%
알비더블유	2021-11-22	38.1%	29.1%
트윔	2021-11-17	36.7%	27.5%
아이티아이즈	2021-11-11	32.1%	22.3%
디어유	2021-11-10	34.1%	12.2%
피코그램	2021-11-03	19.1%	8.1%
엔켐	2021-11-01	34.2%	23.2%
리파인	2021-10-29	28.3%	18.1%
지앤비에스엔지니어링	2021-10-29	41.2%	28.4%
아이패밀리에스씨	2021-10-28	36.7%	22.1%
지아이텍	2021-10-21	26.2%	15.9%
씨유테크	2021-10-08	32.9%	26.3%
원준	2021-10-07	41.7%	32.8%
아스플로	2021-10-07	23.1%	10.9%
실리콘투	2021-09-29	47.2%	39.6%
프롬바이오	2021-09-28	24.4%	13.9%
바이오플러스	2021-09-27	29.0%	21.5%
평균		33.5%	22.5%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1) SPAC 상장, SPAC 합병, 리츠 공모, 특례상장, 이전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코스닥시장 신규 일반상장 기준입니다.

<주11>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총액 (1)	17,490,000,000
자기 주식 매출 총액 (2)	2,034,637,000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총액 (3)	585,750,000
발행제비용 (4)	992,761,215
순수입금 [(1) + (2) + (3) - (4)]	19,117,625,785

주1)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1,000원 ~ 14,000원 중 하단인 11,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물량입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	904,967,415	총 발행금액의 4.5% (의무인수분 포함)
상장심사수수료	5,000,000	-
상장수수료	8,850,000	-
등록세	3,286,50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657,300	등록세의 20.0%
기타비용	70,000,000	IR 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	992,761,215	-

주1)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1,000원 ~ 14,000원 중 하단인 11,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총액 (1)	27,030,000,000
자기 주식 매출 총액 (2)	3,144,439,000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총액 (3)	905,250,000
발행제비용 (4)	1,489,429,805
순수입금 [(1) + (2) + (3) - (4)]	29,590,259,195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물량입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	1,398,586,005	총 발행금액 및 매출금액의 4.5% (의무인수분 포함)
상장심사수수료	5,000,000	-
상장수수료	11,900,000	-
등록세	3,286,50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657,300	등록세의 20.0%
기타비용	70,000,000	IR 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	1,489,429,805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12>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22년 03월 21일)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계
-	-	9,000	-	10,118	-	19,118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20,110백만원 중 발행제비용 993백만원을 제외한 19,118백만원을 운영자금(스톡 콘텐츠 매입, 미국법인 설립 및 운영, 전문인력 충원 등), 타법인증권 취득자금(국내 및 해외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 및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용도별 자금의 규모와 지출시기는 당사가 직면한 사업환경 변화 및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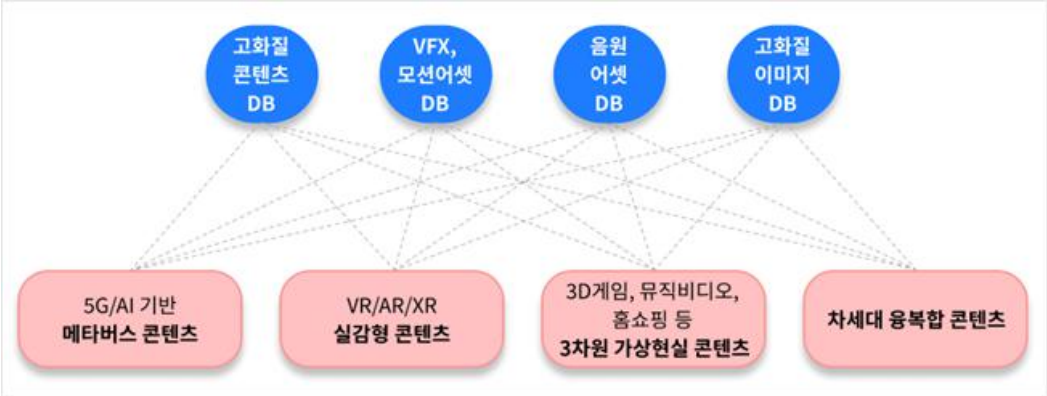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내 용
운영자금	4,300	1,800	2,900	9,000	스톡 콘텐츠 매입, 해외법인 설립, 전문인력 충원 등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6,071	4,047	-	10,118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등
합 계	10,371	5,847	2,900	19,118	-

(1) 운영자금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스톡 콘텐츠 매입	300	800	1,900	3,000
해외법인(미국) 설립	2,000	-	-	2,000
전문인력 충원	2,000	1,000	1,000	4,000
합계	4,300	1,800	2,900	9,000

(가) 스톡 콘텐츠 매입



당사는 2020년 10월, 신규사업으로서 초고화질 스톡 영상(Stock Videos; 짧은 클립으로 촬영 및 제작된 영상 소스) 유통 플랫폼 '키컷스톡(KEYCUT STOCK)' 서비스를 런칭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약 100만건 이상의 고화질 스톡 영상 등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당사 플랫폼처럼 스톡 영상을 유통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은 셔터스톡, 게티이미지 등이 있으나 해당 플랫폼들은 주로 이미지와 저화질 영상 유통에 주력하고 있으며 당사와 같이 8K 이상 스톡 영상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플랫폼은 많지 않습니다.

KEYCUT STOCK 플랫폼은 1) 해당 스톡 영상을 공급하는 글로벌 아티스트, 필름메이커 등에게는 판매 수익 창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2) 영상 제작 및 후반제작사,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효율적으로 제작비용/시간을 단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콘텐츠 공급/수요자 모두와 제작 프로세스 전반의 패러다임 혁신에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KEYCUT STOCK의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탑 티어 필름메이커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으로부터 촬영된 일반 콘텐츠를 수집(당사에서 직접 콘텐츠 소유권 매입 또는 외부 작가 간 위탁판매 계약)
2) 콘텐츠에 대한 상품화(클립화, AI기반 딥러닝 화질개선솔루션 PIXELL을 통한 화질 개선, 키워딩 등의 작업)
3) 콘텐츠 수요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타겟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콘텐츠의 상품성 증대 및 유통, 이에 따른 당사 판매 수수료 확보(① 당사 자체 보유 콘텐츠 라이선스 판매시 판매 이익금 전체 당사에 귀속, ② 외부 작가 소유의 콘텐츠 라이선스 위탁판매시, 판매 이익금에서 각 작가별 계약에 따른 정산 수수료 지급)

다른 스톡 영상 플랫폼 업체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2) 상품화 과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사용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고화질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클립화 및 편집 등의 무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당사가 개발한 AI 화질개선 솔루션인 PIXELL을 통해 구현 가능하였으며, 공급자가 어떤 화질의 영상을 올리더라도, 수요자가 구매 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할 수 있는 화질의 영상으로 개선하여 고화질 콘텐츠 DB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가 수요자의 제작 니즈를 충족할 수 있어 판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콘텐츠 산업은 산업간 경계약화, 기술의 발달, 고객수요의 다형화 등의 요인에 의해 빠르게 융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의 진보가 근본적으로 콘텐츠 산업에서의 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기술 진보에 맞춰 당사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관련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방식은 실제 촬영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가상 인물, 가상 스튜디오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CG(컴퓨터 그래픽스), VFX(Visual Effects, 시각특수효과)의 활용이 보편화 되었으며, 실제 촬영된 결과물과 VFX Asset(CG, VFX 제작 기법 등을 활용해 사전 제작된 오브젝트, 캐릭터, 특수효과 등 소스)을 합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업들이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노동집약적 환경 속에서 신규로 제작하기보다, 당사가 사전 제작하거나 외부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VFX Asset의 사용권(라이선스)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키컷스톡 플랫폼을 통하여 공급했던 고화질 스톡 영상 외에 내부 모션그래픽과 VFX 작업 역량 등을 활용한 VFX Asset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유통 콘텐츠 카테고리 확장을 위하여 비디오 콘텐츠에 몰입감과 임장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오디오 음원 콘텐츠(상업적 음악이 아닌 콘텐츠 내에 활용되는 BGM, Sound Effect와 같은 음원 소스를 의미)등을 확보하여 유통하고자 합니다. 비디오와 오디오는 유사한 알고리즘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당사의 AI기반 딥러닝 화질개선솔루션 PIXELL 개발에 사용되었던 수학적 접근 방식을 활용한 음질 개선 서비스 제공 및 이를 통한 음원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차별적인 부가가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VFX Asset을 통해서 방송, 영화 등의 대형 콘텐츠 제작사 및 메타버스 플

랫폼과 관련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으로의 판매처를 확보하고, 오디오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비디오와 오디오, VFX Asset까지 공급하여 글로벌 최대 비디오 및 오디오의 초고품질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는 플랫폼사로의 확장과 시장 내 입지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향후 3개년 키컷스톡 콘텐츠 확보 목표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키컷스톡 향후 3개년 콘텐츠 확보 목표치, 단위: Clip]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콘텐츠 수	2,856,351	8,569,053	25,707,159
- 당사 자체 소유(KEYCUT Original)	36,000	108,000	324,000
- 작가 간 유통 계약	2,820,351	8,461,053	25,383,159

당사는 키컷스톡 유통 콘텐츠 확보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톡 콘텐츠의 경우 당사가 직접 저작권을 매입하여 상품화 과정을 거쳐 "KEYCUT Original" 이라는 레이블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통상 외부 작가 간 계약에 따라 당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판매의 경우, 판매액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작가 정산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KEYCUT Original 콘텐츠의 경우 당사 소유 의 콘텐츠이므로 판매와 관련된 이익 전부를 당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직접 매입한 단일 콘텐츠를 가공, 컷팅 등 편집 과정을 거쳐 복수의 상품화 가능 스톡 콘텐츠로 확장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콘텐츠 확보 및 수익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의 가정을 통해 향후 3개년 KEYCUT Original 확보를 위한 스톡 콘텐츠 매입 금액을 도출하였습니다.

[표: KEYCUT Original 확보금액 도출을 위한 가정사항]

(1) 당사 자체 촬영 및 제작		10%		
(2) 외부 저작권 매입		90%		
(2)	(2)-1. 스톡 콘텐츠 매입	15%(본 건 자금 사용 목적)		
	(2)-2. Contents Provider 등 타법인 증권 투자 등을 통한 간접 소유	85%		
	가공, 컷팅 등 통한 상품화 활용 배수	2022년: 3배	2023년: 4배	2024년: 5배

주1) 당사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 저작권 매입을 통해 KEYCUT Original로 상품화된 수는 최초 원본 매입 스톡 콘텐츠수의 약 2배 수준으로, 당사는 기 확보된 오리지널 콘텐츠 간의 합성 등 기법을 추가로 적용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3배~5배까지 상품화 활용 배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상기 가정사항에 따라 당사에서 추정한 연도별 스톡 콘텐츠 매입 필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키컷스톡 향후 3개년 콘텐츠 매입 필요 금액, 단위: Clip,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스톡 콘텐츠 매입 필요량	1,080	2,430	5,832	9,342
필요금액	300	800	1,900	3,000

주1) 스톡 콘텐츠 매입 필요량은 연도별 당사 자체 소유(KEYCUT Original) 목표치 증감분에 외부 저작권 매입 비율(90%)×스톡 콘텐츠 매입 비율(15%)÷연도별 상품화 활용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필요금액 산정시 Clip 당 매입금액은 현재까지 당사가 외부로부터 매입한 스톡 콘텐츠건들의 Clip당 평균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나) 해외법인(미국) 설립

당사는 향후 신규사업인 키컷스톡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해외 지역 중에서는 현재 리테일 결제 구매 고객 중 미국 이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한 운영 시 현지 이용자들의 구매 결제 시스템을 보다 간편하게 구축(페이팔(Paypal), 페이오니아(Payoneer), 스트라이프(Stripe) 등)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또한 동 법인을 통해 미국 현지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발굴, 현지 법인 마케팅 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2년 미국법인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수익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투입에 필요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표: 미국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필요 투입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인건비	500
서버 등 설비 구축비용	800
판관비 등 기타 운영비용(임대료 포함)	700
합계	2,000

주1) 인건비는 초기 필요 인원수 5인을 가정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평균 임금 격차(65.3%, 2020년, OECD)를 고려한 당사 미국법인 인건비 목표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다) 업무 개발 및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인력 충원

당사는 초고화질 영상 및 뉴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키컷비주얼(KEYCUT Visual)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고화질 영상 제작 영역의 경우, 수요처 확대 추진에 따른 작업량 증가가 예상되며, 뉴미디어 콘텐츠 영역은 당사의 신규사업인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 엔터테인먼트 관련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 추진 검토 등으로 작업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작업 공정 표준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해 인당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으나, 각 사업부문별 신규 사업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고도화된 작업 시스템 개발, 콘텐츠 제작 관련 합성(2D, 3D) 및 게임엔진 기반 개발 인력 등을 지속 충원하고자 합니다.

[표: 키컷 비주얼(KEYCUT Visual) 연도별 전문인력 충원 계획, 단위: 명]

분야	상세	2022년	2023년	2024년
초고화질 영상 영역	클라우드 기반 초고화질 영상 처리 시스템 개발 및 응용 인력	10	5	5
뉴미디어 콘텐츠 영역	합성(2D, 3D) 및 게임엔진 기반 작업 시스템 개발 및 콘텐츠 기획/제작 인력	10	5	5
합계	-	20	10	10

당사는 상기 연도별 신규 인력 충원 계획을 기준으로, 급여, 상여, 복리후생, 개인 전산장비 등을 포함한 총 신규인력 관련 비용을 1인당 1억원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3개년간 총 4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최근 글로벌 콘텐츠 유통 플랫폼사들은 1) 기존 유통 품목인 이미지, 영상 품목을 확대하거나, 2) 음원 및 3D 어셋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자 다양한 관련 업체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콘텐츠 유통 플랫폼사 Shutterstock사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콘텐츠 보유 및 유통사로의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표: Shutterstock의 타법인증권취득 내역, 단위: 백만달러, 출처: Bloomberg]

투자주체	투자시기	투자대상	거래규모	비고
Shutterstock	2021-01-26	TurboSquid Inc	77.3	3D 어셋 플랫폼 회사
	2020-11-11	Amper Music Inc	미공시	콘텐츠 제작용 음원 추천 회사
	2018-02-22	ZCool Network Technology Hong Kong Ltd	1.9	크리에이터 및 디자이너용 콘텐츠 공급 회사
	2017-06-27	Flashstock Technology Inc	51.2	이미지, 영상 유통 플랫폼 회사
	2015-01-15	Arbour Interactive Inc	32.0	콘텐츠용 음원 공급 회사

당사 역시 신규 사업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키컷스톡의 콘텐츠 제품군 확보와 고객 시장 확대를 위해 향후 경쟁력 있는 국내 및 해외 기업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표 기업군은 당사의 키컷스톡 플랫폼과 같이 영상, VFX Asset, 이미지, 음원 등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사이며, 추가적으로 당사가 스톡 콘텐츠 소유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스톡 콘텐츠 자체 제작 및 보유기업(Contents Provider)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의 투자 목표 기업군에 따른 당사의 타법인증권 취득 후 기대 효과를 기재하였습니다.

[표: 타법인증권 취득 관련 당사 목표 기업 유형]

영위 사업 유형	콘텐츠 종류	기대 효과
온라인 콘텐츠	신규 유형 콘텐츠	- 당사 콘텐츠 유통 영역의 효율적 확장 가능

유통 플랫폼 또는 Contents Provider	(VFX Asset, 음원, 이미지 등)	- 이용자 수 추가 확보 및 당사가 기 유통 중인 영상 콘텐츠 간 교차 소비 유도 가능 - 현재 영상 분야에 활용 중인 당사 PIXELL 솔루션 적용 용이한 분야로서, 고품질 변환 콘텐츠(부가가치 제공) 유통 가능 - 해당 법인 자체 소유 콘텐츠 존재 시, 당사 자체 소유 콘텐츠 등 간 합성, 편집 및 상품화 과정을 거쳐 KEYCUT Original 콘텐츠 확충 및 수익성 제고 가능
	영상	- 고품질 영상 콘텐츠 및 이용자 수 추가 확보에 따라 영상 유통 분야 내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 - 해당 법인 자체 소유 콘텐츠 존재 시, 당사 자체 소유 콘텐츠 등 간 합성, 편집 및 상품화 과정을 거쳐 KEYCUT Original 콘텐츠 확충 및 수익성 제고 가능

본 스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사 중인 법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을 물색하고 투자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검토는 당사가 직면한 사업환경의 변화 및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인수/투자과정에서 인수/투자대상의 지분가치가 상승/하락하거나 당사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수/투자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사 및 검토 중인 법인 등과 협상이 결렬되어 투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자체적으로 ① 다양한 스톡 콘텐츠를 확보(자체 매입 및 작가 간 유통 계약)하고 ② 전문 인력 충원을 통한 사업 및 서비스 기획, 플랫폼 개발 고도화로 이용 편의성 증대 및 다양한 부가가치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③ 마케팅 강화를 통해 공급자층 및 수요자층을 확대시키는 등 스톡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내재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세부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스톡 콘텐츠 유통 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투자가 없을 시 자금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스톡 콘텐츠 매입	1,000	1,000	1,500	3,500
키컷스톡 사업 기획 및 플랫폼 개발 인력 충원	700	500	300	1,500
키컷스톡 공급자 및 수요자층 대상 마케팅	-	3,118	2,000	5,118
합계	1,700	4,618	3,800	10,118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타 콘텐츠 플랫폼사 또는 Contents Provider사 투자 등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스톡 콘텐츠를 당사 자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표: 키컷스톡 향후 3개년 콘텐츠 추가 매입 목표 금액, 단위: Clip,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책정 예산	1,000	1,000	1,500	3,500
매입 가능 콘텐츠 수	3,133	3,133	4,700	10,966

주1) 필요금액 산정시 Clip 당 매입금액은 현재까지 당사가 외부로부터 매입한 스톡 콘텐츠건들의 Clip당 평균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추가적으로 키컷스톡 사업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한 기획 인력 및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인력을 아래와 같이 충원할 예정입니다.

[표: 키컷스톡(KEYCUT Stock) 연도별 전문인력 충원 계획,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사업 및 서비스 기획	3	2	1	6
플랫폼 개발	4	3	2	9
합계	7	5	3	15

당사는 상기 연도별 신규 인력 충원 계획을 기준으로 급여, 상여, 복리후생, 개인 전산장비 등을 포함한 총 신규인력 관련 비용을 1인당 1억원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3개년간 총 15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밖에, 당사는 키컷스톡 플랫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콘텐츠 공급자 및 수요자층 확대 등을 위해 2023~2024년(2개년)간 약 51억원의 자금을 마케팅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 기타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매년 미사용 잔여자금을 신용평가등급이 우량한 국내시중은행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MMF, MMDA 및 기타 금융상품 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수단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동 자금의 운용에 대한 사항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자금담당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상장 이후 제출할 사업보고서를 통해 그 내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22년 04월 18일)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계
-	-	9,000	-	20,590	-	29,590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31,080백만원 중 발행제비용 1,489백만원을 제외한 29,590백만원을 운영자금(스톡 콘텐츠 매입, 미국법인 설립 및 운영, 전문인력 충원 등), 타법인증권 취득자금(국내 및 해외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 및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용도별 자금의 규모와 지출시기는 당사가 직면한 사업환경 변화 및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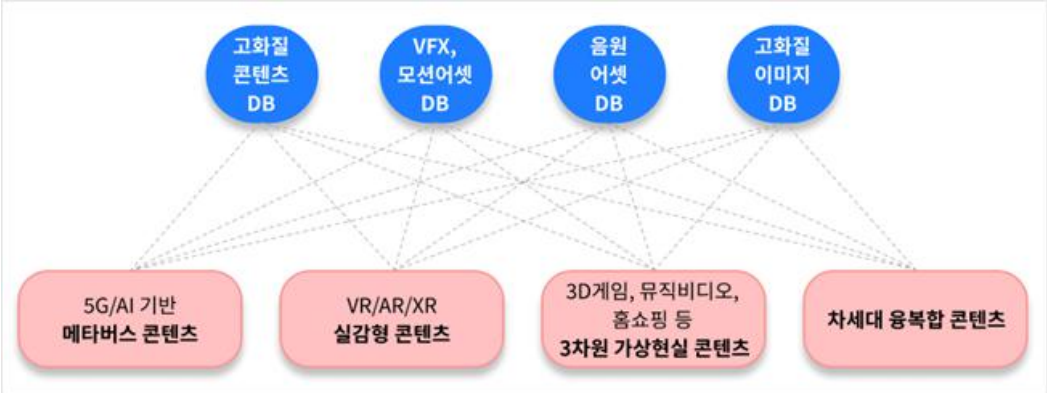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내 용
운영자금	4,300	1,800	2,900	9,000	스톡 콘텐츠 매입, 해외법인 설립, 전문인력 충원 등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12,350	8,240	-	20,590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등
합 계	16,650	10,040	2,900	29,590	-

(1) 운영자금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스톡 콘텐츠 매입	300	800	1,900	3,000
해외법인(미국) 설립	2,000	-	-	2,000
전문인력 충원	2,000	1,000	1,000	4,000
합계	4,300	1,800	2,900	9,000

(가) 스톡 콘텐츠 매입



당사는 2020년 10월, **신규사업으로서** 초고화질 스톡 영상(Stock Videos; 짧은 클립으로 촬영 및 제작된 영상 소스) 유통 플랫폼 '키컷스톡(KEYCUT STOCK)' 서비스를 런칭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약 100만건 이상의 고화질 스톡 영상 등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당사 플랫폼처럼 스톡 영상을 유통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은 셔터스톡, 게티이미지 등이 있으나 해당 플랫폼들은 주로 이미지와 저화질 영상 유통에 주력하고 있으며 당사와 같이 8K 이상 스톡 영상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플랫폼은 많지 않습니다.

KEYCUT STOCK 플랫폼은 1) 해당 스톡 영상을 공급하는 글로벌 아티스트, 필름메이커 등에게는 판매 수익 창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2) 영상 제작 및 후반제작사,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효율적으로 제작비용/시간을 단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공급/수요자 모두와 제작 프로세스 전반의 패러다임 혁신에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KEYCUT STOCK의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탑 티어 필름메이커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으로부터 촬영된 일반 콘텐츠를 수집(당사에서 직접 콘텐츠 소유권 매입 또는 외부 작가 간 위탁판매 계약)
2) 콘텐츠에 대한 상품화(클립화, AI기반 딥러닝 화질개선솔루션 PIXELL을 통한 화질 개선, 키워딩 등의 작업)
3) 콘텐츠 수요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타겟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콘텐츠의 상품성 증대 및 유통, 이에 따른 당사 판매 수수료 확보(① 당사 자체 보유 콘텐츠 라이선스 판매시 판매 이익금 전체 당사에 귀속, ② 외부 작가 소유의 콘텐츠 라이선스 위탁판매시, 판매 이익금에서 각 작가별 계약에 따른 정산 수수료 지급)

다른 스톡 영상 플랫폼 업체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2) 상품화 과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사용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고화질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클립화 및 편집 등의 무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당사가 개발한 AI 화질개선 솔루션인 PIXELL을 통해 구현 가능하였으며, 공급자가 어떤 화질의 영상을 올리더라도, 수요자가 구매 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할 수 있는 화질의 영상으로 개선하여 고화질 콘텐츠 DB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가 수요자의 제작 니즈를 충족할 수 있어 판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콘텐츠 산업은 산업간 경계약화, 기술의 발달, 고객수요의 다형화 등의 요인에 의해 빠르게 융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의 진보가 근본적으로 콘텐츠 산업에서의 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기술 진보에 맞춰 당사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관련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방식은 실제 촬영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가상 인물, 가상 스튜디오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CG(컴퓨터 그래픽스), VFX(Visual Effects, 시각특수효과)의 활용이 보편화 되었으며, 실제 촬영된 결과물과 VFX Asset(CG, VFX 제작 기법 등을 활용해 사전 제작된 오브젝트, 캐릭터, 특수효과 등 소스)을 합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업들이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노동집약적 환경 속에서 신규로 제작하기보다, 당사가 사전 제작하거나 외부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VFX Asset의 사용권(라이선스)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키컷스톡 플랫폼을 통하

여 공급했던 고화질 스톡 영상 외에 내부 모션그래픽과 VFX 작업 역량 등을 활용한 VFX Asset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유통 콘텐츠 카테고리 확장을 위하여 비디오 콘텐츠에 몰입감과 임장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오디오 음원 콘텐츠(상업적 음악이 아닌 콘텐츠 내에 활용되는 BGM, Sound Effect와 같은 음원 소스를 의미)등을 확보하여 유통하고자 합니다. 비디오와 오디오는 유사한 알고리즘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당사의 AI기반 딥러닝 화질개선솔루션 PIXELL 개발에 사용되었던 수학적 접근 방식을 활용한 음질 개선 서비스 제공 및 이를 통한 음원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차별적인 부가가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VFX Asset을 통해서 방송, 영화 등의 대형 콘텐츠 제작사 및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으로의 판매처를 확보하고, 오디오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비디오와 오디오, VFX Asset까지 공급하여 글로벌 최대 비디오 및 오디오의 초고품질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는 플랫폼사로의 확장과 시장 내 입지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향후 3개년 키컷스톡 콘텐츠 확보 목표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키컷스톡 향후 3개년 콘텐츠 확보 목표치, 단위: Clip]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콘텐츠 수	2,856,351	8,569,053	25,707,159
- 당사 자체 소유(KEYCUT Original)	36,000	108,000	324,000
- 작가 간 유통 계약	2,820,351	8,461,053	25,383,159

당사는 키컷스톡 유통 콘텐츠 확보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톡 콘텐츠의 경우 당사가 직접 저작권을 매입하여 상품화 과정을 거쳐 "KEYCUT Original" 이라는 레이블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통상 외부 작가 간 계약에 따라 당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판매의 경우, 판매액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작가 정산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KEYCUT Original 콘텐츠의 경우 당사 소유 의 콘텐츠이므로 판매와 관련된 이익 전부를 당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직접 매입한 단일 콘텐츠를 가공, 컷팅 등 편집 과정을 거쳐 복수의 상품화 가능 스톡 콘텐츠로 확장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콘텐츠 확보 및 수익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의 가정을 통해 향후 3개년 KEYCUT Original 확보를 위한 스톡 콘텐츠 매입 금액을 도출하였습니다.

[표: KEYCUT Original 확보금액 도출을 위한 가정사항]

(1) 당사 자체 촬영 및 제작		10%		
(2) 외부 저작권 매입		90%		
(2)	(2)-1. 스톡 콘텐츠 매입	15%(본 건 자금 사용 목적)		
	(2)-2. Contents Provider 등 타법인 증권 투자 등을 통한 간접 소유	85%		
	가공, 컷팅 등 통한 상품화 활용 배수	2022년: 3배	2023년: 4배	2024년: 5배

주1) 당사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 저작권 매입을 통해 KEYCUT Original로 상품화된 수는 최초 원본 매입 스톡 콘텐츠수의 약 2배 수준으로, 당사는 기 확보된 오리지널 콘텐츠 간의 합성 등 기법을 추가로 적용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3배~5배까지 상품화 활용 배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상기 가정사항에 따라 당사에서 추정한 연도별 스톡 콘텐츠 매입 필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키컷스톡 향후 3개년 콘텐츠 매입 필요 금액, 단위: Clip,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스톡 콘텐츠 매입 필요량	1,080	2,430	5,832	9,342
필요금액	300	800	1,900	3,000

주1) 스톡 콘텐츠 매입 필요량은 연도별 당사 자체 소유(KEYCUT Original) 목표치 증감분에 외부 저작권 매입 비율(90%)×스톡 콘텐츠 매입 비율(15%)÷연도별 상품화 활용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필요금액 산정시 Clip 당 매입금액은 현재까지 당사가 외부로부터 매입한 스톡 콘텐츠건들의 Clip당 평균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나) 해외법인(미국) 설립

당사는 향후 신규사업인 키컷스톡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해외 지역 중에서는 현재 리테일 결제 구매 고객 중 미국 이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한 운영 시 현지 이용자들의 구매 결제 시스템을 보다 간편하게 구축(페이팔(Paypal), 페이오니아(Payoneer), 스트라이프(Stripe) 등)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또한 동 법인을 통해 미국 현지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발굴, 현지 법인 마케팅 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2년 미국법인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수익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투입에 필요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표: 미국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필요 투입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인건비	500
서버 등 설비 구축비용	800
판관비 등 기타 운영비용(임대료 포함)	700
합계	2,000

주1) 인건비는 초기 필요 인원수 5인을 가정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평균 임금 격차(65.3%, 2020년, OECD)를 고려한 당사 미국법인 인건비 목표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다) 업무 개발 및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인력 충원

당사는 초고화질 영상 및 뉴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키컷비주얼(KEYCUT Visual)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고화질 영상 제작 영역의 경우, 수요처 확대 추진에 따른 작업량 증가가 예상되며, 뉴미디어 콘텐츠 영역은 **당사의 신규사업인**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 엔터테인먼트 관련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 추진 검토 등으로 작업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작업 공정 표준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해 인당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으나, 각 사업부문별 신규 사업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고도화된 작업 시스템 개발, 콘텐츠 제작 관련 합성(2D, 3D) 및 게임엔진 기반 개발 인력 등을 지속 충원하고자 합니다.

[표: 키컷 비주얼(KEYCUT Visual) 연도별 전문인력 충원 계획, 단위: 명]

분야	상세	2022년	2023년	2024년
초고화질 영상 영역	클라우드 기반 초고화질 영상 처리 시스템 개발 및 응용 인력	10	5	5
뉴미디어 콘텐츠 영역	합성(2D, 3D) 및 게임엔진 기반 작업 시스템 개발 및 콘텐츠 기획/제작 인력	10	5	5
합계	-	20	10	10

당사는 상기 연도별 신규 인력 충원 계획을 기준으로, 급여, 상여, 복리후생, 개인 전산장비 등을 포함한 총 신규인력 관련 비용을 1인당 1억원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3개년간 총 4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최근 글로벌 콘텐츠 유통 플랫폼사들은 1) 기존 유통 품목인 이미지, 영상 품목을 확대하거나, 2) 음원 및 3D 어셋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자 다양한 관련 업체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콘텐츠 유통 플랫폼사 Shutterstock사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콘텐츠 보유 및 유통사로의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표: Shutterstock의 타법인증권취득 내역, 단위: 백만달러, 출처: Bloomberg]

투자주체	투자시기	투자대상	거래규모	비고
Shutterstock	2021-01-26	TurboSquid Inc	77.3	3D 어셋 플랫폼 회사
	2020-11-11	Amper Music Inc	미공시	콘텐츠 제작용 음원 추천 회사
	2018-02-22	ZCool Network Technology Hong Kong Ltd	1.9	크리에이터 및 디자이너용 콘텐츠 공급 회사
	2017-06-27	Flashstock Technology Inc	51.2	이미지, 영상 유통 플랫폼 회사
	2015-01-15	Arbour Interactive Inc	32.0	콘텐츠용 음원 공급 회사

당사 역시 신규 사업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키컷스톡의 콘텐츠 제품군 확보와 고객 시장 확대를 위해 향후 경쟁력 있는 국내 및 해외 기업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표 기업군은 당사의 키컷스톡 플랫폼과 같이 영상, VFX Asset, 이미지, 음원 등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사이며, 추가적으로 당사가 스톡 콘텐츠 소유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스톡 콘텐츠 자체 제작 및 보유기업(Contents Provider)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의 투자 목표 기업군에 따른 당사의 타법인증권 취득 후 기대 효과를 기재하였습니다.

[표: 타법인증권 취득 관련 당사 목표 기업 유형]

영위 사업 유형	콘텐츠 종류	기대 효과
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또는 Contents Provider	신규 유형 콘텐츠 (VFX Asset, 음원, 이미지 등)	- 당사 콘텐츠 유통 영역의 효율적 확장 가능 - 이용자 수 추가 확보 및 당사가 기 유통 중인 영상 콘텐츠 간 교차 소비 유도 가능 - 현재 영상 분야에 활용 중인 당사 PIXELL 솔루션 적용 용이한 분야로서, 고품질 변환 콘텐츠(부가가치 제공) 유통 가능 - 해당 법인 자체 소유 콘텐츠 존재 시, 당사 자체 소유 콘텐츠 등 간 합성, 편집 및 상품화 과정을 거쳐 KEYCUT Original 콘텐츠 확충 및 수익성 제고 가능
	영상	- 고품질 영상 콘텐츠 및 이용자 수 추가 확보에 따라 영상 유통 분야 내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 - 해당 법인 자체 소유 콘텐츠 존재 시, 당사 자체 소유 콘텐츠 등 간 합성, 편집 및 상품화 과정을 거쳐 KEYCUT Original 콘텐츠 확충 및 수익성 제고 가능

본 스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사 중인 법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을 물색하고 투자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검토는 당사가 직면한 사업환경의 변화 및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인수/투자과정에서 인수/투자대상의 지분가치가 상승/하락하거나 당사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수/투자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사 및 검토 중인 법인 등과 협상이 결렬되어 투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자체적으로 ① 다양한 스톡 콘텐츠를 확보(자체 매입 및 작가 간 유통 계약)하고 ② 전문 인력 충원을 통한 사업 및 서비스 기획,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 개발 고도화로 이용 편의성 증대 및 다양한 부가가치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③ 마케팅 강화를 통해 공급자층 및 수요자층을 확대시키는 등 스톡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내재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세부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스톡 콘텐츠 유통 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투자가 없을 시 자금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스톡 콘텐츠 매입	2,000	3,000	4,000	9,000
키컷스톡 사업 기획,콘텐츠 큐레이션및 플랫폼 개발 인력 충원	1,500	1,500	1,500	4,500
키컷스톡 공급자 및 수요자층 대상 마케팅	-	4,000	3,090	7,090
합계	3,500	8,500	8,590	20,590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타 콘텐츠 플랫폼사 또는 Contents Provider사 투자 등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스톡 콘텐츠를 당사 자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표: 키컷스톡 향후 3개년 콘텐츠 추가 매입 목표 금액, 단위: Clip,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책정 예산	2,000	3,000	4,000	9,000
매입 가능 콘텐츠 수	6,266	9,399	12,533	28,198

주1) 필요금액 산정시 Clip 당 매입금액은 현재까지 당사가 외부로부터 매입한 스톡 콘텐츠건들의 Clip당 평균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추가적으로 키컷스톡 사업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한 기획 인력, 콘텐츠 큐레이션(Contents Curation) 인력 및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인력을 아래와 같이 충원할 예정입니다.

[표: 키컷스톡(KEYCUT Stock) 연도별 전문인력 충원 계획,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사업 및 서비스 기획	5	3	3	11
콘텐츠 큐레이션	3	6	6	15
플랫폼 개발	7	6	6	19
합계	15	15	15	45

당사는 상기 연도별 신규 인력 충원 계획을 기준으로 급여, 상여, 복리후생, 개인 전산장비 등을 포함한 총 신규인력 관련 비용을 1인당 1억원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3개년간 총 45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밖에, 당사는 키컷스톡 플랫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콘텐츠 공급자 및 수요자층 확대 등을 위해 2023~2024년(2개년)간 약 71억원의 자금을 마케팅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 기타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매년 미사용 잔여자금을 신용평가등급이 우량한 국내시중은행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MMF, MMDA 및 기타 금융상품 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수단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동 자금의 운용에 대한 사항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자금담당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상장 이후 제출할 사업보고서를 통해 그 내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 자 설 명 서

2022년 04월 13일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포바이포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1,774,967주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30,174,439,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2.04.13

2. 모집가액 : 17,000원

3. 청약기간 : 2022.04.19 ~ 2022.04.20

4. 납입기일 : 2022.04.22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주식회사 포바이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신논현 타워 12층, 13층, 14층 3) 미래에셋증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표 주 관 회 사 명)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지 사항]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포바이포", "㈜포바이포", "포바이포"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포바이포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망

본 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콜센터	1588-6800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지점명	주 소
투자센터여의도W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2층 (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투자센터판교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2, 5층 (삼평동, 판교미래에셋센터)
방배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3, 4층 (방배동, 대명서리풀타워)
투자센터서초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3층 (반포동, 반포효성빌딩)
테헤란밸리W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1·2층 (대치동, 해성빌딩)
삼성W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4, 1층 (대치동, 오로라월드빌딩)
강남센터WM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3·4층 (서초동, 홍우빌딩)
대치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3층 (대치동, 스탈릿 대치)
압구정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2층 (신사동, 융기빌딩)
갤러리아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4·5층 (청담동, 더트리니티플레이스)
도곡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3층 (도곡동, 삼성SEI타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층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WM센터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35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명일동WM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4, 4층 (명일동, 이화빌딩)
방이역WM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길 10, 3층 (오금동, 삼아빌딩)
투자센터잠실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2층 (신천동, 타워730)
가락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문정프라자)
구리WM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5, 1층 (수택동, 우진빌딩)
건대역WM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A동 3층 (자양동, 더클래식500)
성동WM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3층 (행당동, 나래타워)
노원WM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4층 (상계동, 교보빌딩)
마포WM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2층 (공덕동, S-oil빌딩)
용산W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3층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투자센터광화문WM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2층 (당주동, 로얄빌딩)
명동WM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6층 (명동1가, 개양빌딩)
중앙우체국WM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B2층 (충무로1가, 포스트타워 서울중앙우체국)
센터원영업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B1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보라매WM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3층 (신대방동, 보라매아카데미타워)
일산W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7, 2층 (주엽동, 화성프라자)
부천WM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5층 (중동, 부천농협빌딩)
마곡WM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56, 6층 (마곡동, 건와빌딩)
디지털구로WM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2층 (구로동, 우림e-Biz센터2차)
투자센터목동WM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3층 (목동, 목동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제주W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2층 (노형동, 세기빌딩)
분당우체국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7, 1층 (서현동, 성남분당우체국)
분당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6, 2층 (서현동, KT&G분당타워)

영통W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0, 2층 (영통동, 밀레니엄프라자)
수원WM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2층 (인계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안산W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2, 3층 (고잔동, 센트럴타워)
투자센터평촌W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3층 (호계동, 평촌스포츠센터)
수지WM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2번길 11, 4층 (성복동, 성복프라자)
인천WM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4, 9층 (구월동, 맨하탄빌딩)
부평WM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1, 5층 (부평동, 금남빌딩)
송도WM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A동 3층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2차)
강릉WM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9, 6층 (임당동, 문선빌딩)
원주WM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6층 (무실동, 정한프라자)
춘천WM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4, 2층 (중앙로2가, 우리은행빌딩)
경산WM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3, 2층 (중방동, 도륜빌딩)
경주WM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1층 (성동동, KT경주지사)
구미WM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2층 (송정동, KDB산업은행)
안동WM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25, 1층 (동부동, 미래에셋대우빌딩)
포항WM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71, 1층 (죽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서대구WM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4·5층 (죽전동, 골든뷰메디타워)
칠곡WM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11, 2층 (태전동, 스카이빌딩)
투자센터대구WM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2층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동래WM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25, 2·3층 (수안동, 미래에셋대우빌딩)
투자센터부산W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5·6층 (부전동, 영광도서빌딩)
사하WM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3층 (하단동, 삼성전자빌딩)
해운대W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2층 (우동, 센텀사이언스파크)
거제WM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54, 2·3층 (옥포동, 아주비즈니스텔)
김해WM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74, 2층 (내동, 밝은메디칼센터)
진주WM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6, 2·3층 (동성동, 미래에셋대우빌딩)
마산WM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2층 (석전동, 무학빌딩)
투자센터창원WM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1층 (중앙동, 미래에셋대우빌딩)
통영WM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대로 33, 2층 (무전동, 동인빌딩)
서울산WM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52, 1층 (무거동, 대로빌딩)
울산WM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1, 3층 (달동, [舊] 미래에셋대우빌딩)
투자센터대전WM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2층 (둔산동, 파이낸스타워)
세종WM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205호 (어진동, 중앙타운)
천안아산WM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2층 (우성메디피아)
청주WM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2층 (북문로1가, 미래에셋대우빌딩)
투자센터광주WM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8, 1층 (금남로5가, 미래에셋대우빌딩)
상무WM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1, 1층 (치평동, 대아빌딩)

목포WM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60, 3층 (상동, 썬시티)
순천WM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19, 5층 (조례동, 세븐빌딩)
여수WM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1·2층 (학동, KDB산업은행)
군산WM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72, 2층 (나운동, 유앤미프라자)
전주WM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2층 (서신동, 국민연금전북회관)
서전주WM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3층 (효자동3가, 전주상공회의소)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대표이사등의 확인 · 서명 】

확인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 임원으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04. 18.

주식회사 포바이포

대표이사 윤 준 호

신고업무 담당임원 김 일 균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II.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위험** 당사는 딥러닝 기반 화질 개선 기술인 PIXELL에 기반하여 고화질 콘텐츠 제작,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화/드라마 후반 제작, 스톡 영상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영역은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성격을 띄고 있어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존재합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의 지속, 전세계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국내외 경제가 침체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사업, 실적,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콘텐츠 시장의 성장성 정체 위험**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초고화질 콘텐츠(고화질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 사이니지 향)시장, 글로벌 VFX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스톡 영상 시장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콘텐츠, VFX 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스톡영상 시장은 각각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하여 당사가 높은 성장률의 수혜를 입지 못하거나, 해당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인 초고화질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영화/드라마 등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의 경우 상위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며, 향후 당사와 유사한 기술력이나 관련인력을 유치한 대형 경쟁사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 심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향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및 수주단가가 감소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외형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주 변동성 위험** 당사의 주 사업영역인 초고화질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영화/드라마 후반 제작 등은 콘텐츠 의뢰처와의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당사의 사업구조상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영업수익이 발생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로 인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중단되는 등 수주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외주처 이용에 따른 위험** 당사가 수주한 일부 프로젝트 중 일정 분량에 대해서는 외주업체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주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작업 난이도가 낮고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작업이므로 당사가 직접 수행하는것에 비하여 외주처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효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외주처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부의 정책지원 또는 관련법 변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사업 성장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VFX 콘텐츠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사업 실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크게 1) 버추얼 휴먼 제작운영, 2) 콘텐츠 리마스터링, 3) 영상유통 플랫폼 확장으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신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성장 동력을 통해 당사의 향후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수요의 변동, 혹은 기술의 한계 등의 이유로 신규 사업이 지연되거나 당사가 기대하는 수익보다 저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영업 및 경영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구조에 따른 실적 악화 가능성** 당사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KETCUT VISUAL 사업부문의 경우,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 수주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는 화질개선공정을 정립 및 자동화하는 한편 VFX기술 기반 PIXELL을 이용함으로써 수주한 프로젝트의 안정적 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의 특성 상 용역기간이 지연되거나 중도에 종료될 가능성 일부 존재합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총수주액이 영업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익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수익인식 관련 위험**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초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 판매 사업의 경우 각각의 수행의무를 1)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2)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수익을 인도기준 또는 진행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있어 투입원가에 대한 부정확한 측정과 정확하지 않은 진행률 산정은 기인식된 손익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관련 계정과목들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외 매출 증가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글로벌 가전사 및 디스플레이사에 초고화질 콘텐츠를 제작해 납품함에 따라 해외법인향 매출의 비중이 크고, 뉴미디어 콘텐츠 사업 또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라 총 영업수익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능통화인 원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과 부채의 내역이 존재합니다. 환율변동위험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글로벌 경기 및 기축통화의 변동, 국내 통화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이 급변할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일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회수 관련 위험** 당사는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별 수행의무에 따른 진행기준에 의해 영업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단계별 완성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6개월 이내에 회수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률 또한 0.35%로서 매출채권과 관련한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장·단기 프로젝트 수주 규모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매출처가 확대될 경우 매출채권 잔액 및 회수기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 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인력 효율화와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의 고도화를 통해 프로젝트별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실적 및 수익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인력 효율화의 기반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화질 개선 공정을 통한 역량 내재화가 있으며, 자체 개발 공정을 특허로 등록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내 진입장벽 또한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버추얼 휴먼,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당사 화질개선솔루션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신규 시장으로 진출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인 고화질 디스플레이, VFX 기반 실감형 콘텐츠 시장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당사의 실적 및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갖춘 신규 업체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 심화, 거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요 목표시장 침체,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한 인력 증대에 따른 인건비 급증 또는 관련 연구개발비의 증가, 유무형 자산 취득 자금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기인하여 당사의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설립 직후 업종평균 대비 다소 높게 유지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 등 외부투자자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영업활동에 따른 보유 현금을 활용하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으며, 2021년 상반기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등으로 인한 효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업종평균 대비 매우 낮은 약 22%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거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전방산업 부진 및 영업환경 악화 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또는 당사의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차입금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자본 규모가 축소되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인력 이탈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유통 사업은 일반적으로 인력의 규모에 따라 작업 가능량이 비례하여 증가하며,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슈퍼바이징 인력의 유무가 프로젝트의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타 산업에 비해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당사는 사업경쟁력 및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공정을 표준화하여 개별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습니다. 또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의 동기 부여 및 이탈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이탈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 핵심인력 및 제작 인력의 이탈 시 당사의 경쟁력, 영업 및 경영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경영 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등기임원은 윤준호 대표이사 외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사 이사회 및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 및 사외이사 등의 장치도 갖추고 있으므로,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특허 관련 위험** 당사는 자체 개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주얼 콘텐츠 전문 솔루션 기업으로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는 한편, 화질개선기술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제3자가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할 가능성 또한 상존합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카.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위한 당사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국내 증권시장 및 해외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의 2021년 온기 실적 기준으로 PSR(Price Sales Ratio; 주가매출비율)과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비교기업은 업종 유사성, 사업 유사성, 재무적 유사성, 일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개 기업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의 2021년 온기 실적 기준 PSR의 평균은 12.8배, PER의 평균은 29.9배입니다.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에 할인율 39.20%~22.61%를 적용한 공모희망가액은 11,000원~14,000원입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와 PS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희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PER, PSR 각각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에 따른 투자판단 위험**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상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래예측 진술의 포함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는 당사 경영진의 현재 분석을 토대로 한 미래 예측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온기 감사보고서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 재무사항의 변동으로 인해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 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0,224,235주 중 약 20.66%에 해당하는 2,112,137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상장주선인의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6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기준 퇴사로 인한 취소분을 반영한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 수량은 1,283,100주입니다. 이는 상장 당일 공모 후 상장보통주식수의 12.5%입니다. 상장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매청구권 미부여 위험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

	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타.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 후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가는 최초 공모가액을 하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모가에 금번 공모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파. 투자설명서 교부관련 위험**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 공모 주식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모집(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2년 4월 14일 ~ 15일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2년 4월 19일 ~ 20일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의 의미, 기재사항 및 발행 일정의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의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집단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버.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서.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 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 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자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투자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 인수인과 일반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는 당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27%(공모 후 1.06%, 의무인수분 53,250주 0.52% 별도) 로 이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 시 회사와 주관회사 간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774,967	500	17,000	30,174,439,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1,774,967	30,174,439,000	1,398,586,005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4월 19일 ~ 2022년 04월 20일	2022년 04월 22일	2022년 04월 19일	2022년 04월 22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9,000,000,000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29,590,259,195
발행제비용	1,489,429,80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포바이포	본인(자기주식)	184,967	184,967	0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1,774,967	500	17,000	30,174,439,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1,774,967	30,174,439,000	1,398,586,005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04.19 ~ 2022.04.20	2022.04.22	2022.04.19	2022.04.22	-

주1)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4. 종합평가 결과』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포바이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2년 04월 19일 ~ 04월 20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2년 04월 19일 ~ 04월 20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2년 04월 19일 ~ 20일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0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년 03월 1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0)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11)	비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53,250주	905,25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 계		53,250주	905,25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 17,000원 기준**입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확정공모금액17,000원**기준 53,25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포바이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590,000주(공모주식의 89.6%), 구주매출 184,967주(공모주식의 10.4%)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1,774,967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774,967주	10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443,742 주	25.00%	17,000원 (주1)	7,543,614,000원	-
기관투자자	1,331,225 주	75.00%		22,630,825,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	1,774,967 주	100.00%		30,174,439,000원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일반투자자	397,500 주	25.00%	17,000 원	6,757,500,000 원	-
기관투자자	1,192,500 주	75.00%		20,272,500,000 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590,000 주	100.00%		27,030,000,000 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주당모집가액	배정비율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590,000 주	17,000 원	100%	27,030,000,000 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원)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97,500 주	17,000 원	6,757,500,000 원

주3)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주5)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각각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주6)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7)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184,967 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84,967 주	100.00%	-

【참조】 매출세부내역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공모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46,242 주	25.00%	17,000 원	786,114,000 원	-
기관투자자	138,725 주	75.00%		2,358,325,000 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84,967 주	100.00%		3,144,439,000 원	-

주1)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매출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84,967 주	100.0%	17,000 원	3,144,439,000 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포함)
합계		184,967 주	100.0%		3,144,439,000 원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주2)

구분		일반청약대상 매출주식수	주당 매출가액	일반청약대상 매출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46,242 주	17,000 원	786,114,000 원
합계		46,242 주		786,114,000 원

주3)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주5)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각각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

주6) 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7) 주당 매출가액 및 매출총액은**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금번 매출 대상 184,967주는 ㈜포바이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해당하므로, 매출을 위한 별도의 위탁은 없습니다.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증권의 종류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주1)	매출후 보유증권수
㈜포바이포	본인	기명식보통주	184,967주	184,967주	-
합 계			184,967주	184,967주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미래에셋증권㈜	53,250주	17,000원	905,250,0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포바이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11,000원 ~ 14,000원
주당**확정**공모가액	**1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 상기 주당**확정공모가액은**범위는 ㈜포바이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 결과』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22년 04월 14일(목)	(주1)
기업 IR	2022년 04월 05일(화) ~ 2022년 04월 13일(수)	(주2)
수요예측 일시	2022년 04월 14일(목) ~ 2022년 04월 15일(금)	(주3)
공모가액 확정공고	2022년 04월 18일(월)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2년 04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2년 04월 15일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

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직전 영업일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 조건】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④항 및 ⑤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⑤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

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⑦ 금번 공모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⑧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한 경우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2에 의거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미래에셋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적용)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미청약, 미납입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2)			12개월 X 환매비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주1)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X 확약기간 일수)] X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1)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100만원 미만 경제적 이익은 절사)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주5)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주1)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주1)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 등 정보 허위 작성, 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 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주2)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주2) 확약종료일 종가: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기관투자자	1,242,477주 1,331,225주	70.00% ~ 75.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774,967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 일반청약자 배정분 443,742주 ~ 532,490주(25.0%~3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1,331,225주(기관 배정 물량)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331,225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내 용
수량단위	1,000주
가격단위	100원

주1)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증권㈜의 홈

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증권㈜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수요예측 참여
④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 19호, 20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제19호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 접수 방법】(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 통 서 류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주1)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집합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소정양식) - 수탁회사의 펀드설정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증 사본
	투자일임회사 (투자일임재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 제출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코넥스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벤처기업 투자신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벤처기업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해외 기관투자자	-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 주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3-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1)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상단의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2022년 04월 14일(목) ~ 04월 15일(금) 17:00 (한국시간)
접수처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증권㈜ 동관 35층 IPO3팀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5층 IPO3팀
TEL	02) 3774-1374, 7154, 7157
FAX	0505-085-1374, 0505-085-7154

【해외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2022년 04월 14일(목) ~ 04월 15일(금)17:00 (한국시간)	
접수처	미래에셋증권㈜ 동관 18층 One-Asia Equity Sales팀	
접수방법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securities.miraeasset.com) 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증권㈜ 서관 6층 One-Asia Equity Sales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서관 6층 One-Asia Equity Sales팀	
담당자	민경진	김재근
전화번호	02-3774-3775	02-3774-3785
E-mail	stella.min@miraeasset.com	jaekeun.kim@miraeasset.com
Fax	0505-085-3775	0505-085-3785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

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미래에셋증권㈜「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청약⇒ 수요예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IPO3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미래에셋증권㈜의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사항 (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포바이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주1)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과 발행회사인 ㈜포바이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종합평가 결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1,331,225주 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 3) 수량단위 : 1,000주 4) 가격단위 : 100원 5) 가격 : 가격 미제시 가능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인정함) 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배정대상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 (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하에 배정이 가능)	-
배정기준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확정공모가액으로 무조건 배정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 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주1)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331,225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3)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주4)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증권㈜ 「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주1)	거래실적(무)	
건수	268	217	274	914	69	151	1,893
수량	354,038,000	284,460,000	357,742,000	1,188,345,000	73,587,000	199,692,000	2,457,864,000
경쟁률	265.95	213.68	268.73	892.67	55.28	150.01	1,846.32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주1)		거래실적(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250	330,518,000	211	278,042,000	264	346,475,000	880	1,146,933,000	1	1,331,000	104	137,353,000	1,710	2,240,652,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7	9,286,000	1	1,331,000	4	3,972,000	12	14,741,000	0	0	0	0	24	29,330,000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	-	-	-	-	-	-	-	-	-	-	-	-	-
밴드하단미만	-	-	-	-	-	-	-	-	-	-	-	-	-	-
미제시	11	14,234,000	5	5,087,000	6	7,295,000	22	26,671,000	68	72,256,000	47	62,339,000	159	187,882,000
합계	268	354,038,000	217	284,460,000	274	357,742,000	914	1,188,345,000	69	73,587,000	151	199,692,000	1,893	2,457,864,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가격미제시	159	8.40%	187,882,000	7.64%
17,000원 이상	1,522	80.40%	1,999,467,000	81.35%
14,000원 초과 ~ 17,000원 미만	188	9.93%	241,185,000	9.81%
14,000원	24	1.27%	29,330,000	1.19%
11,000원 이상 ~ 14,000원 미만	0	0.00%	0	0.00%
11,000원 미만	0	0.00%	0	0.00%
합계	1,893	100.00%	2,457,864,000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주1)		거래실적(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6개월 확약	30	39,618,000	8	10,648,000	22	29,278,000	89	118,458,000	0	0	14	18,634,000	163	216,636,000
3개월 확약	104	137,748,000	48	63,150,000	50	66,517,000	276	360,963,000	2	2,662,000	42	55,498,000	522	686,538,000
1개월 확약	28	37,007,000	26	34,606,000	31	40,330,000	97	126,088,000	3	3,993,000	15	19,748,000	200	261,772,000
15일 확약	15	19,965,000	20	26,620,000	14	18,634,000	45	59,892,000	14	17,277,000	43	57,159,000	151	199,547,000
확약합계	177	234,338,000	102	135,024,000	117	154,759,000	507	665,401,000	19	23,932,000	114	151,039,000	1,036	1,364,493,000
총 참여건수 및 수량 대비 비율(%)	66.04%	66.19%	47.00%	47.47%	42.70%	43.26%	55.47%	55.99%	27.54%	32.52%	75.50%	75.64%	54.73%	55.52%
미확약	91	119,700,000	115	149,436,000	157	202,983,000	407	522,944,000	50	49,655,000	37	48,653,000	857	1,093,371,000
합 계	268	354,038,000	217	284,460,000	274	357,742,000	914	1,188,345,000	69	73,587,000	151	199,692,000	1,893	2,457,864,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포바이포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774,967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17,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30,174,439,000원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2년 04월 19일(화)
		종료일	2022년 04월 20일(수)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2년 04월 19일(화)
		종료일	2022년 04월 20일(수)
청약 증거금 주4)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22년 4월 22일(금)

주1)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포바이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포바이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증거금

주4)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4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2년 4월 22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4월 22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취급처

주5) ①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②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③일반청약자는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한 청약처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④일반청약자는 청약취급처를 통해 복수 청약처에서의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신 문
수요예측 안내공고	2022년 04월 14일(목)	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	2022년 04월 18일(월)	인터넷 공고 주2)
청약공고	2022년 04월 19일(화)	인터넷 공고 주3)
배정공고	2022년 04월 22일(금)	인터넷 공고 주4)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2년 04월 14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에 게

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2년 04월 18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청약공고는 2022년 04월 19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합니다.

주4)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2년 04월 22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2년 04월 22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5) 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2년 04월 21일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6)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미래에셋증권㈜,본・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구분	청약 한도	배정 비율	자격요건	증거금율	청약수수료
우대	200%	100%	온라인 매체 청약 (HTS, MTS, Web, ARS)	50%	0원 (단, Bronze 등급 2,000원)
일반	100%		영업점 청약 (내점/유선)	50%	건당 5,000원
제한사항			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주1)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주2) 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주3) 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4)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주5) 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주6) 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주7)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주8) 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9) 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의 각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미래에셋증권㈜	443,742주	주)	50%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44,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2,000주 (100%)

주)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2,000주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2년 04월 19일(화) ~ 20일(수)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율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2년 04월 22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납입방법(미래에셋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8)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9)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 (1,331,225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443,742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 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443,742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주)포바이포 공모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물량이 없으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443,742주 이외의 추가 배정은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포바이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443,742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21,871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2년 04월 21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의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2년 4월 22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개별통지하여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전화・전신・모사전송・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미래에셋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기관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해당사항 없음
일반청약자	1) 과 2) 를 병행 1)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미래에셋증권㈜ 본・지점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까지 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미래에셋증권㈜ 청약유형별 청약방법】

구분	청약방법
영업점 내방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 (HTS)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ARS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고객 중 투자설명서 수령을 원치 않거나 이미 수령하신 고객에 한해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포바이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인수인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4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2년 04월 22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04월 22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4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우리은행 평촌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

②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인수인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1년 12월 0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년 3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단위: 원)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	인수금액	인수 조건
구분	명칭	주소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기명식 보통주 1,774,967주	30,174,439,000원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기준입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원)

구분	인수인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증권㈜	1,398,586,005 원	대표주관회사

주1)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포바이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53,250 주	905,250,000 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

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발행회사인 ㈜포바이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53,25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보호예수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는 당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보통주식 108,7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 내역】

주주명	구 분	주식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지분율 (공모 전)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의무보유 기간
미래에셋증권(주)	상장주선인	기명식보통주	2021년 09월 10일	108,700주	1.27%	9,200원	1,000,040,000 원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1)

주1)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가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주식 108,7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5호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합니다.**금번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은 17,000원으로 괴리율이 84.78%인 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2)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9,2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과의 괴리율은 84.78% 입니다.**

인수인	증권의 종류	**확정** 공모가액	취득가액	괴리율	비고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7,000 원**	9,200원	**84.78%**	-

주1) **확정**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확정**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27%(공모 후 1.06%, 의무인수분 53,250주 0.52% 별도)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미래에셋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

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상장주선인의 내부통제 기준]

제52조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관리)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①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③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업실사 절차, 조사·검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업실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 시 회사

와 주관회사 간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26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최대 30개월간 의무보유예탁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상장 후 최대 30개월간 매각이 제한 됩니다.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유예탁]

(단위: 주)

구분	주주명	관계	공모 후		유통가능한 주식		매각제한주식		매각제한기간	매각제한사유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상장일 기준)	
최대주주등	윤준호	대표 이사	2,850,280	27.88%	-	0.00%	2,850,280	27.88%	30개월	주1)
	김일균	당사 임원	79,000	0.77%	-	0.00%	79,000	0.77%	12개월	
	정민희	당사 임원	52,000	0.51%	-	0.00%	52,000	0.51%	12개월	
소계			2,981,280	29.16%	-	0.00%	2,981,280	29.16%	-	-

주1)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예탁되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5)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 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 상 증권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14,000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8종류로 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53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4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업연도중 1회의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제5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5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용어 안내표]

용어	용어 설명
실감형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New Media Contents)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문, TV와 같은 기존 정보 수단을 대신해 새롭게 등장한 정보 매체를 뉴미디어라 하며, 뉴미디어 콘텐츠는 해당 매체에 활용되는 콘텐츠를 총칭
화소 (Pixel)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해상도 (Resolution)	화면 또는 인쇄 등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면이 얼마나 많은 수의 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나타냄.
올레드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빛을 내는 층이 전류에 반응하여 빛을 발산하는 유기 화합물의 필름으로 이루어진 박막 발광 다이오드(LED)로, 액정 디스플레이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음
4K 콘텐츠	화면 비율 16:9, 해상도 가로 3,840×세로 2,160, 화소 수 829만 4,400개에 해당하는 영상 품질 규격을 충족하는 콘텐츠
8K 콘텐츠	화면 비율 16:9, 해상도 가로 7,680×세로 4,320, 화소 수 3317만 7,600개에 해당하는 영상 품질 규격을 충족하는 콘텐츠. 4K 콘텐츠 대비 4배 높은 해상도를 보이며, 현실과 동일한 수준의 깊이감 및 현장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 광고로, 공공장소 및 상업공간 등에 설치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오락, 광고 등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복합 정보매체
미디어 어트랙션 (Media Attraction)	미디어(Media)와 테마파크 놀이기구(Attraction)의 합성어로, 플라잉 씨어터 등 테마파크 내 초고화질 실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대형 놀이기구를 의미
VFX (Virtual Effects)	영상물에서 컴퓨터 그래픽 또는 아날로그 테크닉을 써서 실재하지 않은 시각효과를 내는 기술의 총칭
VFX Asset	컴퓨터그래픽스, 시각특수효과 등의 제작 기법을 활용해 가상 공간에 사전 제작된 오브젝트, 캐릭터, 특수효과 등의 소스
VR (Virtual Reality)	가상을 뜻하는 Virtual과 현실을 뜻하는 Reality의 합성어. 가상현실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
AR (Argu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XR (eXtended Reality)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초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를 가리킴
버추얼 휴먼 (Virtual Human)	CG, VFX 기술을 통해 생성된 가상의 디지털 인물로서, 실제 사람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임

MCN (Multi Channel Network)	1인 혹은 중소 콘텐츠 창작자들과 제휴해 마케팅, 저작권 관리, 콘텐츠 유통 등을 지원, 관리하는 사업. 일반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기획사를 지칭
리마스터링 (Remastering)	예전 매체를 현시대에 맞는 화질 또는 음질로 보정 또는 다시 작업해 재구성하는 작업을 총칭
스톡 영상	스토리가 없는 비디오 영상으로,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 제작자들의 영상 제작 및 편집과 광고, 마케팅 캠페인 등에 주로 사용되는 영상 촬영소스를 의미
B2B (Business-to-Business)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
B2C (Business-to-Customer)	기업과 개인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
선예도 (Sharpness)	영상 및 이미지에서 대상의 각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대상의 판별이 용이한 정도를 말하며, 선예도가 높을 수록 영상 및 이미지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남
노이즈 (Noise)	영상의 처리 과정, 데이터의 전송 및 저장 과정에서 외부 환경조건과 같은 다양한 원인과 시스템 내부의 간섭으로 인하여 디지털 영상을 훼손시키는 불필요한 데이터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컴퓨터를 인간처럼 학습시켜 스스로 규칙(알고리즘)을 형성하게 하기 위한 기계 학습 방법으로 주로 통계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결과를 도출
딥러닝 (Deep Learning)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으로,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구축한 기계 학습 기술.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해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학습.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DNN)	복잡하고 다양한 비선형적 관계의 학습에 활용되는 인공 신경망의 한 종류.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다중의 은닉층을 포함하여 하위 계층들의 특징 학습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알고리즘 대비 효율적인 모델링 가능
훈련 데이터 (Training Data Set)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 양질의 다수 훈련데이터를 적용할수록 알고리즘의 고도화 가능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	당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우수한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인지적 화질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모델로, 저품질/저화질의 미디어 콘텐츠 투입 시 자동적으로 콘텐츠 별 이상적인 인지적 화질을 파악하여 짧은 시간 내 화질 개선 작업을 거쳐 고품질/고화질 미디어 콘텐츠로 전환해주는 솔루션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위험

당사는 딥러닝 기반 화질 개선 기술인 PIXELL에 기반하여 고화질 콘텐츠 제작,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화/드라마 후반 제작, 스톡 영상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영역은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성격을 띄고 있어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존재합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의 지속, 전세계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국내외 경제가 침체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사업, 실적,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딥러닝기반 화질개선기술인 PIXELL에 기반하여 고화질 콘텐츠 제작,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화/드라마 후반 제작, 스톡 영상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광고 콘텐츠 성격을 띄는 고화질 콘텐츠 비즈니스는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존재합니다. 경기 호황 시에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가전/디스플레이 기업의 신규 디스플레이 제품 런칭이 활성화되고, 이와 관련된 광고/마케팅 예산이 증대됨에 따라 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시에는 마케팅 시장이 축소되어 당사의 고화질 콘텐츠 제작 관련 매출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디어어트랙션이나 전시 등으로 대변되는 뉴미디어 콘텐츠 및 영화/드라마 또한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강하여 상기 광고시장과 마찬가지로 경기 변동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IMF는 2022년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대비 0.5%p 낮춰 4.4%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 예상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 및 소비감소 등의 요인을 반영된 것입니다. 향후 세계경제는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인플레이션 확대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성장률 하향전망에 따라 예상 성장률이 일부 하향조정되었으나, 경상수지 및 소비호조, 추가경정 등으로 인해 주요국 대비 성장률 둔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성장 전망, 단위: %, %p, 출처: 2022년 1월 IMF 세계경제전망]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1년 10월 발표	'22년 1월 발표	조정폭	'21년 10월 발표	'22년 1월 발표	조정폭
세계	-3.1	5.9	4.9	4.4	-0.5	3.6	3.8	+0.2
선진국	-4.5	5.0	4.5	3.9	-0.6	2.2	2.6	+0.4
미국	-3.4	5.6	5.2	4.0	-1.2	2.2	2.6	+0.4
유로존	-6.4	5.2	4.3	3.9	-0.4	2.0	2.5	+0.5
독일	-4.6	2.7	4.6	3.8	-0.8	1.6	2.5	+0.9
프랑스	-8.0	6.7	3.9	3.5	-0.4	1.8	1.8	+0.0

이탈리아	-8.9	6.2	4.2	3.8	-0.4	1.6	2.2	+0.6
스페인	-10.8	4.9	6.4	5.8	-0.6	2.6	3.8	+1.2
일본	-4.5	1.6	3.2	3.3	+0.1	1.4	1.8	+0.4
영국	-9.4	7.2	5.0	4.7	-0.3	1.9	2.3	+0.4
캐나다	-5.2	4.7	4.9	4.1	-0.8	2.6	2.8	+0.2
한국	**-0.9**	**4.0**	**3.3**	**3.0**	**-0.3**	**2.8**	**2.9**	**+0.1**
기타 선진국	-1.9	4.7	3.7	3.6	-0.1	2.9	2.9	-
신흥개도국	-2.0	6.5	5.1	4.8	-0.3	4.6	4.7	+0.1
중국	2.3	8.1	5.6	4.8	-0.8	5.3	5.2	-0.1
인도	-7.3	9.0	8.5	9.0	+0.5	6.6	7.1	+0.5

한국은행이 2022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GDP 성장률은 2022년 3.0%, 2022년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감염병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간소비의 경우 소득여건과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점차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3.1%, 2023년 2.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이어지겠지만, 2분기 이후 경제활동 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02)]

구분	2021년			2022년(E)			2023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4.0	4.0	4.0	2.8	3.1	3.0	2.5
민간소비	2.4	4.8	3.6	3.9	3.2	3.5	2.6
설비투자	12.6	4.1	8.3	-1.3	5.8	2.2	1.7
지식생산생산물투자	4.0	3.7	3.9	4.2	3.7	3.9	3.8
건설투자	-1.5	-1.5	-1.5	0.6	4.0	2.4	2.3
상품수출	14.4	6.0	9.8	4.5	2.5	3.4	2.2
상품수입	12.5	11.2	11.8	5.6	2.1	3.8	2.3
취업자수 증감(만명)	12	62	37	36	20	28	20
실업률	4.5	2.9	3.7	3.8	3.3	3.6	3.7
고용률	59.8	61.2	60.5	60.1	61.1	60.6	60.7
소비자물가	2.0	3.0	2.5	3.5	2.7	3.1	2.0
경상수지(억달러)	418	465	883	280	420	700	680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로 인한 또 다른 여파가 확산된다면 민간소비 등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글로벌 소비 심리 등을 비롯하여 당사와 관련한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및 국내경제 전망에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에 대한영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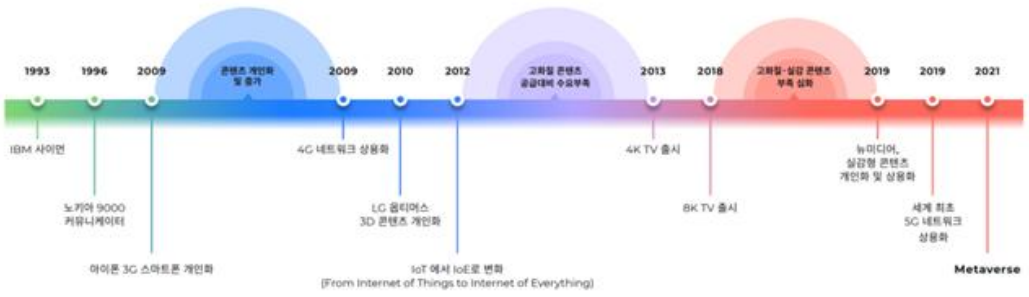
불가능하며,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주요 사업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콘텐츠 시장의 성장성 정체 위험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초고화질 콘텐츠(고화질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 사이니지 향)시장, 글로벌 VFX 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스톡 영상 시장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콘텐츠, VFX 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스톡영상 시장은 각각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하여 당사가 높은 성장률의 수혜를 입지 못하거나, 해당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콘텐츠 제작 사업은 전반적인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콘텐츠 시장은 콘텐츠 사업자의 니즈 및 관련 기술의 진화가 맞물려 시장의 크기가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4K, 8K 등의 고화질 콘텐츠 재생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패널기술의 발전,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콘텐츠를 송·수신하는 5G기술의 확산 등 콘텐츠 인프라 기술의 성장과 발맞추어 고화질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림: 기술발전과 수요 증가에 따른 콘텐츠 시장의 진화, 출처: 포바이포 자체 자료]



구체적으로 당사는 딥러닝 기반 화질개선 솔루션 'PIXELL'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인 KEYCUT VISUAL과 영상 콘텐츠 유통 사업인 KEYCUT STOCK 두 가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자 당사는 기존 콘텐츠 제작 업체들과 같이 CG 등을 활용한 시각적 특수효과에 더해 '화질 개선' 공정을 추가하여 VFX기반의 콘텐츠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목의 성격에 따라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초고화질 콘텐츠(고화질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 사이니지 향)시장, 글로벌 VFX 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스톡 영상 시장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표: ㈜포바이포 서비스 품목별 추이 및 목표시장]

구 분	목표시장

콘텐츠 제작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고화질 콘텐츠 시장 (고화질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화/드라마 후반 제작	글로벌 VFX 시장
콘텐츠 유통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스톡 영상 시장

(1) 고화질 콘텐츠 제작 시장

당사의 주 매출원인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서비스는 고화질 콘텐츠 시장에 속합니다. 초고화질 콘텐츠란 초고화질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미디어 콘텐츠를 의미하며, 가전제품 매장에 전시된 고화질 TV나 CES, IFA 등 국제전시회의 가전 부문에서 상영되는 영상과 같이 평소에 보기 어려운 뚜렷하고 선명한 콘텐츠를 뜻합니다. 글로벌 가전사에서 제조하는 디스플레이는 각 제조사별, 품목별 기기의 사양이 모두 다르고, 이에 적합한 영상 콘텐츠의 명암비, 채도, 선명도 또한 전부 상이합니다. 당사는 전문 인력 및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 기반 우수한 Picture Quality 구현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가전사의 국제 전시에 활용되는 영상 콘텐츠를 각 디스플레이에 최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시장 중 고화질 콘텐츠의 시장 규모만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추산할 수 없는데, 요구되는 화질 성격에 따른 콘텐츠 시장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전사 등에 납품되는 고화질 콘텐츠의 경우 그 시장 규모가 전체 콘텐츠 시장 대비 비교적 영세하기 때문에 별도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금번 증권신고서에서는 초고화질 콘텐츠의 주요 사용 목적이 고화질 디스플레이 신규 출시에 따른 국제 가전 전시회 등에서의 홍보 목적이라는 점과 향후 디스플레이가 고도화될 수록 고화질 콘텐츠의 공급량 또한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과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등 하드웨어 시장의 성장성을 통해 고화질 콘텐츠 시장의 성장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가)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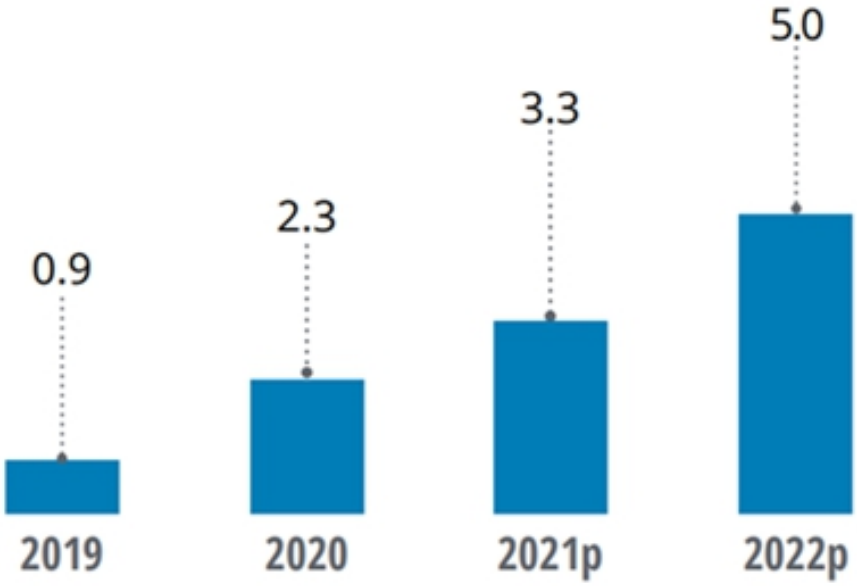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은 가정 내 대형 디스플레이 TV가 상용화되고 기존 고화질로 분류되던 4K 해상도 이상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확산됨에 따라 점차 시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표: 글로벌 TV 시장 내 70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 비중(금액 기준), 출처: Omdia]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
비중 (%)	10.2%	14.4%	18.2%	20.6%

4K/8K급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K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으나 실체감, 무게감 등을 화면을 통해 체감할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선명한 색을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TV 제조사들이 8K TV를 출시하면서 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Deloitte의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2021'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8K 디스플레이 패널 매출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며 2021년 기준 약 33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림: 8K 디스플레이 관련 시장규모 전망, 단위: 십억달러, 출처: Deloitte TMT Predictions]



8K 디스플레이 관련 시장규모 전망

TV 등 디스플레이의 대형화와 고화질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은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재생할 수 있는 초고화질 및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디스플레이 패널의 발전속도가 늦어지거나, 시장의 수요가 충분히 커지지 않는 등 디스플레이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고화질 콘텐츠 시장 또한 성장률이 제한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소자기술 발전에 따른 고해상도 콘텐츠 표현능력의 증가, 옥외광고 규제 완화, 네트워크 기술 발달 등의 흐름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MarketsandMarkets의 2019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2019년 208.2억달러에서 2024년 296.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유형에 따른 분류 중, 하드웨어 시장은 2024년 기준 18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유형별 Digital Signage Market, 단위: 십억달러, 출처: MarketsandMarkets, 2019]

유형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4	CAGR
하드웨어	9.84	11.51	12.81	13.99	15.19	17.34	18.83	6.1%
소프트웨어	3.43	3.60	3.80	4.12	4.54	5.72	6.79	10.5%
서비스	1.84	2.06	2.40	2.71	3.01	3.54	4.01	8.2%
합 계	15.11	17.18	19.01	20.82	22.73	26.60	29.63	7.3%

하드웨어 시장의 경우, 다시 하드웨어 유형으로 시장을 분류할 수 있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표: Digital Signage 하드웨어 내 유형별 시장규모, 단위: 백만달러, 출처: MarketsandMarkets, 2019]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4	CAGR
디스플레이	8,220.7	9,647.3	10,749.2	11,770.3	12,829.7	14,826.0	16,190.0	6.6%
프로젝터	646.5	767.9	873.4	964.9	1,036.6	1,083.3	1,119.7	3.0%
미디어 플레이어	533.3	592.0	642.5	674.6	701.6	740.7	759.3	2.4%
기타	441.4	504.3	543.6	581.7	619.5	692.8	756.5	5.4%
합 계	9,841.9	11,511.6	12,808.7	13,991.6	15,187.4	17,342.7	18,825.5	6.1%

이 중 당사가 영위 중인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과 상관관계가 높은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2019~2024 년 동안 연평균성장률 6.6%로 성장하여 2024년 기준 16,190 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특히 하드웨어 및 디스플레이 시장규모의 높은 성장성을 미루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고화질 콘텐츠의 수요 증대 및 관련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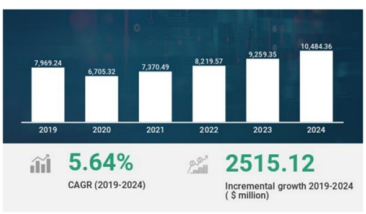
다만, 패널의 고도화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의 특성 상 각국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 디지털 사이니지의 산업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글로벌 VFX 시장

당사의 주 매출원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서비스는 글로벌 VFX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Technavio 보고서 'Visual Effects(VFX) Market by Application and Geography Forecast and Analysis 2020-2024'에 의하면, 글로벌 VFX 시장은 2019년 7,969.24 백만달러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까지 CAGR 5.64% 로 성장하며 2024년 10,484.36 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VFX 시장은 ① 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② VFX 프로덕션에서의 실시간 렌더링 기술 발전 ③ 업체 간 인수 및 파트너십 체결 기조가 강화되며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림: Global VFX Market Size and Forecast 2019-2024, 단위: 백만달러, 출처: Technavio]



글로벌 VFX 시장은 적용 분야에 따라 영화, TV, 게임, 광고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영화 관련 VFX 시장의 비중이 52.21%로 가장 높으며, TV가 25.94%로 2위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전체 VFX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Global Market Size by Application 2019-2024, 단위: 백만달러, 출처: Technavio]

유형	2019A	2020E	2021E	2022E	2023E	2024E
영화	4,160.7	4,529.4	4,944.3	5,412.0	5,940.8	6,537.8
게임	1,266.3	1,362.2	1,468.0	1,585.0	1,714.3	1,858.0
TV	2,067.2	2,235.9	2,425.0	2,637.5	2,876.2	3,145.7
광고	475.0	412.5	467.4	536.3	620.7	720.9

당사는 위의 세부 시장 중 영화, TV, 광고 시장과 관련한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당 세부시장이 성장할수록 관련한 사업 기회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VFX 시장은 다양한 유관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실감형 콘텐츠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시장 내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기에 국내외 실감형 콘텐츠 시장 성장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실감형 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입니다. 실감형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에 실감 기술을 적용, 오감을 통해 인식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몰입감, 상호작용, 지능화 등 3I (Immersive, Interactive, Intelligent)를 특징으로 합니다. 상기 특징 중 Immersive는 몰입감과 관련이 있는 특징으로, 시각적인 몰입감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당사의 강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은 콘텐츠의 고화질화를 기반으로 한 시각적인 실감화 사업이라 할 수 있기에, 실감형 콘텐츠의 시각적인 몰입감 구현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는 기존의 평면적인 디지털 콘텐츠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입체감과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경우 당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타 산업 내 당사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기에 당사 사업 성장과 거시적인 맥락에서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1 국내 실감형 콘텐츠 시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5G시대, 실감산업 육성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실감콘텐츠 시장은 5G 성능 향상과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2023년 기준 5조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국내 실감콘텐츠 시장 규모, 단위: 억원,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구분	2021(E)	2022(E)	2023(E)	연평균 성장률 ('21-'23)
실감콘텐츠 시장	32,400	46,800	57,600	33.3%

실감형 콘텐츠의 근간을 이루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국가간 경계 등이 존재하지 않고, 소비 및 생산 확대가 빠르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 나아가 실감형 콘텐츠 시장 역시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빠른 확장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 시장의 경우, 상기에 서술하였듯이 정부 차원에서의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2)-2 세계 실감형 콘텐츠 시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019)의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자료" 중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에 따르면, 실감 콘텐츠 시장은 2018년부터 2023년 까지 연평균 56.1%의 높은성장률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2023년 91,024 백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표: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국내 실감 콘텐츠 시장 전망과 마찬가지로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따른 실감콘텐츠 중심의 산업변화, 기업/공공기관 내 XR 기술 적용 증가, 고품질 실감콘텐츠 제작 확산에 따라 급속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다만 영화, TV, 게임, 광고 등 콘텐츠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거나,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VFX/CG를 활용한 후반 작업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또는 방식이 개발될 경우, 글로벌 VFX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VFX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예상보다 더딜 경우, 현재 예상과는 다르게 성장률

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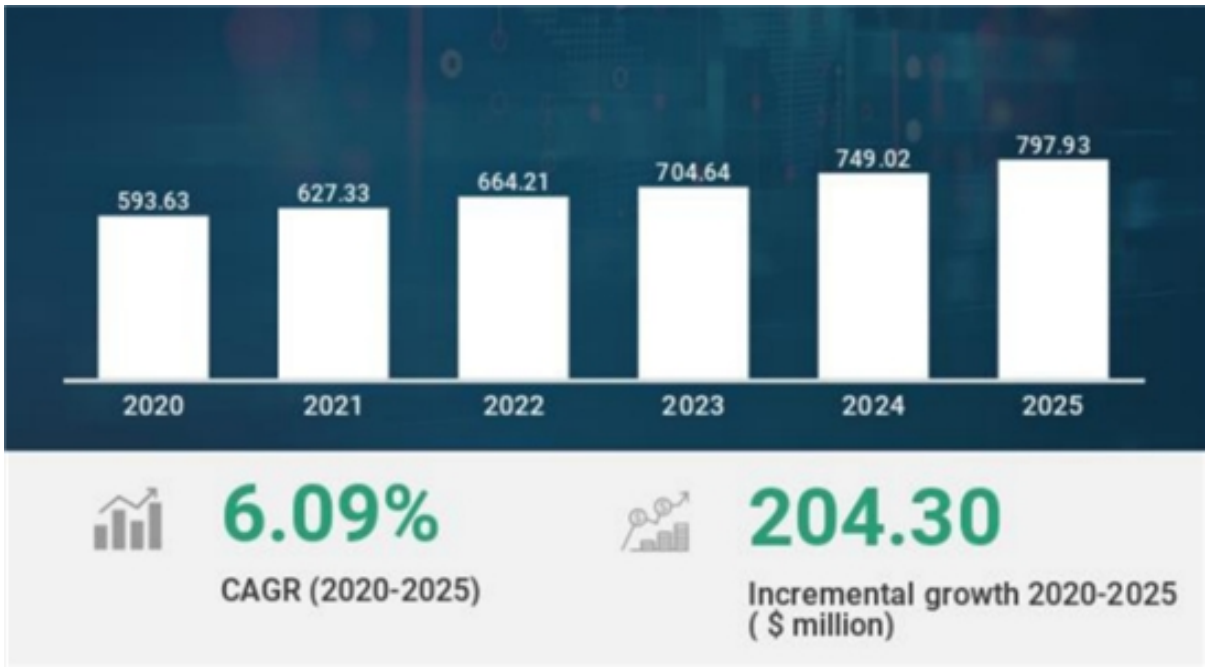
(3) 스톡 영상 시장

당사는 영상 작가가 촬영한 영상을 고화질화 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 'KEYCUT STOCK'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스톡 이미지 혹은 스톡 영상 시장의 영역에 속합니다. 국내외 영화, 드라마, 광고 등 미디어 업계에서는 콘텐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스톡 영상 시장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Technavio 에 의하면 스톡 영상 시장은 2020년 593백만 달러 수준으로, 2021 년부터 2025년까지 CAGR 6.09% 로 성장해, 2025년 798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 프로모션과 마케팅 콘텐츠의 증가, 인터넷 연결성의 증대, 스마트폰 사용량의 증가, OTT 플랫폼을 통한 영상 콘텐츠 시청 수요의 증가 등의 요소가 글로벌 스톡 영상 시장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림: Global Stock Footage Market Size and Forecast 2020-2025, 단위: 백만달러, 출처: Technavio]



Global Stock Footage Market Size and Forecast 2020-2025

다만 콘텐츠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제작시간 및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경우, 스톡영상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고화질 콘텐츠, VFX, 스톡영상 시장은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해당 시장의 성장이 당사 사업성과와 직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하여 해당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당사가 높은 성장률의 수혜를 입지 못

할 경우 당사의 사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인 초고화질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영화/드라마 등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의 경우 상위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며, 향후 당사와 유사한 기술력이나 관련 인력을 유치한 대형 경쟁사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 심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향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및 수주단가가 감소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외형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을 기반으로, 초고화질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화질개선솔루션 PIXELL 기술이 VFX에 기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영화/광고/뉴미디어 콘텐츠의 VFX/CG 기반 콘텐츠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을 주요 경쟁 업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능 경쟁업체로는 덱스터스튜디오, 자이언트스텝, 위지윅스튜디오 등이 있으며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 및 후반작업 기술기반 콘텐츠 제작으로 한정할 경우 해당 시장은 상위 업체가 과점하고 있어 향후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 혹은 신규 시장참여자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 심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표: VFX/CG기반 콘텐츠 제작시장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원, %, 출처:전자공시시스템]

(단위: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영업수익	점유율	영업수익	점유율	영업수익	점유율
덱스터	35,739	37.6%	38,294	28.5%	24,095	21.3%
위지윅스튜디오	23,649	24.9%	31,834	23.7%	19,488	17.2%
비전홀딩스코퍼레이션	6,559	6.9%	13,579	10.1%	18,021	15.9%
로커스	19,829	20.9%	23,389	17.4%	17,961	15.8%
자이언트스텝	12,767	13.4%	12,839	9.5%	15,536	13.7%
포바이포	**6,220**	**6.6%**	**10,645**	**7.9%**	**13,993**	**12.3%**
모팩	13,123	13.8%	24,879	18.5%	11,716	10.3%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6,725	7.1%	11,009	8.2%	10,460	9.2%
빅슨커뮤니케이션	6,089	6.4%	6,347	4.7%	6,164	5.4%
합계	94,961	100.0%	134,520	100.0%	113,338	100.0%

주1) 영업수익은 별도 또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화질개선솔루션 PIXELL을 기반으로 상기 경쟁업체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작공정의 자동화 및 유연화를 통하여 영화/드라마/광고 등 특정 콘텐츠 후반작업 뿐만 아니라 초고화질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와 성격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전략을 통하

여 업계 내 독보적인 영업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당 생산성 측면에서도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표: 포바이포의 인당 영업이익,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2019년	2020년	2021년
종업원 수(명)	31	54	81
영업이익(원)	813,863,487	1,812,890,452	4,013,969,721
인당 영업이익(원)	26,253,661	33,572,045	49,555,182

주1) 직원수는 각 사 임직원 중 등기 이사 등을 제외한 수치

이와 같이 당사는 다변화된 수익구조 및 효율적인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VFX/CG 기반 콘텐츠 제작 시장에서 당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주 변동성 위험

당사의 주 사업영역인 초고화질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영화/드라마 후반 제작 등은 콘텐츠 의뢰처와의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당사의 사업구조상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영업수익이 발생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로 인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중단되는 등 수주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초고화질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영화/드라마 후반 제작 등은 콘텐츠 수요처의 의뢰를 통한 해당 고객사와의 수의 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제작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영상 콘텐츠 각각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영업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당사는 기존 주력 사업이던 고화질 콘텐츠 외에 버추얼 휴먼, 대형 미디어 월 등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거래처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함에 따라 당사가 직접 영업하여 수주하는 프로젝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글로벌 가전사 및 디스플레이사와 제일기획, HS애드, 대홍기획 등의 광고대행사, 글로벌 테마파크 운영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 당사는 초고화질 콘텐츠를 공급하던 전통적인 거래처에서 홈쇼핑사, 엔터테인먼트사, 스포츠 레저 콘텐츠 제공 업체 등으로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수주잔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거래 상대방(글로벌 가전사, 광고대행사 등)과의 영업과 관련된 기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주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간략히 기재합니다.

[표: 포바이포 2021년 말 수주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금 액	비 율
주요 수주처(A)	3,859,875	55.31%
주요 수주처(B)	1,488,010	21.32%
주요 수주처(C)	1,229,917	17.62%
합계	6,577,802	94.26%

주) 보수적 기재를 위해, 진행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계약서 최종 날인이 진행되지 않은 수주계약의 경우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로 인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중단되는 등 수주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외주처 이용에 따른 위험

당사가 수주한 일부 프로젝트 중 일정 분량에 대해서는 외주업체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주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작업 난이도가 낮고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작업이므로 당사가 직접 수행하는것에 비하여 외주처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효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외주처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수주한 일부 프로젝트 중 일정 분량에 대해서는 VFX 외주업체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작업 난이도가 낮고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작업이므로 당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외주처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효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해당 외주 작업이 수행 가능한 다수의 업체가 산업 내 존재하여, 필요한 외주처를 선정하지 못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표: 영업수익 대비 외주처 비용]

	영업수익	영업비용	외주제작비	외주비중 (영업비용 대비)	외주내용
2019연도 (제3기)	10,645	9,831	7,458	75.9%	LG전자, 삼성전자 CES/ISE 전시용 영상 촬영 및 VFX 외주 용역
2020연도 (제4기)	13,993	12,181	7,632	62.7%	온라인 캠페인 콘텐츠 운영 외주 콘텐츠 시연용 플레이어 셋팅/조달 외주
2021년도 (제5기)	22,276	18,262	10,544	57.7%	KEYCUT STOCK 디지털 마케팅 사전 컨설팅

당사는 PIXELL 솔루션의 고도화를 통해 노동집약적인 대부분의 용역을 자동화하였으며, 영상 제작 시 당사 자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키컷스톡의 자체 IP를 활용해 촬영 용역을 대신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비용 대비 외주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시 당사가 직접 처리하기에 비효율적인 작업에 대한 외주를 맡기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결과물의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되며, 외주사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결과물의 품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최종 결과물을 제공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계약한 외주제작업체가 협의된 기간 내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당사의 예상보다 낮은 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당사는 원 발주처의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고객사와 계약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낮은 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함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당사의 콘텐츠 제작 관련 사업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당사에서 직접 작업하기보다 외주업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효율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시, 당사의 영업비용 중 외주제작비의 절대치 혹은 그 비중이 현재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주처 활용으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주처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부의 정책지원 또는 관련법 변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사업 성장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VFX 콘텐츠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전반을 제작하거나 실감화를 진행하는 당사 주요 사업의 성장은 VFX 콘텐츠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및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시장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VFX 콘텐츠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VFX 기반 후반제작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5G 네트워크 기술 및 VR/AR/XR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디지털 콘텐츠와 융합되기 시작하며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실감형 콘텐츠 시장은 2022년 현재에도 여전히 개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시장으로, 콘텐츠의 구현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법제적 틀이 기존 콘텐츠 제작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어 산업 실정에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산업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10월 31일 아래와 같이 9개의 실감형 콘텐츠 규제 혁신방안을 배포하였습니다.

[표: 국내 실감형 콘텐츠 규제 혁신방안, 출처: 언론보도자료]

분류	세부 내용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도 탑재 허용
영화비디오법	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관광진흥법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행정조치	VR시뮬레이터 '전기용품 안전확인' 기준 마련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플랫폼별(PC게임·모바일게임 등) 게임등급의 중복심의 개선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복합장르 게임 등급심의에 따른 수수료 기준 별도 마련
관광진흥법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에 안전성 검사 대상 VR시뮬레이터 설치 허용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동일 기종 VR시뮬레이터에 대한 확인검사 간소화
행정조치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이처럼 발표된 내용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신설 및 강화 기조가 아닌,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장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혁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XR, 5G 등 향후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조를 향후에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광고 성격을 띄는 옥외 디스플레이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는 부정적 인식 효과로 인해 광고의 크기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등이 규제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옥외광고 설치가 관광객 모객 효과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행정안전부가 2018년 5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를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만들고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지역으로 선정,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초대형, 고화질의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실감형 초고화질 VFX 콘텐츠가 다수 상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20년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10개 지자체에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을 위해 각 지자체 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옥외광고 사업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사는 VFX 고화질 콘텐츠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초대형 디스플레이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설치되는 길이 150미터의 초대형 LED 사이니지에 한국을 대표하는 32K 해상도의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한 바 있으며, 최근 서울 강남역 부근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에 롯데홈쇼핑의 버추얼 휴먼 루시가 등장하는 광고 목적의 VFX 기반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당사의 주요 사업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 디지털 옥외광고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은 당사의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수주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사업 실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크게 1) 버추얼 휴먼 제작운영, 2) 콘텐츠 리마스터링, 3) 영상유통 플랫폼 확장으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신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성장 동력을 통해 당사의 향후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수요의 변동, 혹은 기술의 한계 등의 이유로 신규 사업이 지연되거나 당사가 기대하는 수익보다 저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영업 및 경영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이 크게 1) 버추얼 휴먼 제작운영, 2) 콘텐츠 리마스터링, 3) 영상유통 플랫폼 확장으로 구분됩니다.

(1)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 가상인간)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버추얼 휴먼은 CG, VFX 기술을 통해 생성된 가상의 디지털 인물로서, 실제 인간과 이질감 없는 외형 구현이 가능하고, 사건/사고에서 자유롭고 관리가 수월하며, 활동에 제약이 없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언택트 상황에서 TV 및 소셜미디어 광고마케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에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전략적 투자자인 롯데홈쇼핑의 버추얼 휴먼 '루시'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루시는 롯데홈쇼핑 자체 제작 버추얼 휴먼이나, 최근 다양한 활용처가 발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품질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품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다양한 루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MCN(Multi Channel Network) 루시 온라인 마케팅 대행 등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당사는 당사 VFX 사업 담당 조직을 통해 버추얼 휴먼 '루시'의 콘텐츠 품질 개선 및 활용처별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게 되며, 이에 따른 당사의 버추얼 휴먼 제작 역량에 대한 홍보 효과도 기대 가능합니다.

당사는 상기 롯데홈쇼핑 '루시' 외 다양한 업체로부터 버추얼 휴먼 제작과 관련된 논의 요청을 받아 협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당사의 자체 버추얼 휴먼 제작 및 활용처 발굴을 통한 라이선스 수익화 모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구작 드라마 등 콘텐츠 리마스터링

당사는 과거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은 구작 드라마 중 현재 사양의 디스플레이에서 화질 등 문제로 시청 만족도가 낮은 구작 콘텐츠를 리마스터링 하여 유통하는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당사는 파일럿 스터디로 2010년 KBS2 TV 방영드라마였던 '성균관 스캔들'의 방영권을 바탕으로 고화질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무료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본격적인 사업 확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작 영화나 드라마 이외에도, 기타 엔터테인먼트 영상 등과 관련하여 리마스터링 수요가 있을 경우 동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영상 유통 플랫폼 KEYCUT STOCK 생태계 확장

- B2C 생태계 확장

당사는 현재의 전문 제작자 중심의 KEYCUT STOCK의 소비자층 확대를 위해 일반 SNS 사용자들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원천 재료와 편집툴을 제공하고, 당사 KEYCUT STOCK 플랫폼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당사는 이 과정에서 부가 서비스(화질 개선 및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 등)를 통한 서비스 수익 또는 상업화 시 수익 배분, 2차 저작물 확보를 통한 자체 콘텐츠 판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VFX Asset 등으로의 카테고리 확장

당사는 콘텐츠 유통 라인업 확장의 일환으로, VFX Asset(CG, VFX 제작 기법 등을 활용해 사전 제작된 오브젝트, 캐릭터, 특수효과 등 소스) 유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제작 방식은 실제 촬영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가상 인물, 가상 스튜디오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CG(컴퓨터 그래픽스), VFX (Visual Effects, 시각효과)의 활용이 보편화 되었으며, 실제 촬영된 결과물과 VFX Asset을 합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화질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내부 모션그래픽과 VFX 파이프라인을 활용, KEYCUT STOCK에 VFX Asset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2021년 기준 KEYCUT STOCK에 해당하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매출 비중은 7.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문 제작사 중심의 플랫폼 사용자층을 일반 SNS 사용자 등 B2C 생태계로 확장하고, VFX Asset 등 유통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등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최대 고화질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외형 확대를 통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매출 비중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신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실감화나 고화질화와 관련한 산업은 아직 정립되거나 개척된 시장이 아닙니다. 산업 관련 표준이나 단가 기준 등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사의 발생 가능한 매출 규모 또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시장수요의 변동, 혹은 기술의 한계 등의 이유로 신규 사업이 지연되거나 당사가 기대하는 수익보다 저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영업 및 경영성과 등

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구조에 따른 실적 악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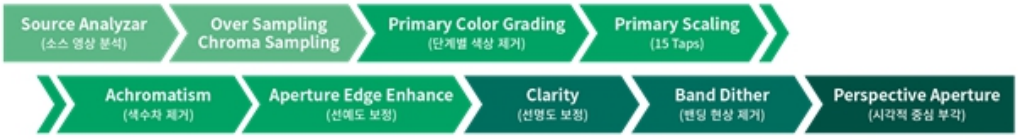
당사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KETCUT VISUAL 사업부문의 경우,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 수주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는 화질개선공정을 정립 및 자동화하는 한편 VFX기술 기반 PIXELL을 이용함으로써 수주한 프로젝트의 안정적 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의 특성 상 용역기간이 지연되거나 중도에 종료될 가능성 일부 존재합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총수주액이 영업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설립 이후 2018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여 영업수익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1년 온기 기준 당사 영업수익의 약 92.8%에 해당하는 KEYCUT VISUAL 사업부문에서는 다양한 고화질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대부분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 수주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수익은 대부분 위와 같은 프로젝트 수주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력 중인 초고화질 콘텐츠 및 뉴미디어 콘텐츠는 1~2개월 이내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완성되나, 영화 및 드라마 후반 작업의 경우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오래 소요될 경우 지연 혹은 중도 종료의 위험이 일부 존재합니다.

당사는 화질개선 공정을 아래와 같이 정립 및 자동화하고 VFX기반 화질개선 솔루션인 PIXELL을 도입함에 따라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요구사항이 정해진 기간 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 당사 9단계 화질 보정 공정 System]



위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수주 기반 사업구조의 특성 상 프로젝트 제작이 지연되거나 중도에 종료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총 수주액이 영업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사로부터의 가격방어력이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수익인식 관련 위험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초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 판매 사업의 경우 각각의 수행의무를 1)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2)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수익을 인도기준 또는 진행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있어 투입원가에 대한 부정확한 측정과 정확하지 않은 진행률 산정은 기인식된 손익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관련 계정과목들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초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 판매 사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준용하여 각각의 수행의무를 1)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2)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수익 인식 시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수익인식에 있어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규정하며, 이와 관련된 초고화질 영상콘텐츠 서비스 용역은 고객이 통제하고 있는 자산을 회사가 수행하여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당사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의무에 대한 진행률을 관리하며,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입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한 투입원가(직접노무원가 및 외주용역원가)가 회사의 수행 정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그 진척도에 비례하므로, 이는 용역의 수행 정도를 충실히 나타냅니다.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상원가의 산정 및 실제 발생원가의 집계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는 프로젝트 수임과 관련한 선수금은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에 따른 프로젝트 수익 중 Invoice(송장)가 발행된 부분은 매출채권, Invoice(송장)가 발행되지 않은 부분은 계약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동일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정책은 매출과 외주용역원가의 금액 및 인식시기, 매출채권, 계약부채, 계약자산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실제 발생한 원가의 체계적인 집계와 프로젝트 수행에 요구되는 예정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능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원가에 대한 추정 또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가 측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매출인식시점과 수익 인식의 규모, 기타 원가 및 관련 재무 항목들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외 매출 증가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글로벌 가전사 및 디스플레이사에 초고화질 콘텐츠를 제작해 납품함에 따라 해외법인향 매출의 비중이 크고, 뉴미디어 콘텐츠 사업 또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라 총 영업수익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능통화인 원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과 부채의 내역이 존재합니다. 환율변동위험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글로벌 경기 및 기축통화의 변동, 국내 통화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이 급변할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일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글로벌 가전사 및 디스플레이에 초고화질 콘텐츠를 제작해 납품함에 따라 해외법인향 매출의 비중이 크고, 뉴미디어 콘텐츠 사업 또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라 총 영업수익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 최근 3개년 매출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유형	품 목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콘텐츠 제작	서비스 매출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수출	4,828	412	173
			내수	15,851	12,492	10,473
			합계	20,679	12,904	10,645
콘텐츠 유통	플랫폼 매출	영상 콘텐츠 플랫폼 유통	수출	10	13	-
			내수	1,587	1,076	-
			합계	1,597	1,089	-
합 계			수출	4,838	425	173
			내수	17,438	13,568	10,473
			합계	22,276	13,993	10,645

주1) 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KEYCUT STOCK은 2020년 10월 런칭하였으며, 상기 콘텐츠 유통 매출은 KEYCUT STOCK의 런칭 이후 발생한 매출을 기재하였습니다.

회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금융상품을 통한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인 위험회피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율변동위험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및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USD	53,813	(53,813)	34,219	(34,219)
EUR	450	(450)	2,194	(2,194)
JPY	-	-	241	(241)
CNY	256,890	(256,890)	-	-
합계	311,153	(311,153)	36,654	(36,654)

환율변동위험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글로벌 경기 및 기축통화의 변동, 국내 통화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당사의 환 위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매출채권 회수 관련 위험

당사는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별 수행의무에 따른 진행기준에 의해 영업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단계별 완성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6개월 이내에 회수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률 또한 0.35%로서 매출채권과 관련한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장·단기 프로젝트 수주 규모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매출처가 확대될 경우 매출채권 잔액 및 회수기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수행하는 일부 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별 수행의무에 따른 진행기준에 의해 영업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단계별 완성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프로젝트별로 소요되는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프로젝트 수주 건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채권 잔액이 높게 계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9년(5.81회), 2020년(4.12회), 2021년 온기 기준(3.92회) 로 업종평균(6.64회, 한국은행 2020 연간 기업경영분석 J58-63(정보통신업)인용)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프로젝트 수주 건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가전사 및 이와 관련된 광고 콘텐츠 제작 수요가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6개월 이내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표: 연도별 매출채권 연령 분석, 단위: 천원]

구분	3월 미만	3~6월 미만	6~9월 미만	12개월 이내	12개월 초과	매출채권 잔액	부도금액 (업체수)

2021년말	5,227,055	2,537,934	-	-	-	7,764,989	-
2020년말	1,661,835	1,925,000	-	-	-	3,586,835	-
2019년말	2,362,248	839,546	-	-	-	3,201,794	-

주1) 매출채권 잔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기준입니다.

2021년말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 잔액은 약 7,765백만원이며, 이 중 대손충당금은 약27백만원입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대금지연 이슈가 아닌 기대적 손실모형에 따른 이론적 대손충당금입니다. 이는 전체 매출채권 잔액의 0.35% 수준으로, 대손충당금 관련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장·단기 프로젝트 수주 규모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매출처가 확대될 경우 매출채권 잔액 및 회수기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 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인력 효율화와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의 고도화를 통해 프로젝트별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실적 및 수익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인력 효율화의 기반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화질 개선 공정을 통한 역량 내재화가 있으며, 자체 개발 공정을 특허로 등록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내 진입장벽 또한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버추얼 휴먼,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당사 화질개선솔루션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신규 시장으로 진출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인 고화질 디스플레이, VFX 기반 실감형 콘텐츠 시장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당사의 실적 및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갖춘 신규 업체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 심화, 거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요 목표시장 침체,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한 인력 증대에 따른 인건비 급증 또는 관련 연구개발비의 증가, 유무형자산 취득 자금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기인하여 당사의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력 효율화와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의 고도화를 통해 프로젝트별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실적 및 수익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영업수익은 2019년 10,645백만원, 2020년 13,993백만원, 2021년 22,276백만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45%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업이익의 규모도 2019년 814백만원에서 2021년 4,01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표: 최근 3년간 사업성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제5기)	2020년 (제4기)	2019년 (제3기)
영업수익	22,276	13,993	10,645
영업비용	18,262	12,181	9,831
영업이익	4,014	1,813	814

영업이익률	18.00%	13.00%	7.60%
당기순이익	3,763	1,354	688
당기순이익률	16.90%	9.70%	6.50%

인력 효율화의 기반에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화질 개선 공정을 통한 역량 내재화가 있으며, 자체 개발 공정을 특허로 등록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내 진입장벽 또한 구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향후 버추얼 휴먼,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당사 화질개선솔루션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신규 시장으로 진출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인 고화질 디스플레이, VFX 기반 실감형 콘텐츠 시장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당사의 실적 및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갖춘 신규 업체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 심화, 거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요 목표시장 침체,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한 인력 증대에 따른 인건비 급증 또는 관련 연구개발비의 증가, 유무형자산 취득 자금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기인하여 당사의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설립 직후 업종평균 대비 다소 높게 유지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 등 외부투자자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영업활동에 따른 보유 현금을 활용하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으며, 2021년 상반기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등으로 인한 효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업종평균 대비 매우 낮은 약 22%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거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전방산업 부진 및 영업환경 악화 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또는 당사의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차입금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자본 규모가 축소되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설립 직후 업종평균 대비 다소 높게 유지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 등 외부투자자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영업활동에 따른 보유 현금을 활용하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으며, 2021년 상반기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등으로 인한 효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업종평균 대비 매우 낮은 약 22%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온기 기준 당사의 현금성 자산은 약 244.4억원에 달하며, 금번 공모를 통해 추가자금을 확보한다면 상장 이후에도 높은 재무적 안정성을 향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주요 재무안정성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연도 (제3기)	2020연도 (제4기)	2021연도 (제5기)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199.27%	316.64%	21.79%	79.44%

유동비율(%)	461.01%	258.76%	547.56%	147.69%
자본의 잠식률(%)	-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	-	42.00x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72)	2,996	1,845	-

주1) 2020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발간 '2020년 연간 기업경영분석(중견기업)' 중 J58-63 정보통신업 기준. 당사 업종: (J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주2) 당사는 사업의 특성 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재고자산 회전율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거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전방산업 부진 및 영업환경 악화 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또는 당사의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차입금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자본 규모가 축소되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채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으며, 특정 시점에 부채비율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인력 이탈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유통 사업은 일반적으로 인력의 규모에 따라 작업 가능량이 비례하여 증가하며,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슈퍼바이징 인력의 유무가 프로젝트의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타 산업에 비해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당사는 사업경쟁력 및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공정을 표준화하여 개별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습니다. 또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의 동기 부여 및 이탈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이탈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 핵심인력 및 제작 인력의 이탈 시 당사의 경쟁력, 영업 및 경영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유통 사업은 일반적으로 인력의 규모에 따라 작업 가능량이 비례하여 증가하며,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슈퍼바이징 인력의 유무가 프로젝트의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타 산업에 비해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우수한 인력 확보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직결될 수 있으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내에서의 이직률은 타 산업 대비 높은 편이며, 이는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직종별 종업원 수 및 평균 근속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연도별 종업원 수, 단위: 명]

직종	인 원 수			기중 퇴직자 수			평균 근속 연수
	2019연도	2020연도	2021연도	2019연도	2020연도	2021연도	
제작	26	43	63	8	20	24	1.61년

연구	2	4	7	0	0	1	2.79년
관리	3	7	11	0	3	1	1.20년
계	31	54	81	8	23	26	1.66년

주1) 등기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중 종업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해당연도부터 인원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설립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5년 이내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2개년(2020년~2021년)간 대규모 신규 인력 채용 등으로 평균적인 종업원 근속 연수는 1~2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영업수익의 근간을 이루는 VFX기반 화질개선 기술 'PIXELL'의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는 연구직종의 경우 2.79년으로 제작 직종의 1.61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당사는 사업경쟁력 및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공정을 표준화하여 개별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습니다. 또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의 동기 부여 및 이탈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세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회차별), 단위: 주, 원]

구분	대상	부여 주식수	취소 주식수	미행사 주식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일
1차	임직원 9명	300,000	40,000	260,000	50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이후 2년 간	'19.04.16
2차	임직원 34명	403,000	182,000	221,000	2,470	'22.04.01 ~ '24.03.31	'20.04.01
3차	임직원 46명	333,000	16,000	317,000	2,650	'23.04.01 ~ '25.03.31	'21.04.01
4차	임직원 22명	142,000	47,000	95,000	2,650	'23.06.21 ~ '25.06.20	'21.06.21
5차	임직원 38명	191,000	8,000	183,000	5,810	'23.10.01 ~ '25.09.30	'21.10.01
6차	임직원 63명	209,100	2,000	207,100	5,810	'24.01.06 ~ '26.01.05	'22.01.06
합계		1,578,100	295,000	1,283,100	-	-	-

주1) 1차 ~ 4차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2021년 8월 19일 무상증자(1주당 9주)에 따른 변동효과를 반영하였음

주2) 행사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년후와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중 빠른날짜와 비교해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이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주3) 취소주식은 자진 퇴사로 인한 취소분임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과 더불어 당사는 연구개발인력 등의 이탈로 인한 당사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 상 기밀유지에 대한 조항을 기재하여 계약 시 이에 대해 준수할 것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에 적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경우, 솔루션을 개발한 개발인력보다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당사의 학습 데이터는 설립 이후 사업을 영위하며 쌓아온 고품질의 화질 개선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쟁사에서 알고리즘을 복사한다고 하여 당사 수준의 화질 개선 기술을 구현하는 솔루션을 개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핵심 연구개발인력의 유출에 따른 당사 기술의 유출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당사가 보유한 다수의 특허 개발 인력과 특허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며, 상장 이후에도 연구 개발 실적을 달성한 임직원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른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업적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 핵심 인력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이탈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 핵심인력 및 제작 인력의 이탈 시 당사의 경쟁력, 영업 및 경영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경영 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등기임원은 윤준호 대표이사 외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사 이사회 및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 및 사외이사 등의 장치도 갖추고 있으므로,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등기임원은 윤준호 대표이사 외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임원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사 이사회 및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 및 사외이사 등의 장치도 갖추고 있으므로,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준호 대표이사는 콘텐츠 산업 내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창립 이후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술력을 가지고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윤준호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 지분(자사주 제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에도 약 29.2%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당사 등기임원 현황]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윤준호	남	1983.02.	대표이사	등기	상근	경영총괄, CEO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 학사('09) CJ파워캐스트 Art&Tech 슈퍼바이저('09~'14)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미디어개발실장 ('14~'17) 포바이포 대표이사('17~현재)

김일균	남	1986.06.	사내이사	등기	상근	전략기획, CFO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12)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11~'14) IBK투자증권 IB부문 IPO팀('15~'17) 삼성증권 IB부문 IPO2팀('17~'21) 포바이포 경영전략본부장('21~현재)
정민희	여	1982.12.	사내이사	등기	상근	키컷스톡 사업총괄	호서대학교 해외개발학과('07) 디지털존 해외마케팅 차장('06~'17)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콘텐츠큐레이션('17) 포바이포 키컷스톡 사업본부장('17~현재)
조재문	남	1961.08.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경영자문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84) KAIST 전기전자공학과 석사('86), 박사('91) 삼성전자 신호처리연구소 수석연구원('00) 삼성전자 DMC 연구소 상무('01~'11)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부사장('11~'16) - 삼성펠로우 2회 선임(신호처리분야) 퍼스트스텝랩스 대표이사(('21~현재) 포바이포 사외이사('21~현재)
이정인	남	1981.04.	감사	등기	비상근	감사	한국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10) 삼정KPMG 회계사('09~'15) 영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15~'20) 바름회계법인 회계사('20~현재) 포바이포 감사('21~현재)

당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특허 관련 위험

당사는 자체 개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주얼 콘텐츠 전문 솔루션 기업으로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는 한편, 화질개선기술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제3자가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할 가능성 또한 상존합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기술 특허 및 동 기술을 시현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

주얼 콘텐츠 전문 솔루션 기업으로서, 화질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초고화질콘텐츠나 뉴미디어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질 개선 데이터를 수년간 축적해왔습니다. 화질개선 딥러닝 솔루션 'PIXELL'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이며,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PIXELL 기술은 당사로 하여금 프로젝트 수행기간 및 인력을 단축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 보유중인 특허 및 상표권 목록

구분	내용	등록번호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출원국
특허권	정지장면의 연속프레임 영상에 기반한 영상분할장치 및 방법	10-1223046	당사	11.02.08	13.01.10	대한민국
	개선된 영상 생성 모델과 적응적 필터를 이용한 컬러 영상 보정 방법	10-1242069		11.07.04	13.03.05	
	변형된 영상 생성 모델을 이용한 컬러 영상 보정방법	10-1242070		11.07.04	13.03.05	
	시연 및 홍보용 텔레비전과 영상 제공용 유에스비 메모리 간의 잠금 장치	10-1981033		18.08.22	19.05.16	
	화질 개선된 인공지능 기반 영상 출력 방법	10-2054453		19.04.03	19.12.04	
	초고해상도 영상 콘텐츠의 화질 개선 방법	10-2058355		19.04.19	19.12.17	
	유심 탑재 저장매체	10-2123312		19.04.03	20.06.10	
	디지털 영상 선예도 강화 방법	10-2164998		19.04.25	20.10.06	
	디지털 영상 노이즈 제거 방법	10-2194447		19.04.25	20.12.17	
	입력영상 전처리를 이용한 화질보정방법	10-2245835		20.07.31	21.04.22	
	화질개선 초해상도 심층신경망 처리 방법	-		21.02.05	-	
	선예도 개선을 위한 심층 기울기 사전정보기반 L0 스무딩 방법	10-2342940		21.06.23	21.12.21	
상표권	주식회사 포바이포 상표-영문	40-1474848		18.08.29	19.05.02	
	주식회사 포바이포 상표-한글	40-1474847		18.08.29	19.05.02	
	주식회사 포바이포 38류 상표-한글	40-1499884		18.09.06	19.07.15	
	주식회사 포바이포 38류 상표-영문	40-1499891		18.09.06	19.07.15	
	MATCH 상표-로고	40-1503829		18.06.28	19.07.26	
	MATCH 상표-로고(2)	40-150383		18.06.28	19.07.26	
	MATCH 상표-로고(3)	40-1503832		18.06.28	19.07.26	
	국내 상표(KEYCUT)beta	40-1711013		20.04.14	21.04.02	
	K로고	40-1758146		20.07.07	21.07.30	
	KEYCUTstock로고	40-175815		20.07.07	21.07.30	
	KEYCUTstock	40-1758145		20.07.07	21.07.30	
	KEYCUT STUDIO	-		20.11.16	-	
	KEYCUT VISUAL	-		20.11.16	-	
	키컷 비주얼	-		20.11.16	-	
	키컷 스튜디오	-		20.11.16	-	
	키컷스톡	-		20.11.16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지적재산권 중,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진행 중인 소송 기타 분쟁은 물론, 제3자가 당사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진행 중인 소송 기타 분쟁 또한 없습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는 한편, 화질개선기술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록 등을 통하여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범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제3자가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할 가능성 또한 상존합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 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윤리강령 등 각종 규정 제정,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 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

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영업활동이 활발해져 사업의 외형이 증가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권리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카.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정, 부) 2인으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위한 당사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국내 증권시장 및 해외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의 2021년 온기 실적 기준으로 PSR(Price Sales Ratio; 주가매출비율)과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비교기업은 업종 유사성, 사업 유사성, 재무적 유사성, 일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개 기업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의 2021년 온기 실적 기준 PSR의 평균은 12.8배, PER의 평균은 29.9배입니다. 당사의 주당평가가액에 할인율 39.20%~22.61%를 적용한 공모희망가액은 11,000원~14,000원입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와 PS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희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PER, PSR 각각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2021년 온기 기준 PSR과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PSR과 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유사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유사회사들은 당사와 사업구조 및 전략, 제품(Service),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유사회사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ER 평가방식의 한계점]

1.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3.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4.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5.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PSR 평가방식의 한계점]

1. 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을 이용하는 안정성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이익과 가치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3.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을 기반으로, 초고화질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유사기업은 비교대상 표준산업분류가 '광

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에 속하는 12개 상장회사들을 모집단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유사기업은 GICS(글로벌 표준 산업분류)상 "Internet&Direct Marketing Retail과 BICS(블룸버그 산업분류)상 "Internet Media&Services"에 속하는 상장사 중미국, 영국, 호주,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업체를 제외하고 본사 소재지가 미국, 영국, 호주,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 시장이 아닌 기업을 제외한 17개 상장회사들을 모집단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사업 유사성 및 재무 유사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회사는 당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 규모 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 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에 따른 투자판단 위험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상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합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시장의 규모나 회사의 실적 등은 전망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전망의 내용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추정 및 업계 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최근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으므로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증권시장의 일일가격제한폭 ±30%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2015년 0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 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이후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이전의 공모주 투자 사례 대비 클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온기 감사보고서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 재무사항의 변동으로 인해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 관련 사항은 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 재무사항의 변동으로 인해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

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제시한 재무제표는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한 재무제표임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 참고 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0,224,235주 중 약 20.66%에 해당하는 2,112,137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상장주선인의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당사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며, 이에 따라 최대주주 윤준호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총 2,850,280주에 대하여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26조 제1항에 제7호 따라 24개월의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에 속하는 특수관계인 2인의 경우 보유주식 총 131,000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에서 6개월의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하여 총 12개월의 의무보유 기간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지분율 1% 이상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8인의 상장 예정 주식 2,259,640주 중 1,341,23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809,710주에 대해 상장 이후 최장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실행하였으며,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 108,700주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사의 지분율 1% 이상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아닌 주주 9인의 상장 예정 주식 2,530,725주 중 1,747,735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 혹은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가 제3자 배정으로 발행한 주식 혹은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이와 더불어 782,990주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월, 3개월, 6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1% 미만 소액주주 주식 624,373주 중 183,203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되는 주식입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2인은 신청일 기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 104,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상장 주선인의 의무인수분 53,25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 직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탁되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의무보유 주식 및 자발적 의무보유 주식을 포함한 총 8,112,098주(79.3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불가능한 물량이며, 이를 제외한 2,112,137주(20.6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각 주주들의 의무보유 종료 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공모 후 의무보유 주식 및 유통가능주식 현황, 단위: 주]

구분	주주명	관계	공모 후		유통가능한 주식		매각제한주식		매각제한기간	매각제한사유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상장일 기준)	
최대주주등	윤준호	대표 이사	2,850,280	27.88%	-	0.00%	2,850,280	27.88%	30개월	주2)
	김일균	당사 임원	79,000	0.77%	-	0.00%	79,000	0.77%	12개월	
	정민희	당사 임원	52,000	0.51%	-	0.00%	52,000	0.51%	12개월	
	소계		2,981,280	29.16%	-	0.00%	2,981,280	29.16%	-	-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비에이피제2호 퍼스트펭귄투자조합	벤처 및 전문투자자	854,650	8.36%	-	0.00%	44,940	0.44%	1개월	주3)
							404,855	3.96%	1개월	주4)
							404,855	3.96%	3개월	
	UI벤처투자조합5호		449,430	4.40%	-	0.00%	449,430	4.40%	1개월	주3)
	비에이피제3호 플라잉펭귄투자조합		354,060	3.46%	-	0.00%	354,060	3.46%	1개월	
	롯데홈쇼핑이노베이션펀드1호		217,400	2.13%	-	0.00%	217,400	2.13%	1개월	
	비에이피제1호 청단기술투자조합		112,350	1.10%	-	0.00%	112,350	1.10%	1개월	
	키움증권 주식회사		108,700	1.06%	-	0.00%	108,700	1.06%	1개월	
	미래에셋증권(주)		108,700	1.06%	-	0.00%	108,700	1.06%	6개월	주5)
	주식회사 펄어비스캐피탈		54,350	0.53%	-	0.00%	54,350	0.53%	1개월	주3)
	소계		2,259,640	22.10%	-	0.00%	2,259,640	22.1%	-	-
1% 이상 주주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기타 기관투자자	543,480	5.32%	-	0.00%	543,480	5.32%	6개월	주6)
	주식회사 에코투자파트너스		380,435	3.72%	-	0.00%	380,435	3.72%	6개월	
	유경PSG범불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348,280	3.41%	-	0.00%	174,140	1.70%	1개월	주4)
							139,312	1.36%	3개월	

							34,828	0.34%	6개월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326,100	3.19%	-	0.00%	326,100	3.19%	6개월	주6)
	유경코스닥벤처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24,710	2.20%	-	0.00%	112,355	1.10%	1개월	주4)
							89,884	0.88%	3개월	
							22,471	0.22%	6개월	
	주식회사 에이온파트너스		210,000	2.05%	-	0.00%	105,000	1.03%	1개월	주4)
							84,000	0.82%	3개월	
							21,000	0.21%	6개월	
	티제이시너지 사모투자합자회사		168,770	1.65%	-	0.00%	168,770	1.65%	6개월	주6), 주7)
	유경PSG범블비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호		165,910	1.62%	-	0.00%	165,910	1.62%	6개월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디지털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163,040	1.59%	-	0.00%	163,040	1.59%	6개월	주7)
	소계		2,530,725	24.75%	-	0.00%	2,530,725	24.75%	-	-
1% 미만 소액주주	유경PSG벤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기관 및 타인	57,210	0.56%	-	0.00%	57,210	0.56%	6개월	주7)
	일반투자자(직원 등 개인)		567,163	5.55%	337,170	3.30%	229,993	2.25%	6개월	주8)
	소계		624,373	6.11%	337,170	3.30%	287,203	2.81%	-	-
공모주주	IPO공모주(일반공모)	공모주주	1,774,967	17.36%	1,774,967	17.36%	-	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미래에셋증권)	주관사 의무인수분	53,250	0.52%	-	0.00%	53,250	0.52%	3개월	주9)
	소계		1,828,217	17.88%	1,774,967	17.36%	53,250	0.52%	-	-
합계			10,224,235	100.00%	2,112,137	20.66%	8,112,098	79.34%	-	-

주1) 유통가능물량은 공모주식수 변동 및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청약 시 배정군별 배정주식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예탁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보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는 상장 후 의무보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상장 이후 주가 안정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보유주식에 대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합니다.

주6)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상장일 이후 6개월 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7)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상장일 이후 6개월 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8) 주7)의 사유로 의무보유 하는 주식 이외에, 직원 2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최대주주등(등기임원)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1호에 의거하여 의무인수분은 상장 후 3개월 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10) 상장 이후 기간별 유통 가능물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상장 직후	상장 후 1개월	상장 후 3개월	상장 후 6개월	상장 후 12개월	상장 후 30개월
매각제한주식수(주)	8,112,098	5,974,518	5,203,217	2,981,280	2,850,280	-
유통가능주식수(주)	2,112,137	4,249,717	5,021,018	7,242,955	7,373,955	10,224,235
유통가능주식 비율(%)	20.66%	41.57%	49.11%	70.84%	72.12%	1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 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규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합병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6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기준 퇴사로 인한 취소분을 반영한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 수량은 1,283,100주입니다. 이는 상장 당일 공모 후 상장보통주식수의 12.5%입니다. 상장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핵심인재 확보 및 유지,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6차례에 걸쳐 1,578,1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하였으며, 퇴사자에 대한 취소분을 반영 시 신고일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 수량은 1,283,100주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취소분이 반영된 미행사 수량은 상장 당일 공모 후 상장보통주식수 10,224,235주의 12.5% 수준입니다.

[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단위: 주, 원]

회차	부여일	부여대상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 가격	행사기간
				부여	행사	취소			
1	2019.04.16	임직원 9명	보통주	300,000	-	40,000	260,000	50원	코스닥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 그 후 2년간
2	2020.04.01	임직원 34명	보통주	403,000	-	182,000	221,000	2,470원	2022.04.01 ~ 2024.03.31
3	2021.04.01	임직원 46명	보통주	333,000	-	16,000	317,000	2,650원	2023.04.01 ~ 2025.03.31
4	2021.06.21	임직원 22명	보통주	142,000	-	47,000	95,000	2,650원	2023.06.21 ~ 2025.06.20
5	2021.10.01	임직원 38명	보통주	191,000	-	8,000	183,000	5,810원	2023.10.01 ~ 2025.09.30
6	2022.01.06	임직원 63명	보통주	209,100	-	2,000	207,100	5,810원	2024.01.06 ~ 2026.01.05
합 계				1,578,100	-	295,000	1,283,100	-	-

카. 환매청구권 미부여 위험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 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 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 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타.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 후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가는 최초 공모가액을 하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모가에 금번 공모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될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 투자설명서 교부관련 위험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124조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 공모 주식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모집(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2년 4월 14일 ~ 15일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2년 4월 19일 ~ 20일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청

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2년 4월 14일 ~ 4월 15일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2년 4월 19일 ~ 4월 20일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 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도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의 의미, 기재사항 및 발행 일정의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의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대하여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집단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합계 지분율이 총지분의 0.01% 이상이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관련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5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한 명 이상의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관련 조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혹은 투자설명서의 허위 기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혹은 시세 조종 행위에 따른 손해 그리고 회계감사인에게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단소송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어 패소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버.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 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 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 (청약)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 (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 (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 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 (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개정사항]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
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
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자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1,774,967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443,742주 ~ 532,490주(공모주식의 25.0% ~ 30.0%), 기관투자자 1,242,477주 ~ 1,331,225주(공모주식의 70.00% ~ 75.00%) 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1,242,477주 ~ 1,331,225주를 대상으로 2022년 4월 14일 ~ 15일 이틀간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한편, 2022년 4월 19일 ~ 20일에 실시되는 청약 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분으로 인수 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은 인수수수료 및 발행사의 재량으로 지급하

는 추가 성과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하고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당사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키컷스톡 오리지널 IP매입, 미국법인 설립 및 운영, 키컷비주얼 전문인력 충원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외 스톡 영상, VFX Asset, 음원, 이미지유통 플랫폼기업등에 대한 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투자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상장 이전에는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 주식의 공모 가격은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는 당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27%(공모 후 1.06%, 의무인수분 53,250주 0.52% 별도) 로 이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 및 상장 이후 미처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는 당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보통주식 108,7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 내역]

주주명	구 분	주식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지분율 (공모 전)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의무보유 기간
미래에셋증권(주)	상장주선인	기명식보통주	2021년 09월 10일	108,700주	1.27%	9,200원	1,000,040,000 원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1)

주1)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가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주식 108,7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5호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은 17,000원으로 괴리율이 84.78%인 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2)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공모 후 기준으로는 1.06%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9,2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과의 괴리율은 84.78%입니다.**

인수인	증권의 종류	**확정** 공모가액	취득가액	괴리율	비고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7,000원**	9,200원	**84.78%**	-

주1) **확정**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확정**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27%(공모 후 1.06%, 의무인수분 53,250주 0.52% 별도)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미래에셋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상장주선인의 내부통제 기준]

제52조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관리)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①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③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업실사 절차, 조사·검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업실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 시 회사와 주관회사 간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본건 공모주식 인수인이 당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발행회사인 ㈜포바이포가 아닌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또한 발행회사인㈜포바이포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 "㈜포바이포", "포바이포"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포바이포로부터 제공받은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충족여부 및 그 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 범위(공모가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포바이포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 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산업,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 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평가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 분	금융투자업자(분석기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00111722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기업실사(Due 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주)포바이포의 기명식 보통주식 1,774,967주(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제외)를 총액인수 및 모집·매출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가 속한 산업의 산업동향,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비교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분	일시
대표주관계약 체결	2021.06.16
기업실사	2021.07.01(1차) ~ 2022.03.21(13차)
상장예비심사 신청	2021.12.03
상장예비심사 승인	2022.03.17
증권신고서 제출	2022.03.22

다. 기업실사 참여자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부서	직책	성명	담당업무
미래에셋증권㈜	IPO본부	본부장	성주완	IPO 업무 총괄
	IPO3팀	상무(팀장)	조인직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
		부장	김태오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
		과장	허승록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과장	장재원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직위	성명	담당업무
대표이사	윤준호	경영 총괄, CEO
사내이사	김일균	전략/기획, CFO
사내이사	정민희	신사업 총괄
본부장	박경선	경영관리

팀장	김예솔	IR 담당
연구소장	이용길	개발 총괄
연구소장	김현철	화질 개선 연구 담당
팀장	오준명	영업 담당
팀장	용호연	회계 담당
매니저	유규상	IR 담당

라. 기업실사 항목

항목	세부 확인사항
1. 모집 또는 매출 증권에 관한 사항	1. 당해 증권발행 관련 법규 등의 준수 2. 당해 증권발행에 대한 정관상 근거 및 이사회 결의 내용 등 3. 당해 증권발행 가액(전환가액, 행사가액 등 포함)의 적정성 4.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5.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6.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2. 사업관련 위험에 관한 사항	- 산업의 현황 관련 사항 1.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에 비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이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3.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4. 발행회사가 업종의 특성상 평판리스크의 판단이 중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평판위험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사업의 수익성 관련 사항 1.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가능성 여부 4.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5.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 파생상품계약 관련 사항 1. 환위험 관리지침 존재 여부와 실제 이행실태 2. 파생상품 계약의 내용과 헷지대상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인지 여부 3. 과거 체결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손익 변동이 큰 경우 그에 대한 대응방안 여부

3. 회사관련 위험에 관한 사항	- 재무상태 관련 사항 1.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2.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3.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 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할 것)을 검토 4.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5.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6. 자본잠식 해소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7.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8. 신용등급이 최근 3년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9.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 자금 거래 관련 사항 1.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 재고자산 관련 사항 1.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보유가 과대한지 여부 2. 재고자산 관리 프로세스 및 연령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3. 재고자산 수불부 주기별 관리 가능한지 여부 - 지배구조 관련 사항 1.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형태(담보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관련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최대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4.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5.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6.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8. 공시된 임원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있을 경우 구체적인 역할과 보수의 적정성 등 확인) 9.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10.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 내부통제 관련 사항 1. 사내규정(전결규정, 인사 관련규정 등) 등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2.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3.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4.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5. 이사회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6.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이해관계자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감사보고서상 관련거래 내역 기재 내용 2.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3.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4.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 K-IFRS 적용 관련 사항 1.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충당부채 측정, 영업권 등 개별자산 손상검토,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발행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 관련된 사항 - 회계 기준 관련 사항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유사업계 회계처리방식과 비춰볼 때 적절한지 여부
4. 기타 위험에 관한 사항	- 주가 희석 관련 사항 1.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2.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3.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 및 증빙자료를 확인 -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5.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소송 및 분쟁 관련 사항 1. 법률대리인, 법규담당을 통해 소송 등 내역 확인 2. 재무담당 부서 등을 통해 법률비용 지출내역 확인 3. 소송 등 관련 통지를 받았거나 합의가 진행중인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회사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미납세금 및 세무조사 진행여부 5.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자료제출요구, 소명요구 등을 받고 있는지 여부 6. 중요자산의 경매 진행여부 및 경매가 예정된 경우 세부내용 확인 - 횡령 및 배임 관련 사항 1. 관련 재판 진행상황 및 결과 2. 횡령자금의 환수여부,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 구상권 행사 내역 -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경영진 면담,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절하게 확인
6. 자금의 사용목적	1.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2.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필요시 법인통장 확인) 3. 조달자금의 소진 시까지 신뢰할만한 자금 보관 및 운영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4. 조달자금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예치하는 방안의 필요성 여부

마. 기업실사 이행 내역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포바이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포바이포에 방문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 등을 위한 기업실사를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 작성 및 마케팅을 위한 실사를 진행(세부일자는 아래 기업실사 절차 참조)하였습니다.

구분	일자	실사내용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2021.06.16.	대표주관계약
Kick off 미팅	2021.06.23.	1) 상장일정 및 기업실사 일정 협의 2) 기업실사 참여자 구성 3)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 - 사업계획 및 영업현황 등에 관한 설명 청취 및 인터뷰 - 주요 사업별 담당자 설명 청취 및 인터뷰 - 비즈니스모델 및 수익 구조 파악
기업실사 1차	2021.07.01.	1) 자본구조 실사 - 주주현황 및 자본금 변동사항 검토 2) 주주명부 관련 실사 - 주식이동명세서 검토 - 주주간 계약사항 검토 - 주식 매매 계약서 검토
기업실사 2차	2021.07.20.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검토 - 설립연도부터 실사일 까지의 주총/이사회 의사록 검토 - 향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필요사항 검토 2) 이사 및 이사회 - 이사회 구성 검토 - 사외이사 및 감사 자격요건 검토 - 경영권 분쟁사항 검토
기업실사 3차	2021.08.11.	1) 재무자료 검토 - 최근 3개년 감사(검토)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 검토 2) 이해관계자 거래 검토 - 회계 원장 및 계정별 명세서 검토 3) 주식매수선택권 검토 - 절차상 적법성 검토 - 부여 대상자의 적법성 검토 - 무상증자로 인한 행사 수량 및 행사 가격 변동 검토

기업실사 4차	2021.09.10.	1) 지적재산권 현황 및 관리 - 지적재산권 현황 검토 - 회사 주요 기술의 특허 보호여부 검토 2) 기타 내부통제사항 검토 - 담보권 여부 검토 - 세무조사 여부 확인 - 소송 및 분쟁 여부 확인 - 대여금,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자금거래 검토
기업실사 5차	2021.09.27.~ 2021.09.28.	1) 실사 이후 이슈사항 F/U - 재무, 회계 관련 인터뷰 - 상장 적합성(외형요건 및 질적요건) 검토 - 각 사업부문별 성장성 및 사업성, 경쟁우위 및 경쟁열위 등 - 회사의 영업위험 평가
기업실사 6차	2021.10.11.~ 2021.10.22.	1) 회사의 사업전략 검토 - 사업계획 및 영업현황 등에 관한 설명 청취 및 인터뷰 - 주요 Cycle별 담당자 설명 청취 및 인터뷰 - 비즈니스모델 및 수익구조 파악 - 장단기 영업 및 구매 관련 Process 검토 2) 상장예비심사 신청 일정 검토 3)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관련 검토 4) 보호예수관련 절차 설명 5) 첨부서류 안내 및 준비
기업실사 7차	2021.11.05.	1) Due Diligence 작성을 위한 지정감사인 면담 2) 지정감사 보고서 발행 관련 이슈 및 일정 검토
기업실사 8차	2021.11.19.	1) 자본금 변동현황 및 의무보유 대상 주식 업데이트
기업실사 9차	2021.11.29.	1) Valuation 논의 - 유사기업 선정 등에 대한 최종 논의 - 3분기 실적 및 2021년 온기 실적에 대한 논의
기업실사 10차	2021.11.30.	1) 대표주관회사 종합의견 작성 및 검토 2) 기타 상장요건 검토 및 일정 협의 3)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완료
기업실사 11차	2021.12.01.	2021년 3분기 지정감사보고서 검토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2021.12.03.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기업실사 12차	2021.12.21.	1) 증권신고서 제출 일정 조율 2) 향후 추정실적 및 3분기 실적 확정 및 논의 3) 희망공모가액 논의 4) 증권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검토
상장예비심사 승인	2022.03.17.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
기업실사 13차	2022.03.17~21.	증권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제출	2022.03.22.	증권신고서 제출

3.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 내용

아래 내용 중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 중 용어 해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의 수익성

동사는 현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주요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주요 수익성 지표, 단위: 백만원]

과목	2021년 (제5기)	2020년 (제4기)	2019년 (제3기)
영업수익	22,276	13,993	10,645
영업이익	4,014	1,813	814
영업이익률 (%)	18.0%	13.0%	7.6%
법인세전사업이익	3,980	1,329	770
법인세전사업이익률 (%)	17.9%	9.5%	7.2%
당기순이익	3,763	1,354	688
당기순이익률 (%)	16.9%	9.7%	6.5%

동사가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업은 대부분의 제작과정이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대규모의 인력과 관련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력과 관련한 해당 비용은 대부분 급여, 상여, 퇴직급여 및 주식보상비용 등으로, 매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 난이도가 낮고 핵심 역량과 관련도가 낮은 작업에 대해서는 내부 인력을 이용할 경우 비효율적일 수 있어 외주처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외주용역비 비용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동사는 콘텐츠 제작역량을 통해 축적한 자체 실감화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화질개선솔루션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해당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콘텐츠 후반작업 중에서도 노동집약적, 비효율적 과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동화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자체 스톡 영상을 촬영 용역 대신 활용하는 등의 효율적 비용 관리를 통해 외주용역비의 규모 또한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상기 표 내 수익성 지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개선시켜 왔으며, 향후 다양한 콘텐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이러한 자동화된 화질개선 솔루션 보유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사업의 성장성

(1) 시장의 성장성

동사의 주요 목표 시장은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에 따라 초고화질 콘텐츠(고화질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글로벌 VFX 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그리고 스톡 영상 시장으로 분화됩니다.

[표: ㈜포바이포 서비스 품목별 추이 및 목표시장]

구 분		목표시장
콘텐츠 제작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고화질 콘텐츠 시장 (고화질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화/드라마 후반 제작	글로벌 VFX 시장
콘텐츠 유통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스톡 영상 시장

(가) 고화질 콘텐츠 시장

동사의 주 매출원인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서비스는 고화질 콘텐츠 시장에 속합니다. 고화질 콘텐츠만의 시장 규모는 추산이 불가능하나, 고화질/고실감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이나,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1)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은 가정 내 대형 디스플레이 TV가 상용화되고 기존 고화질로 분류되던 4K 해상도 이상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확산됨에 따라 점차 시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홈엔터테인먼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OTT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대형 디스플레이 TV 출하량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글로벌 TV 시장에서 70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의 비중은 아래와 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글로벌 TV 시장 내 70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 비중, 금액 기준, 출처: Omdia]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
비중 (%)	10.2%	14.4%	18.2%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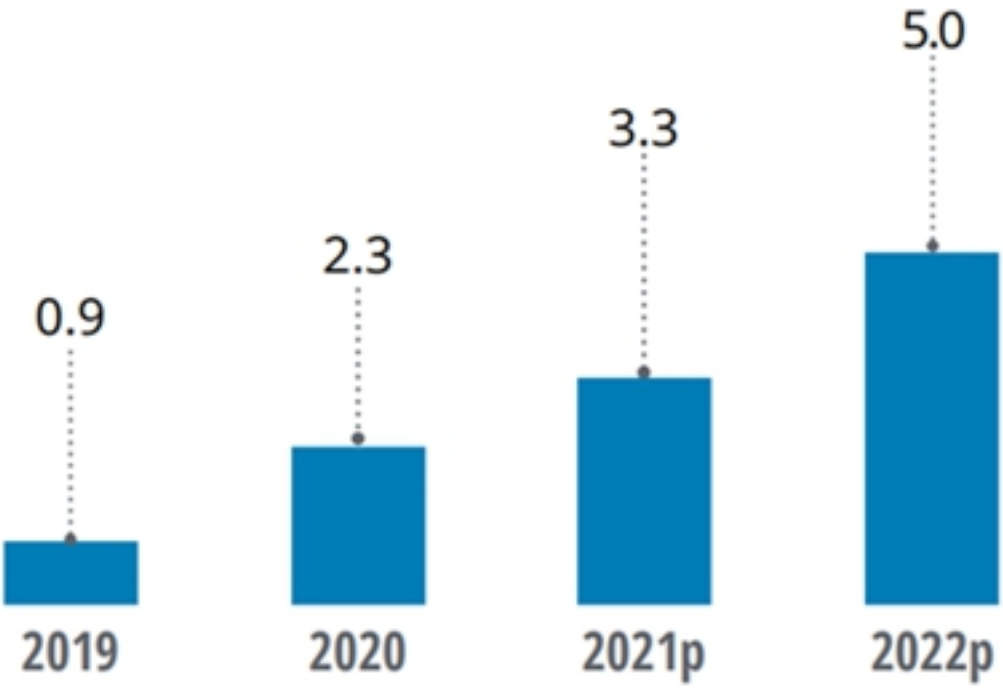
4K/8K급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8K란 고화질 디지털 비디오 포맷의 한 종류로, 화면 비율 16:9, 해상도 가로 7,680×세로 4,320, 화소 수 3317만 7,600개에 해당하는 영상 품질 규격을 뜻합니다. 표준 수평 시야각은 100도이며 표준 시청 거리는 0.75H이고 화소당 비트 수는 24~36비트를 사용합니다. 현재까지는 4K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으나 실체감, 무게감 등을 화면을 통해 체감할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선명한 색을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TV 제조사들이 8K TV를 출시하면서 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삼성전자, 파나소닉(일본), 하이센스·TCL(중국), AUO(대만) 등이 8K 화질 콘텐츠 확보와 산업 표준 제정을 위해 2019년 1월 열린 'CES 2019'에서 8K 협회를 출범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8K TV 인증 마케팅을 시작하여 글로벌 제조사가 생산한 총 71종 TV가 8K 협회 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협회는 8K 제품이 갖춰야 할 규격과 성능을 정의하고 이를 충족하는 제품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며, 협회가 정한 기준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사양, 8K 영상 신호, 입력단자 규격, 미디어 포맷 등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8K 기준 디스플레이 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더 발전할 전망입니다.

Deloitte의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2021'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8K 디스플레이 패널 매출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며 2021년 기준 약 33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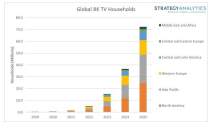
[그림: Global Revenues from 8K Panels , 단위: 십억달러, 출처: Deloitte TMT Predictions]



8K 디스플레이 패널 전체 수익 전망

Strategyanalytics 의 'UHD 해상도 TV 디스플레이 시장 보고서' 에 의하면, 2025년 글로벌 8K TV 보급량 또한 7,2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림: Global 8K TV Households, 단위: 백만 가구, 출처: Strategyanalytics]



이처럼 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은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초고화질, 나아가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2)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란 신호를 의미하는 사이니지 (Signage) 와 디지털 (Digital) 의 합성어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스플레이 매체를 통해 정보 및 광고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소자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해상도 콘텐츠 표현능력의 증가, 옥외광고 규제 완화, 네트워크 기술 발달 등의 흐름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MarketsandMarkets의 2019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2018년 2024년에는기준으로 296.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유형에 따른 분류 중, 하드웨어 시장은 2024년 기준 18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공급유형별 Digital Signage Market , 단위: 십억달러, 출처: MarketsandMarkets, 2019]

공급유형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4	CAGR
하드웨어	9.84	11.51	12.81	13.99	15.19	17.34	18.83	6.1%
소프트웨어	3.43	3.60	3.80	4.12	4.54	5.72	6.79	10.5%
서비스	1.84	2.06	2.40	2.71	3.01	3.54	4.01	8.2%
합 계	15.11	17.18	19.01	20.82	22.73	26.60	29.63	7.3%

하드웨어 시장의 경우, 다시 하드웨어 유형으로 시장을 분류할 수 있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표: Hardware Type Digital Signage Market , 단위: 백만달러, 출처: MarketsandMarkets, 2019]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4	CAGR
디스플레이	8,220.7	9,647.3	10,749.2	11,770.3	12,829.7	14,826.0	16,190.0	6.6%
프로젝터	646.5	767.9	873.4	964.9	1,036.6	1,083.3	1,119.7	3.0%
미디어 플레이어	533.3	592.0	642.5	674.6	701.6	740.7	759.3	2.4%
기타	441.4	504.3	543.6	581.7	619.5	692.8	756.5	5.4%
합 계	9,841.9	11,511.6	12,808.7	13,991.6	15,187.4	17,342.7	18,825.5	6.1%

이 중 동사가 영위 중인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과 상관관계가 높은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2019~2024 년 동안 연평균성장률 6.6%로 성장하여 2024년 기준 16,190 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시장은 UHD, 4K, 8K 와 같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등장 및 발전으로 인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8K 와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성장과 함께, 뉴미디어 콘텐츠로 대표되는 초고화질 콘텐츠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에 필요한 초고화질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글로벌 가전사들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새 홈구장 등에 초대형 사이니지를 설치한 바가 있고, LG전자도 매년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 5인치 올레드 사이니지 200장 이상을 이어 붙여서 만든 초대형 조형물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내 고층 빌딩에 대형 사이니지가 상용화되고 있는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정부도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2018년 코엑스 일대를 첫 옥외광고 자유표시지역으로 지정,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으며 이에 초대형/곡면 초대형 사이니지 등의 공급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 옥외 광고 규제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성장 과정에 있어 초대형, 대형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초고화질 콘텐츠 수요 증가 기조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 화질 개선 솔루션 등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시장 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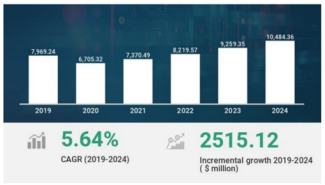
(나) VFX 시장

동사의 주 매출원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서비스는 글로벌 VFX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Technavio 보고서 'Visual Effects (VFX) Market by Application and Geography Forecast and Analysis 2020-2024'에 의하면, 글로벌 VFX 시장은 2019년 7,969.24 백만달러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까지 CAGR 5.64% 로 성장하며 2024년 10,484.36 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 지능 기술과 증강 현실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VFX 렌더링 기술은 글로벌 VFX 시장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4K/8K 스마트 TV,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통한 고화질 영상 시청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Technavio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VFX 시장은 ① 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② VFX 프로덕션에서의 실시간 렌더링 기술 발전 ③ 업체 간 인수 및 파트너십 체결 기조가 강화되며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림: Global VFX Market Size and Forecast 2019-2024, 단위: 백만달러, 출처: Technavio]



글로벌 VFX 시장은 적용 분야에 따라 영화, TV, 게임, 광고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영화 관련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2.21%로 가장 높고, 광고 관련 시장 규모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글로벌 VFX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화 VFX 시장은 전체 VFX 시장의 성장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영화 VFX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G/XR 등 게임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현실에서 보다 생존감 있는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 게임 관련 VFX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4년에는 전체 VFX 시장 중 약 21%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기준 2위 규모를 차지했던 TV VFX 시장 규모는 점진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고 VFX 시장은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옥외 초대형 스크린 광고, 버추얼휴먼 AI 등 광고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콘텐츠의 발전으로 인해 전체 시장의 성장률을 추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 분야별 세부 VFX 시장의 규모 및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Global Market size by application 2019-2024, 단위: 백만달러, 출처: Technavio]

유형	2019A	2020E	2021E	2022E	2023E	2024E
영화	4,160.7	4,529.4	4,944.3	5,412.0	5,940.8	6,537.8
게임	1,266.3	1,362.2	1,468.0	1,585.0	1,714.3	1,858.0
TV	2,067.2	2,235.9	2,425.0	2,637.5	2,876.2	3,145.7
광고	475.0	412.5	467.4	536.3	620.7	720.9

동사는 위의 세부 시장 중 영화, TV, 광고 시장과 관련한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당 세부시장이 성장할수록 관련한 사업 기회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VFX 시장은 다양한 유관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실감형 콘텐츠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시장 내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기에 국내외 실감형 콘텐츠 시장 성장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나-1) 국내 실감형 콘텐츠 시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5G시대, 실감산업 육성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실감콘텐츠 시장은 5G 성능 향상과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2023년 기준 5조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실감콘텐츠 시장 규모, 단위: 억원,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구분	2021(E)	2022(E)	2023(E)	연평균 성장률 ('21-'23)
실감콘텐츠 시장	32,400	46,800	57,600	33.3%

실감형 콘텐츠의 근간을 이루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상 국가 간 경계 등이 존재하지 않고, 소비 및 생산 확대가 빠르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 나아가 실감형 콘텐츠 시장 역시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빠른 확장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실감형콘텐츠 시장의 경우, 상기에 서술하였듯이 정부 차원에서의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나-2) 세계 실감형 콘텐츠 시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019)의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자료" 중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에 따르면, 실감 콘텐츠 시장은 2018년부터 2023년 까지 연평균 56.1%의 높은성장률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2023년 910억 2,40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림: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의 경우, 국내 실감 콘텐츠 시장 전망과 마찬가지로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따른 실감콘텐츠 중심의 산업변화, 기업/공공기관 내 XR 기술 적용 증가, 고품질 실감콘텐츠 제작 확산에 따라 급속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다) 스톡 영상 시장

동사는 다양한 고화질 콘텐츠 및 VFX 기반 콘텐츠를 제작함과 동시에, 글로벌 최대 고화질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KEYCUT STOCK'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KEYCUT STOCK은 단순히 영상 작가가 업로드한 영상을 유통하는 것만이 아닌, 동사만의 영상 고화질 작업 과정을 거쳐 고화질 콘텐츠로 변환시킨 뒤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며, 업로드된 영상 콘텐츠를 바탕으로 영상 작가들의 고화질 콘텐츠 2차 창작을 용이하게 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KEYCUT STOCK과 같은 콘텐츠 유통 플랫폼과 연관된 시장으로는 스톡 영상 시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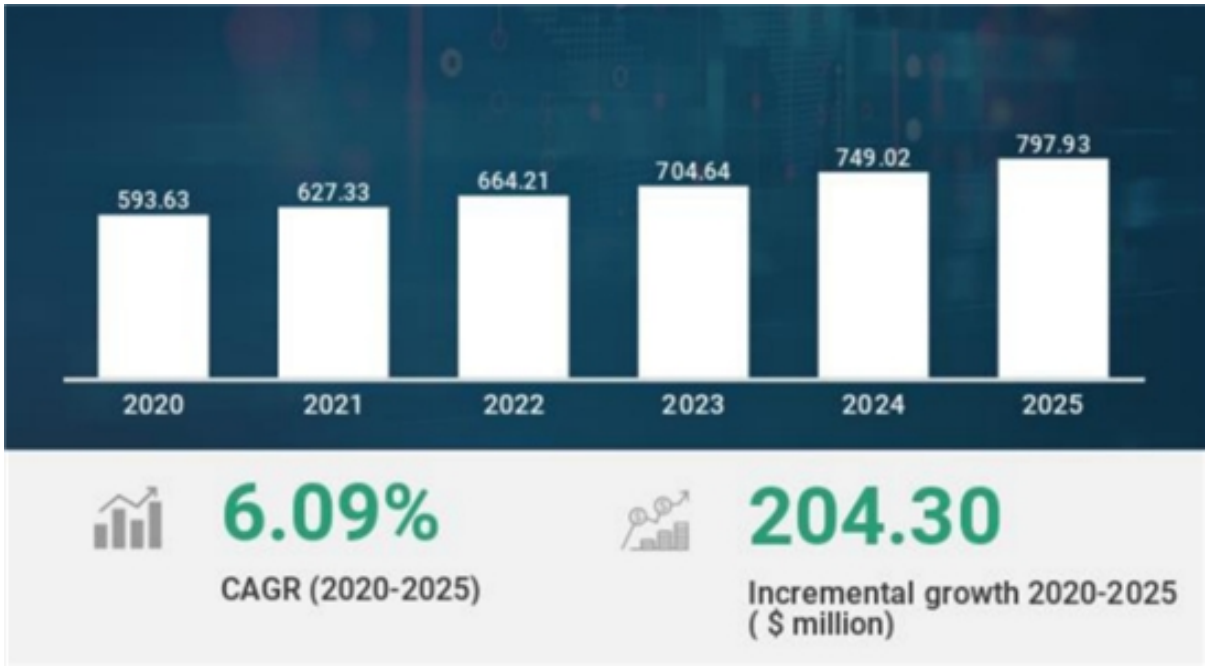
스톡 영상 플랫폼은 전문 이미지/영상 작가들의 상업적 콘텐츠/영상을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수요자는 비용을 지급하여 촬영 영상의 라이선스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톡 영상 플랫폼 회사는 1980년대 중반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기존에 확립된 스톡 이미지 산업을 기반으로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스톡 영상은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 제작자들의 영상 제작 및 편집과 광고, 마케팅 캠페인 등에 주로 사용되는 영상 촬영소스를 의미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대부분의 스톡 영상들은 주로 도시와 랜드마크, 야생과 자연환경, 역사 관련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스톡 영상은 다큐멘터리, 뉴스, 영화 등 모든 영상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 등 미디어 업계에서는 영상물의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스톡 영상을 이용합니다.

Technavio 에 의하면 스톡 영상 시장은 2020년 593백만 달러 수준으로, 2021 년부터 2025년까지 CAGR 6.09% 로 성장해, 2025년 798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 프로모션과 마케팅 콘텐츠의 증가, 인터넷 연결성의 증대, 스마트폰 사용량의 증가, OTT 플랫폼을 통한 영상 콘텐츠 시청 수요의 증가 등의 요소가 글로벌 스톡 영상 시장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림: Global Stock Footage Market Size and Forecast 2020-2025, 단위: 백만달러, 출처: Technavio]



Global Stock Footage Market Size and Forecast 2020-2025

또한, 스톡 영상 시장은 다음과 같이 향후 꾸준한 시장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동인이

존재합니다.
① 시각 콘텐츠 창작에 있어서 스톡 영상이 가지는 이점
② 웹 시리즈/단편 영화 등에서 증가하는 스톡 영상 수요
③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의 증대

(2) 회사의 성장성

[표: 주요 성장성 지표, 단위: %]

과목	2021년 (제5기)	2020년 (제4기)	2019년 (제3기)
영업수익 성장률 (%)	59.19%	31.45%	71.14%
영업이익 성장률 (%)	121.41%	122.75%	26.01%
법인세전사업이익 성장률 (%)	199.40%	72.45%	17.47%
당기순이익 성장률 (%)	177.93%	96.78%	12.19%
총자산 성장률 (%)	198.77%	136.86%	155.93%

동사는 2017년 설립 이후 다양한 고화질 콘텐츠 제작을 시작으로 콘텐츠 고화질화 역량을 구축해 나갔으며, 이후 글로벌 가전사/디스플레이사와 국내 유수 광고 대행사의 공식협력사로 등록되어 관련 매출의 규모를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동사는 대형 디스플레이나 곡형 디스플레이 콘텐츠 내에서도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통합 실감화 역량을 고도화해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수주해왔습니다. 이에 동사는 콘텐츠 제작 시장 내 입지를 확장시키며 외형을 성장시켜 왔고, 설립 이후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높은 수준의 영업수익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동사의 AI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 및 인력 효율화로 높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또한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현금성 자산의 증가, 사업 확대 및 회사 외형 성장에 따른 유무형자산의 증가로 자산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속적인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를 통해 현금성자산을 2020년 기준 45.4억원에서 2021년 244.4억원까지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실감화 산업의 경우 오랜 업력의 인력 및 이를 내재화할 수 있는 회사 자체의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동사는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더해 제작 과정을 공정화하여 표준을 정립하며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사 보유 화질개선 솔루션의 경우 동사가 제작해온 콘텐츠 및 자체 무형자산의 고화질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실감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동사는 안정적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존 사업 외에도 1)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 가상인간)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 구작 드라마 등 콘텐츠 리마스터링, 3) 영상 유통 플랫폼 KEYCUT STOCK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신규사업 개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선점하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쟁력을 토대로 동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회사의 경쟁력

(1) 경쟁 현황

동사는 콘텐츠의 고화질화 및 VFX 등 시각효과 기술을 기반으로 실감형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① 초고화질 콘텐츠, ② 뉴미디어 콘텐츠, ③ 영화,드라마 콘텐츠의 제작 전 프로세스에 있어 기획/제작/후반작업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와중 독보적인 고화질구현 솔루션을 지닌 비주얼테크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동사 주 매출의 근원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세스 내에 VFX/CG 기술 및 고화질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아우르는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장에는 동사와 유사한 기술을 바탕으로 뉴미디어 콘텐츠나 광고, 영화, 드라마의 VFX기반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는 다수의 대규모/중소업체가 존재하기에 경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우나, 동사와 Major 8~9개사가 광고, 뉴미디어, 영화, 드라마 콘텐츠 VFX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기타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나머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사가 2020년 'KEYCUT STOCK'런칭 후 플랫폼 사업으로 영위 중인 스톡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우, 동사처럼 고화질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는 세계적으로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스톡 영상 및 이미지 온라인 거래 플랫폼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셔터스톡(Shutter Stock), 픽셀(Pexels), 픽사베이(Pixabay), Videvo, 어도비스톡 (Adobe Stock), 게티이미지 (Getty Image), Artgrid 등 다양한 경쟁 플랫폼이 존재하기에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비교우위 사항

(가) 우수한 Picture Quality 구현 역량

동사는 VFX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 기술력 및 동사만의 Picture Quality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운용을 바탕으로 산업 내 다양한 reference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삼성전자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 콘텐츠 화질 협의체인 '8K협회'에 국내 콘텐츠 업체 최초로 가입하였고,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자이언트 스크린 시네마 협회 및 글로벌 테마파크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테마파크협회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화질 관련 다양한 글로벌 협회 가입 이력은 고화질/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있어 동사의 글로벌 수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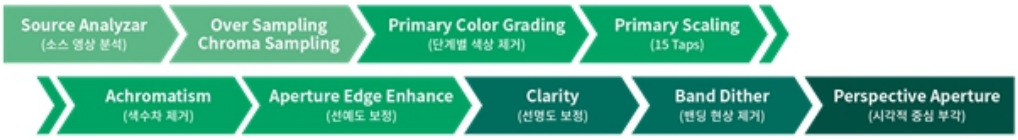
또한 동사는 8K 이상 콘텐츠 화질을 실감 있게 구현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Dolby, Ateme, Spin Digital 등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동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퀄리티 및 제작력과 관련된 다양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향후 콘텐츠 실감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입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구현 역량이라 판단됩니다.

(나) 자체 VFX 및 화질 개선 공정 구축

동사는 전문 인력의 제작 역량에만 의존하기보다 화질 개선 및 VFX에 대한 경험적 결과를 자동화/내재화 하기 위해 화질 개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동사만의 화

질개선 및 VFX 공정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림: 포바이포 9단계 화질 보정 공정 System]



동사는 자체 구축한 화질 보정 공정을 통해 동사의 업무 시스템을 기반으로 업무 수행시, 누구나 일정 퀄리티 이상의 작업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부 작업 공정에 대한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이익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 내 경쟁사 대비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 큰 경쟁우위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 판단됩니다.

(다) PIXELL의 데이터 우수성 기반 기술 경쟁력

동사는 전문 연구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동사 자체의 AI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을 고도화해 왔으며 관련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표: 포바이포 보유 특허권 내역]

구분	내용	등록번호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출원국
특허권	정지장면의 연속프레임 영상에 기반한 영상분할장치 및 방법	10-1223046	(주) 포바이포	11.02.08	13.01.10	대한민국
	개선된 영상 생성 모델과 적응적 필터를 이용한 컬러 영상 보정 방법	10-1242069		11.07.04	13.03.05	
	변형된 영상 생성 모델을 이용한 컬러 영상 보정방법	10-1242070		11.07.04	13.03.05	
	시연 및 홍보용 텔레비전과 영상 제공용 유에스비 메모리 간의 잠금 장치	10-1981033		18.08.22	19.05.16	
	화질 개선된 인공지능 기반 영상 출력 방법	10-2054453		19.04.03	19.12.04	
	초고해상도 영상 콘텐츠의 화질 개선 방법	10-2058355		19.04.19	19.12.17	
	유심 탑재 저장매체	10-2123312		19.04.03	20.06.10	
	디지털 영상 선예도 강화 방법	10-2164998		19.04.25	20.10.06	
	디지털 영상 노이즈 제거 방법	10-2194447		19.04.25	20.12.17	
	입력영상 전처리를 이용한 화질보정방법	10-2245835		20.07.31	21.04.22	
	화질개선 초해상도 심층신경망 처리 방법	-		21.02.05	-	
	선예도 개선을 위한 심층 기울기 사전정보기반 L0 스무딩 방법	10-2342940		21.06.23	21.12.21	

해당 딥러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것은 알고리즘 자체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training data set를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동사의 AI기반 딥러닝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은 딥러닝 알고리즘 모델로, 인지적 화질 개

선 부분에 대한 딥러닝 강화를 위해 동사 전문 인력 주도의 화질 개선 작업을 거친 양질의 콘텐츠를 training data set으로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알고리즘 학습에 있어 경쟁업체 대비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파악되며, 경쟁업체가 확보하기 어려운 초고화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해자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PIXELL 솔루션 및 인력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동사 자체 개발 PIXELL 솔루션은 인지적 화질을 포함한 대부분의 화질개선 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동사의 9단계 화질 보정 공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극적으로 절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PIXELL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감소하여 동사 영업이익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IXELL 솔루션은 다량의 저화질 영상 콘텐츠가 투입되는 KEYCUT STOCK의 고화질화 과정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PIXELL 솔루션을 사용했을 시 KEYCUT STOCK의 고화질 영상 생산량이 이전 대비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타 영상 콘텐츠 실감화 작업 시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생산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사는 이 외에도 VFX사업부문을 전문 인력 위주로 고용하여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작업 가능량이 인력 규모와 비례하는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인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휴인력을 최소화 하는 등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어 향후 수익성 추가 개선 지속이 예상됩니다.

(마) 플랫폼 구축을 통한 확장성 확보

동사는 콘텐츠 제작 업계 최초로 자체 구축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 KEYCUT STOCK을 통해 초고화질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B2C 소비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영상 제작 친화 플랫폼으로의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초고화질 스톡 영상 외에도 향후 KEYCUT STOCK 플랫폼 내 VFX Asset, 이미지, 음원 등 유통되는 콘텐츠의 카테고리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타 콘텐츠 제작 경쟁업체들과 달리 콘텐츠 제작을 넘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사업구조 기반 사업 확장 기회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한 통한 새로운 수익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를 보유했다 판단됩니다.

라. 재무상태

(1) 재무성장성

[표: 최근 3개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과목	2021년 (제5기)	2020년 (제4기)	2019년 (제3기)
매출	22,276	13,993	10,645
(증감률)	59.2%	31.5%	-

영업이익	4,013	1,813	814
(증감률)	121.3%	123.0%	-
영업이익률	18.0%	13.0%	7.6%

동사의 매출액은 2019년 106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22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글로벌 경제를 위협한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영화 VFX 관련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화질 콘텐츠 제작의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 역시 2019년 8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4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기간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7.6%, 2020년 13.0%, 2021년 18.0%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주된 사유로는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동사의 KEYCUT STOCK 내 고화질 오리지널 스톡 DB를 자체활용하고, 촬영 및 CG 관련 외주 비용을 낮추고, PIXELL 솔루션의 적용 범위를 넓혀 고화질 콘텐츠뿐 아니라 일반 VFX 후반 작업에서도 작업 효율화를 이뤄냄으로서 수익성이 높아져 왔기 때문입니다.

향후 다양한 콘텐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이러한 자동화된 화질개선 솔루션 보유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재무안정성

동사의 최근 3사업연도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21연도	2020연도	2019연도	업종평균(*)
부채비율(%)	21.79%	316.64%	199.27%	79.44%
자본의 잠식률(%)	-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	-	42.00x
매출채권 회전율(회)	6.35x	4.12x	5.81x	6.64x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44	2,996	(1,772)	-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대여	-	-	-	-

주1) 2020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발간 '2020년 연간 기업경영분석(중견기업)' 중 J58-63 정보통신업 기준. 동사 업종: (J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동사의 부채비율은 설립 이후 업종평균 대비 다소 높게 유지되며 영업활동을 유지해 왔으나, 2021년 온기 기준 부채비율은 21.79%로 업종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 등 외부투자자의 지분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영업활동에 따른 보유 현금을 활용하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년 온기 기준 동사의 현금성 자산은 약 244.4억원에 달하며, 금번 공모를 통해 추가자금을 확보한다면 상장 이후에도 높은 재무적 안정성을 향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설립 이후 및 최근 3년간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9년 (-)17.7억원, 2020년 29.9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에는 18.4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감소는 동사의 매출채권이 2020년 3.8억원에서 2021년 41.4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 기인합니다. 다만, 동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수주한 프로젝트의 납품 완료에 따라 발생하며, 연령은 대부분 3~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동사는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및 자금 대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금번 IPO를 통한 공모자금 유입은 동사의 유동성 증가 및 재무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 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근거하여 동사는 계속기업 및 코스닥상장 예정기업으로서의 적정한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경영능력 및 경영투명성

(1) CEO의 자질

윤준호 대표이사는 2017년 동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실질적인 경영주입니다. 동사의 대표이사는 미디어아트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CJ파워캐스트(주),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주) 등을 거쳐 현재 동사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약 12년의 동 업종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주의 취득학위, 동종업계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동사의 경영주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동사 CEO의 기술경영 경험수준이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윤준호 대표이사는 동사 설립 이후 기존 수작업 중심이었던 화질개선 작업을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화 솔루션으로 고도화시키는 한편, 고화질 영상거래 플랫폼 KEYCUT STOCK을 런칭시키는 등, 콘텐츠 제작산업 내 인지적 화질 분야에서 기술적/사업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영주의 회사경영 지식수준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분업화된 조직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주요 경영진을 포진시켜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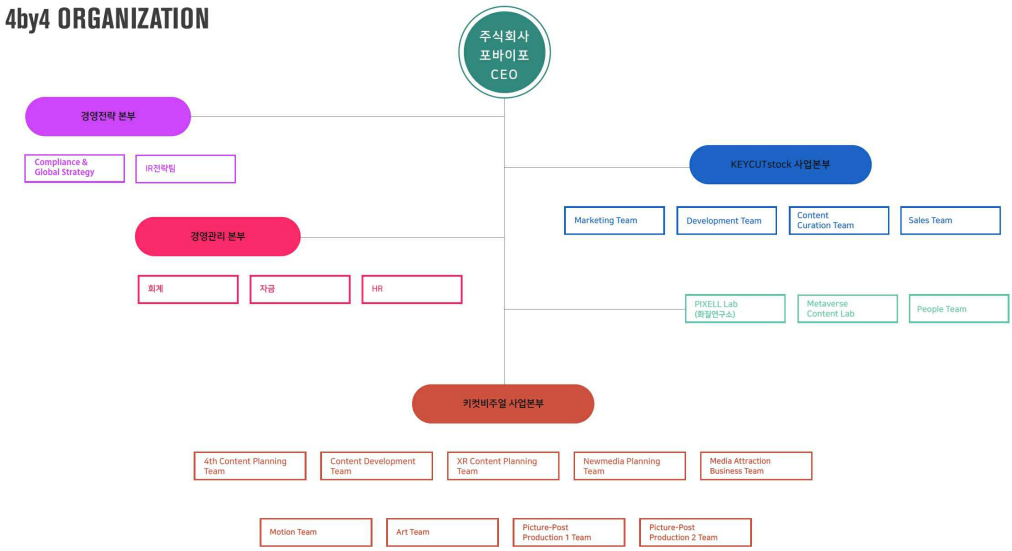
한편, 동사를 운영해오면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회사 자금을 이용하거나 대여금을 사용하는 등의 자금 거래가 없으며 투명하게 회사 경영을 운영해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경영자로서의 도덕성 측면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력 및 조직의 경쟁력

동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86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며, 총 4개의 본부 및 2개의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사업본부, 경영관리/전략본부, R&D 부서 등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는 콘텐츠 제작 사업구조에 적합한 인력 및 조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외부 산업환경 변화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림: 동사 조직도 출처: 포바이포]



(3) 기업의 지배구조

(가)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의 등기임원은 윤준호 대표이사 외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임원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발생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습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개최를 통해, 2020년 7월 30일 임직원 대여금 관리지침을, 2020년 11월 19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장사에 준하는 거래조건, 내부통제절차를 구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이사회 전원 참석 및 전원 동의를 요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정 정비 이후에는 가급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 경영의 독립성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은 동사 이사회 및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 및 사외이사 등의 장치도 갖추고 있으므로, 동사의 경영 독립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준호 대표이사는 콘텐츠 산업 내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창립 이후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술력을 가지고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대주주인 윤준호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 지분(자사주 제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에도 약 29.2%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내부통제제도

동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 의한 신주의 발행, 주주총회의 운영, 주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이사회의 운영과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통제규칙 등 여러 규정을 만들어 준수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윤준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은 동사와 가지급금, 대여금, 채무보증 등의 거래관계 없이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의 검토 및 감사의 확인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인 바, 경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의 이사 및 감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 1명의 감사가 선임되어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공시체계

(가) 회계처리 투명성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법인이면서 2021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 상장 전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동사는 회사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2021년 7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내부회계관리담당 업무 조직과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내부회계 담당 업무 및 관리조직]

담당업무	직책	성명	근무년수	업무내용	현재 겸임 업무
내부회계 책임자	대표이사	윤준호	4년 3개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책임	경영 총괄
감사	감사	이정인	11개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및 감사	-
내부회계 관리자	경영관리 본부장	박경선	1년 4개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시스템 유지/개선, 내부회계 전반 관리	경영관리 총괄
내부회계 실무담당자	매니저	강해나	2년	회계정보의 기록 및 결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
	매니저	강인자	1년 3개월		-
	매니저	양운식	8개월	회계정보의 기록 및 결산, 자금 집행, 운용	-
	매니저	강은정	10개월		-

(나) 적정 공시능력

동사는 상장 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내부정보 이용방지를 위해서 공시사항 발생 시 즉시 공시할 것이며, 상장 전 내부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IR을 통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동사의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것이며, 상장 이후 경영관련 자료는 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표: 공시업무 담당자 현황]

구분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공시책임자	사내 이사	김일균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CFO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2) -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11~'14) - IBK투자증권㈜ IPO팀('15~'17) - 삼성증권㈜ IPO2팀('17~'21) - ㈜포바이포 경영전략본부장, CFO('21~현재)	-
공시담당자	팀장	김예솔	IR Strategy 팀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8) - 삼성증권㈜ 리서치센터('18~'20) - 삼성증권㈜ IPO2팀('20~'21) - ㈜포바이포 IR Strategy 팀장('21~현재)	-

이와 같이 동사는 상장 후 발생할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시담당조직 구성 및 회계시스템 정비 등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등 공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상장 후 동사의 공시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인수인과 일반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

동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동사와 대표주관회사의 주요 이해관계로서, 미래에셋증권㈜ 는 동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동사의 보통주식 108,7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명	구 분	주식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지분율	주당	총	의무보유
					(공모 전)	취득가액	취득금액	기간
미래에셋증권(주)	상장주선인	기명식보통주	2021년 09월 10일	108,700주	1.27%	9,200원	1,000,040,000 원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1)

주1)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가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주식 108,7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세칙에 따라,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은 17,000원으로 괴리율이 84.78%인 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9,2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과의 괴리율은 84.78%입니다.

인수인	증권의 종류	확정공모가액	취득가액	괴리율	비고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7,000원	9,200원	84.78%	-

주1) 확정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확정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27%(공모 후 1.06%, 의무인수분 53,250주 0.52% 별도)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미래에셋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상장주선인의 내부통제 기준]

제52조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관리)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①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③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업실사 절차, 조사·검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업실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 시 회사와 주관회사 간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동사의 산업, 영업, 재무, 경영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종합평가결과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포바이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확정**공모가액	**1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포바이포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포바이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공모가액 산출방법

(1) 공모희망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포바이포의 2021년 온기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산업의 특성, 비교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비교평가방법 선정

(가) 비교평가모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

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금번 공모를 위한 ㈜포바이포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외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의 2021년 온기 기준 실적을 기준으로 성장성, 매출액 및 수익성을 반영할 수 있는 PSR 및 PE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표: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사유]

적용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적합성

PSR	PSR(주가매출액비율; Price/Sales Ratio)는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이 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높은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지표입니다. P/S는 다른 상대가치평가 방법보다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고 변동성이 높지 않아 가치평가에 적용하는데 보다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습니다. P/S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대비 연도별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등과 관련하여 회사 별로 채택한 회계정책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지만, 매출액은 채택된 회계정책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산업 내 패러다임 변화 시, 해당 산업은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하게 되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게 됩니다. 동 시기에는 시장참여자들은 산업 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전환기 단계 산업에서는 기업 매출액의 크기가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 등의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VFX 콘텐츠 산업 내 패러다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VFX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다수 인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 집약적 작업 방식에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기술 중심의 작업 방식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자동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을 개발하였으며,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화질 개선 공정 중 일부를 자동화 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작업 비용, 시간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을 보유하고도 최근 3사업연도 동안 평균 11%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였으며, PIXELL 솔루션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효율성이 점차 증가하여 2021년 온기 기준 1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동사의 높은 기술 경쟁력과 콘텐츠 제작 산업 구조의 변화가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로 판단됩니다. 둘째, 영상의 제작에 있어 직접 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편집하는 것이 아닌, 스톡 영상 및 VFX Asset을 활용한 Full-Digital 기반 제작방식으로의 제작 방식 변화입니다. 기존의 영상 제작 방식은 고화질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 좋은 장비를 갖추고, 촬영 장소를 섭외 후 장기간 촬영한 결과물을 다시 편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새롭게 대두된 Full-Digital 기반 제작방식은 고화질의 스톡 영상 및 VFX Asset을 구매 후 합성, 보정하는 과정만 거치게 되어 영상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자체적으로 고화질 스톡 영상 플랫폼 KEYCUT STOCK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화질 개선 작업 없이 즉시 영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고화질의 스톡 영상을 제공하여 Full-Digital 기반 영상 제작 방식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해외 현지 촬영의 어려움, 영상 촬영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 등으로 인해 향후 Full-Digital 기반 제작방식의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 또한 스톡 영상의 다양성 확대, 플랫폼 카테고리의 다각화 등 수요자 맞춤형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의 대형화, 고도화로 고화질 영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콘텐츠 시장은 실감형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실감콘텐츠 시장 규모는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따른 실감콘텐츠 중심의 산업변화, 기업/공공기관 내 XR 기술 적용 증가, 고품질 실감콘텐츠 제작 확산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6.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VFX 기술, 고화질 디스플레이 및 XR/AR 기기의 고도화로 인해 이후에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동사의 주요 목표시장인 VFX 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의 성장성과 "인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의 핵심 역량 변화"와 "Full-Digital 기반 제작방식으로의 콘텐츠 제작방식 전환"이라는 VFX 콘텐츠 제작 산업 내 패러다임 변화를 근거하여, 금번 주식회사 포바이포의 주식 평가에 있어서 회사 및 산업의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PSR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PER	PER(주가수익비율; 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이 형성되므로, PER을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포바이포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표: PBR, EV/EBITDA 제외사유]

제외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PBR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EV/EBITDA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다) PSR 평가방법 선정의 세부 이유

[VFX기반의 영상 콘텐츠 제작, 유통 시장의 성장성]

동사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수요는 상기와 같이 글로벌 VFX 시장 및 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 그리고 스톡 영상 시장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의 대형화, 고도화로 고화질 영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현실감, 몰입감 있는 고화질 콘텐츠의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VFX 시장은 생산 방식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동 집약적 콘텐츠 후반제작 방식에서 인공지능 등 신규 기술이 도입되며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 촬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스톡영상, VFX Asset 등을 합성, 보정하는 Full-Digital 기반 제작방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자동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 개발을 통해 기존에 수

작업으로 진행했던 화질 개선 공정 중 일부를 자동화 하였으며, 자체 플랫폼 KEYCUT STOCK 내 고화질 스톡 영상을 활용하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작업 비용, 시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목표시장인 글로벌 VFX 시장, 스톡 영상 시장은 모두 실감형 콘텐츠로 발전한 콘텐츠 전반의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시장은 견조히 성장 중입니다.

적용 분야별 세부 VFX 시장의 규모 및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Global Market Size by Application 2019-2024, 단위: 백만달러, 출처: Technavio]

유형	2019A	2020E	2021E	2022E	2023E	2024E
영화	4,160.7	4,529.4	4,944.3	5,412.0	5,940.8	6,537.8
게임	1,266.3	1,362.2	1,468.0	1,585.0	1,714.3	1,858.0
TV	2,067.2	2,235.9	2,425.0	2,637.5	2,876.2	3,145.7
광고	475.0	412.5	467.4	536.3	620.7	720.9

동사는 위의 세부 시장 중 영화, TV, 광고 시장과 관련한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당 세부시장이 성장할수록 관련한 사업 기회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VFX 시장은 다양한 유관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실감형 콘텐츠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시장 내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기에 국내외 실감형 콘텐츠 시장 성장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5G시대, 실감산업 육성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실감콘텐츠 시장은 5G 성능 향상과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2023년 기준 5조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국내 실감콘텐츠 시장 규모, 단위: 억원,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구분	2021(E)	2022(E)	2023(E)	연평균 성장률 ('21-'23)
실감콘텐츠 시장	32,400	46,800	57,600	33.3%

실감형 콘텐츠의 근간을 이루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상 국가 간 경계 등이 존재하지 않고, 소비 및 생산 확대가 빠르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 나아가 실감형 콘텐츠 시장 역시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빠른 확장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 시장의 경우, 상기에 서술하였듯이 정부 차원에서의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019)의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자료" 중 "세계 실감 콘텐

츠 시장규모 및 전망"에 따르면, 실감 콘텐츠 시장은 2018년부터 2023년 까지 연평균 56.1%의 높은성장률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2023년 910억 2,40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림: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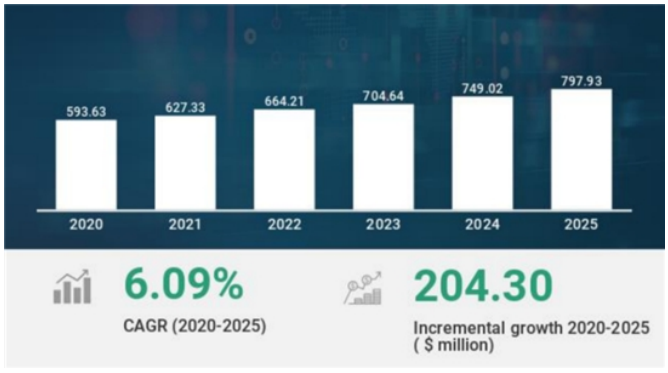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국내 실감 콘텐츠 시장 전망과 마찬가지로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따른 실감콘텐츠 중심의 산업변화, 기업/공공기관 내 XR 기술 적용 증가, 고품질 실감콘텐츠 제작 확산에 따라 급속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또한, Technavio 에 의하면 동사가 사업을 영위 중인 스톡 영상 시장은 2020년 593백만 달러 수준으로, 2021 년부터 2025년까지 CAGR 6.09% 로 성장해, 2025년 798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 프로모션과 마케팅 콘텐츠의 증가, 인터넷 연결성의 증대, 스마트폰 사용량의 증가, OTT 플랫폼을 통한 영상 콘텐츠 시청 수요의 증가 등의 요소가 글로벌 스톡 영상 시장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림: Global Stock Footage Market Size and Forecast 2020-2025, 단위: 백만달러, 출처: Technavio]



[포바이포의 성장성]

동사는 2017년 8월 설립 이후 5년간 약 115.9%, 최근 3년간 약 44.7%의 높은 연평균 영업수익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례없는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시장에서 자체 개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PIXELL")을 활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개화하는 시장의 선두주자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동사는 2020년 이후 COVID-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이처럼 높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동사 기업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표: 최근 3개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과목	2021년 (제5기)	2020년 (제4기)	2019년 (제3기)
영업수익	22,276	13,993	10,645
(증감률)	59.2%	31.5%	-
영업이익	4,013	1,813	814
(증감률)	121.3%	123.0%	-
영업이익률	18.0%	13.0%	7.6%
순이익	3,763	1,354	688
(증감률)	177.9%	96.8%	-
순이익률	16.9%	9.7%	6.5%

(라) PER 평가방법 선정의 세부 이유

[포바이포의 수익성]

동사는 콘텐츠 화질개선 기술 기반으로 고화질/뉴미디어/VFX 콘텐츠 제작(KEYCUT Visual) 및 고화질 동영상 거래 플랫폼(KEYCUT STOCK)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로 영업수익은 2019년 10,645백만원, 2020년 13,993백만원, 2021년 22,276백만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업이익의 규모도 2019년 814백만원에서 2021년 4,013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PIXELL 솔루션의 고도화 및 자체 플랫폼을 통한 스톡영상 활용에 따라 경상이익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엔터테인먼트, 버추얼휴먼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이러한 자동화된 화질개선 솔루션 보유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보다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VFX 사업을 영위중인 다수의 경쟁사가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하고 있는 것에 반해 동사는 최근 3년 지속적으로 순이익 흑자를 기록중이며, 순이익률 역시 2019년 6.5%, 2020년 9.7%, 2021년 16.9%로 개선 중입니다.

이에 동사의 높은 수익성 역시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동시에 PER에 대한 적용은 동사에 대해 수익성에 기반한 보수적인 벨류에이션을 가능케 합니다.

[표: 연도별 이익률 비교, 단위: 백만원]

과목	2021년 (제5기)	2020년 (제4기)	2019년 (제3기)
영업수익	22,276	13,993	10,645
영업비용	18,262	12,181	9,831
영업이익	4,014	1,813	814
영업이익률 (%)	18.0%	13.0%	7.6%
당기순이익	3,763	1,354	688
당기순이익률 (%)	16.9%	9.7%	6.5%

(마) 비교평가모형의 한계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1년 온기 기준 매출에 비교대상 회사의 2021년 온기 실적을 적용한 PSR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분가치와 동사의 2021년 온기 당기순이익에 비교 대상 회사의 2021년 온기 실적을 적용한 PER을 적용한 지분가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21년 온기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 산정방식만이 동사의 기업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교회사의 선정

(1) 비교회사 선정 요약

주식회사 포바이포는 자체 개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주얼 콘텐츠 전문 솔루션 기업입니다. 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에 속해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러한 회사의 콘텐츠 제작의 특성과 콘텐츠 유통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비교대상 표준산업분류가 '(J59113)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에 속하는 상장회사들을 모집단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선정된 모집단을 바탕으로

전방산업을 포함한 사업적 유사성, 재무적 유사성, 기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비교기업으로 자이언트스텝, 코퍼스코리아, 덱스터스튜디오, 위지윅스튜디오 4개사, 해외비교기업으로 Shutterstock 1개사를 최종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회사들은 동사와 비교시 사업의 범위,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유사회사선정 기준표]

구분	선정기준	세부 검토기준	해당회사
모집단 선정	동일 산업분류 및 유사회사 산업분류	[국내 유사기업] 동사의 모집단 선정을 위해 사업 유사성을 고려하여 국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에 속한 상장사 3개사,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9130)에 속한 상장사 6개사,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에 속한 상장사 3개사를 1차 유사기업으로 선정	12개사
		[해외 유사기업] 해외 업체 중 GICS(글로벌 표준 산업분류)상 "Internet & Direct Marketing Retail과 BICS(블룸버그 산업분류)상 "Internet Media & Services"에 속하는 상장사 중 선진 자본시장(미국, 영국, 호주, 홍콩, 일본,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업체를 제외하고 본사 소재지가 선진 시장(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가 아닌 업체를 제외	17개사
1차 선정기준	사업적 유사성	[국내 유사기업] 국내 모집단 선정 기업 중, 2021년 온기 기준 "VFX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 혹은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 IP 거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4개사
		[해외 유사기업] 해외 모집단 선정 기업 중, 동사와 유사한 이미지 거래 플랫폼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선정	2개사
2차 선정기준	재무 및 일반 유사성	[국내 유사기업]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 ① 2021년 온기 매출 200억원 이상 ② 결산월이 12월, 2021년 감사의견이 적정이었을 것 ③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조치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 ④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주주의 변경, 중대한 합병, 횡령 및 배임 등 경영상 중대한 이슈사항이 없을 것	4개사
		[해외 유사기업] 2차 해외 유사기업 중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 업체 제외	1개사

(2) 비교회사 선정 세부내역

(가) 국내 모집단 선정

동사는 자체 개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을 기반으로, 초고화질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사업 및 콘텐츠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에 속해 있습니다.

회사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교대상 표준산업분류가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에 속하는 상장회사들을 모집단으로 포함하였습니다.

[표: 산업 분류별 상장사, 출처: KISLINE, DART 전자공시시스템]

구분	해당기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	캐리소프트, 자이언트스텝, 코퍼스코리아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9130)	넥스트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덱스터스튜디오, 아이오케이컴퍼니, 아센디오, 바른손이앤에이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아이에이치큐, 제이콘텐트리, 위지윅스튜디오

(나) 국내 1차 비교회사 선정

동사의 2021년 온기 기준 매출의 세부 비중을 검토한 결과 VFX기반 콘텐츠 제작 매출은 약 92.8%, 콘텐츠 유통 관련 매출은 7.2% 수준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 사업 유형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출처: 포바이포 회사제시]

구분	품목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콘텐츠 제작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20,679	92.8%	12,904	92.2%	10,645	100.0%
콘텐츠 유통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1,597	7.2%	1,089	7.8%	-	-
합계		22,276	100.0%	13,993	100.0%	10,645	100.0%

이러한 동사의 사업 현황을 고려하여, 앞서 모집단으로 선정된 12개 기업 중 동사와의 사업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온기 기준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 IP 거래 사업"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를 선별하였습니다.

연번	회사명	사업영역 1	비중	사업영역 2	비중	사업영역 3	비중	사업영역 4	비중	선정여부
1	(주)캐리소프트	콘텐츠(캐릭터) 공연, 커머스, 키즈카페, 라이선스	65.0%	동영상 콘텐츠 광고 수익, VOD 판매 매출	35.0%					X
2	(주)자이언트스텝	콘텐츠 제작(광고VFX, 영상 VFX, 리얼타임콘텐츠)	66.6%	광고 영상 콘텐츠 제작	27.3%	장비판매(방송장비 상품, 용역)	6.2%			O
3	(주)코퍼스코리아	방송 콘텐츠 IP 유통 및 IP서브라이선싱	83.7%	콘텐츠 기획 및 제작매출	7.9%	상품매출(화장품 외)	6.2%	자막매출	1.8%	O
4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영화 판권 사업(판매전략, 판권계약, 상영, 필름공급)	89.5%	드라마 판권계약 및 제작	6.2%	기타	4.4%			X
5	(주)쇼박스	영화매출 (극장상영, 판권판매)	99.1%	콘텐츠기획제작	0.8%	기타	0.1%			X
6	(주)덱스터스튜디오	VFX제작	95.7%	영화 프로젝트 투자	4.3%					O
7	(주)아이오케이컴퍼니	매니지먼트	87.6%	음반/음원	7.5%	광고메이킹	4.9%			X
8	(주)아센디오	영화 투자/배급/제작	39.3%	CCTV 영상 솔루션	33.2%	드라마 제작	19.1%	연예매니지먼트	8.1%	X
9	(주)바른손이앤에이	영화 제작 및 판권 사업	53.8%	임대	21.5%	방송콘텐츠 제작	12.4%	게임	4.9%	X
10	(주)아이에이치큐	미디어-광고, 수신료, 기타	82.0%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 방송, 음반, 기타	18.0%					X
11	(주)제이콘텐트리	드라마제작, 콘텐츠 유통	76.0%	영화상영	24.0%					X
12	(주)위지윅스튜디오	드라마 영화 콘텐츠 기획/제작/배급	60.4%	전시, 행사의 광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20.7%	VFX및 뉴미디어 사업	18.7%	기타	0.3%	O

(다) 국내 2차 비교회사 선정

1차 비교회사로 선정된 4개 기업 중 아래의 재무 및 일반 유사성 기준에 따라 4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재무 유사성]
- 2021년 온기 매출 200억원 이상일 것

[일반적 유사성]
- 결산월이 12월,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
-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조치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
-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주주의 변경, 중대한 합병, 횡령 및 배임 등 경영상 중대한 이슈사항이 없을 것

[표: 국내 비교회사 2차 선정 내역, 단위: 백만원,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Bloomberg]

연번	회사명	시가총액	2020년			2021년			재무 유사성	일반 유사성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1	(주)자이언트스텝	922,489	20,223	(1,503)	(1,423)	33,157	(2,909)	(3,515)	O	O
2	(주)코퍼스코리아	137,869	21,654	5,350	2,122	33,859	10,292	8,092	O	O
3	(주)덱스터스튜디오	606,454	26,329	203	(3,032)	43,025	(570)	(1,014)	O	O
4	(주)위지윅스튜디오	1,626,166	110,194	1,849	(1,296)	120,284	(3,955)	(8,406)	O	O

주1)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인 기업의 경우 지배회사지분 순이익 적용

주2) 시가총액의 경우 분석기준일(2022년 04월 01일)의 Min[직전 1개월 평균 시가총액, 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 기준일 시가총액]

(라) 국내 비교회사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언트스텝, 코퍼스코리아, 덱스터스튜디오, 위지윅스튜디오 4개사를 최종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표: 국내 비교회사 최종 선정 내역, 단위: 백만원,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Bloomberg]

No.	회사명	시가 총액	2021년			최종선정여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1	자이언트스텝	922,489	33,157	(2,909)	(3,515)	선정
2	코퍼스코리아	137,869	33,859	10,292	8,092	선정
3	덱스터스튜디오	606,454	43,025	(570)	(1,014)	선정
4	위지윅스튜디오	1,626,166	120,284	(3,955)	(8,406)	선정

주1)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인 기업의 경우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 적용

주2) 시가총액의 경우 분석기준일(2022년 4월 01일)의 Min[직전 1개월 평균 시가총액, 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 기준일 시가총액]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비교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

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 해외 모집단 선정

동사는 자체 개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을 기반으로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 외, 키컷스톡 플랫폼을 통해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 IP 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2020년 10억원에서 2021년 16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상장회사 중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수가 제한적인 바, 해당 사업 부문의 적합한 유사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GICS(글로벌 표준 산업분류)상 "Internet & Direct Marketing Retail과 BICS(블룸버그 산업분류)상 "Internet Media & Services"에 속하는 해외 상장사 중 선진 자본시장인 미국, 영국, 호주, 홍콩, 일본, 싱가포르에 본사소재지를 두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비교회사 모집단으로 포함하였습니다.

[표: 해외 비교회사 모집단 선정 내역, 출처:Bloomberg]

구분	해당기업	거래 시장
GICS-Internet & Direct Marketing Retail, BICS-Internet Media & Service	SHUTTERSTOCK INC	미국
	MONEYSUPERMARKET.COM	영국
	DEMAE-CAN CO LTD	일본
	GROUPON INC	미국
	BUYSELL TECHNOLOGIES CO LTD	일본
	RUMBLEON INC-B	미국
	TEMAIRAZU INC	일본
	CROWDWORKS INC	일본
	VELTRA CORP	일본
	REMARK HOLDINGS INC	미국
	TEN LIFESTYLE GROUP PLC	영국
	ALL ABOUT INC	일본
	BEAGLEE INC	일본
	ULS TECHNOLOGY PLC	영국
	SKIYAKI INC	일본
	HARRIS TECHNOLOGY GROUP LTD	호주
	PIXTA INC	일본

(바) 해외 1차 비교회사 선정

동사 초고화질 영상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2021년 온기 기준 16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2%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업유사성 측면에서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 IP 거래 사업을 영위하는 2개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연번	회사명/브랜드명	사업영역 1	비중	사업영역 2	비중	사업영역 3	비중	선정여부
1	SHUTTERSTOCK INC	이미지 거래 플랫폼	100.0%					O
2	MONEYSUPERMARKET.COM	가격비교 웹-보험	56.8%	가격비교 웹-Home	22.6%	가격비교 웹-대출	20.6%	X
3	DEMAE-CAN CO LTD	음식 딜리버리 및 수수료	98.1%	기타	1.9%			X
4	GROUPON INC	이커머스	100.0%					X
5	BUYSELL TECHNOLOGIES CO LTD	인터넷 광고	100.0%					X
6	RUMBLEON INC-B	자동차 거래사이트	100.0%					X
7	TEMAIRAZU INC	여행, 차량, 보험, 가전 비교 웹사이트	100.0%					X
8	CROWDWORKS INC	채용 사이트	72.2%	기타	27.8%			X
9	VELTRA CORP	여행 예약 사이트	100.0%					X
10	REMARK HOLDINGS INC	인공지능 기반 인터넷 솔루션	92.5%	광고 및 기타	7.5%			X
11	TEN LIFESTYLE GROUP PLC	여행 예약 및 컨시어지 플랫폼	100.0%					X
12	ALL ABOUT INC	이커머스, 인터넷교육, 등	79.2%	인터넷 광고 , 마케팅	20.8%			X
13	BEAGLEE INC	전자 책 거래 플랫폼	100.0%					X
14	ULS TECHNOLOGY PLC	부동산 인터넷 플랫폼	100.0%					X
15	SKIYAKI INC	팬클럽 서비스 플랫폼	97.8%	O2O 및 기타	2.2%			X
16	HARRIS TECHNOLOGY GROUP LTD	인터넷 포털/광고	100.0%					X
17	PIXTA INC	이미지 거래 플랫폼	100.0%					O

(사) 해외 2차 비교회사 선정

1차 비교회사로 선정된 2개 기업 중 아래의 재무 및 일반 유사성 기준에 따라 1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재무 유사성]
- 최근 1개월 평균 시가총액, 최근 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 기준일 시가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업체 제외할 것

[일반적 유사성]
-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을 것
-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조치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

[표: 해외 비교회사 2차 선정 내역, 단위: 백만원, 출처: Bloomberg]

연번	회사명/브랜드명	시가총액	2020년			2021년			재무 유사성	일반 유사성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1	SHUTTERSTOCK INC	4,173,878	786,254	100,558	84,637	885,773	123,811	105,231	O	O

2	PIXTA INC	31,091	28,999	431	(1,247)	29,333	1,301	1,920	X	O

주1)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인 기업의 경우 지배회사지분 순이익 적용

주2) 시가총액의 경우 분석기준일(2022년 04월 01일)의 Min[직전 1개월 평균 시가총액, 직전 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 기준일 시가총액]

(아) 해외 비교회사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SHUTTERSTOCK INC 1개사를 최종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표: 해외 비교회사 최종 선정 내역, 단위: 백만원, 출처: Bloomberg]

No.	회사명	시가총액	2021년			선정여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1	SHUTTERSTOCK INC	4,173,878	885,773	123,811	105,231	선정

주1)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인 기업의 경우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 적용

주2) 시가총액의 경우 분석기준일(2022년 04월 01일)의 Min[직전 1개월 평균 시가총액, 직전 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 기준일 시가총액]

(자) 국내 및 해외 비교회사 기준주가

국내 및 해외 유사회사의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하여 2022년 04월 0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2022년 03월 01일 ~ 04월 01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2022년 03월 28일 ~ 04월 01일) 종가의 산술평균을 산정한 후 이들을 평가기준일(2022년 04월 01일) 종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주가를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표: 국내외 비교회사 기준주가, 단위: 원, 출처: Bloomberg]

구분		자이언트스텝	코퍼스코리아	덱스터스튜디오	위지윅스튜디오	SHUTTERSTOCK
일자	2022/03/01	-	-	-	-	106,873
	2022/03/02	47,600	2,940	20,700	38,250	107,516
	2022/03/03	47,600	2,940	21,000	38,950	109,512
	2022/03/04	46,200	2,930	20,550	38,950	109,496
	2022/03/07	44,850	2,830	20,400	38,300	104,878
	2022/03/08	43,550	2,760	20,050	35,500	106,785
	2022/03/09	-	-	-	-	109,709
	2022/03/10	44,650	2,800	20,350	36,000	111,462
	2022/03/11	47,100	2,860	21,250	36,900	107,105
	2022/03/14	44,000	2,840	20,450	35,800	106,666
	2022/03/15	44,850	2,825	20,350	36,400	107,501
	2022/03/16	46,450	2,900	21,600	38,350	113,020

	2022/03/17	50,200	2,990	24,050	40,000	111,407
	2022/03/18	51,900	2,985	24,100	42,250	115,130
	2022/03/21	49,850	2,990	23,550	41,900	114,923
	2022/03/22	49,700	2,975	24,050	42,250	116,815
	2022/03/23	51,000	3,000	24,750	41,750	116,228
	2022/03/24	50,400	3,040	24,300	41,650	116,607
	2022/03/25	50,500	3,040	24,300	42,350	115,561
	2022/03/28	44,750	3,055	23,550	39,600	116,181
	2022/03/29	44,700	3,100	23,400	39,050	118,192
	2022/03/30	42,200	3,155	23,500	38,050	115,337
	2022/03/31	42,900	3,240	24,400	38,150	113,012
	2022/04/01	42,250	3,225	23,700	38,050	113,962
평가기준일 종가 (A)		42,250	3,225	23,700	38,050	113,962
5거래일 평균 종가 (B)		43,360	3,155	23,710	38,580	115,337
최근 1개월 평균 종가 (C)		46,691	2,974	22,470	39,020	111,828
기준주가 (Min[(A),(B),(C)])		42,250	2,974	22,470	38,050	111,828

(3)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가) PS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표: PS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 PS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액(S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성장성 및 기업규모 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S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 성장성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 방법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1년온기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 기업들의 산술평균 PSR 배수를 동사의 2021년 온기 매출액에 적용하여 상대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PSR 배수 = 기준 주가 ÷ 주당매출액(SPS) SPS = 매출액 ÷ 발행주식총수 비교가치 산정시 유사회사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공모주식수 및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미행사)를 포함하였습니다. ※ 적용주식수: 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 + 희석 가능 주식(전환사채, 스톡옵션, 상환전환우선주 등 포함)

발행회사 - 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수 + 공모주식수(신주발행)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미행사)

③ 한계점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유사회사가 동일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을 비교분석 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을 이용하는 안정성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이익과 가치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간의 매출액순이익률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 유사회사 2021년 온기 기준 실적을 적용한 PSR 산출]

구분	(주)자이언트스텝	(주)코퍼스코리아	(주)덱스터스튜디오	(주)위지윅스튜디오	SHUTTERSTOCK
상장시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뉴욕증권거래소 (NYSE)
('21년 온기)매출액 (백만원) (A)	33,157	33,859	43,025	120,284	885,773
적용주식수(주) (B)	21,834,054	46,363,877	26,988,958	42,737,605	37,324,000
SPS (원) (C=A÷B)	1,519	730	1,594	2,814	23,732
기준주가 (원) (D)	42,250	2,974	22,470	38,050	111,828
적용 PSR (배) (E=D÷C)	27.8x	4.1x	14.1x	13.5x	4.7x
평균 PSR (배)	12.8x				

주1) 전자공시시스템, Bloomberg 및 각사 공시자료 참조

주2) 적용주식수: 상장주식수 + 희석 가능 주식(전환사채, 스톡옵션, 상환전환우선주 등 포함)

[표: 포바이포의 PSR에 의한 평가가치]

구분	내용	비고
적용 매출액 (백만원)	22,276	(A) 주1)
적용주식수 (주)	11,022,235	(B)
SPS (원)	2,021	(C)=(A÷B)
적용 PSR (배)	12.8x	(D)
PSR 비교가치 (원)	25,958	(E)=(CxD)

주1) 포바이포의 2021년 온기 매출액 기준입니다.

적용 주식수는 아래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2)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 보통주식수	8,580,985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1,590,000	IPO 공모 주식주 중 신주 발행 주식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98,000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상장후 1년 이내 행사가능분)
의무인수분(상장주선인)	53,250	MIN (공모물량의 3%, 10억원), 공모가액 하단 기준
소 계	11,022,235	-

(나)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표: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
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률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방법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향후 실적 예측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1년 온기실적을 기준으로 비교대상회사의 PER을 산출하여, 동사의 2021년 온기 실적을 적용한 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유사회사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 적용주식수:
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 + 희석 가능 주식(전환사채, 스톡옵션, 상환전환우선주 등 포함)
발행회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률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 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 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

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표: 유사회사 2021년 온기기준 실적을 적용한 PER 산출]

구분	(주)코퍼스코리아	SHUTTERSTOCK
상장시장	코스닥	뉴욕증권거래소(NYSE)
('21년 온기)순이익 (백만원)	6,821	105,231
적용주식수(주)	46,363,877	37,324,000
EPS (원)	147	2,819
기준주가 (원)	2,974	111,828
PER (배)	20.2x	39.7x
적용 PER (배)	29.9x	

주1) 전자공시시스템, Bloomberg 및 각사 공시자료 참조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순이익은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기준

주3) 적용주식수: 상장주식수 + 희석 가능 주식(전환사채, 스톡옵션, 상환전환우선주 등 포함)

주4) (주)코퍼스코리아 2021년 온기 기준 순이익은 8,092백만원이나, 영업외 금융수익으로 파생상품평가이익 1,682백만원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당기순이익을 조정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 {파생상품평가이익x(1-2021년 유효세율)}=8,092백만원-{1,682백만원 x(1-24.4%)}

[표: 포바이포의 PER에 의한 평가가치]

구분	내용	비고
적용 당기순이익 (백만원)	3,764	(A) 주1)
적용주식수 (주)	11,022,235	(B) 주2)
EPS (원)	341	(C) = (A÷B)
적용 PER (배)	29.9x	(D)
PER 비교가치 (원)	10,224	(E) = (CxD)

주1) 포바이포의 2021년 당기 순이익 기준입니다.
적용 증권수는 아래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2)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 보통주식수	8,580,985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1,590,000	IPO 공모 주식주 중 신주 발행 주식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98,000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상장후 1년 이내 행사가능분)
의무인수분(상장주선인)	53,250	MIN (공모물량의 3%, 10억원), 공모가액 하단 기준
소 계	11,022,235	-

(다)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SR 및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포바이포의 확정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포바이포의확정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PSR 평가가치	25,958 원
	PER 평가가치	10,224 원
	평균 주1)	18,091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2)	39.20% ~ 22.61%	
공모희망가액 밴드	11,000원 ~ 14,000원	
확정 공모가액	17,000원	

주1)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평균은 2021년 온기기준 PSR 비교가치 및 PER 비교가치를 산술평균한 수치입니다.

주2)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평가기준일 최근 6개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법인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주)포바이포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9.20% ~ 22.6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1,000원 ~ 14,0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금번 공모 투자자 유인을 위한 할인율, COVID-19 전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증시 변동성, 과거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 내역]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지투파워	2022-04-01	22.5%	5.9%
공구우먼	2022-03-23	32.6%	19.6%
유일로보틱스	2022-03-18	44.4%	54.1%
비씨엔씨	2022-03-03	37.6%	20.3%
스톤브릿지벤처스	2022-02-25	41.5%	31.7%
브이씨	2022-02-24	26.1%	3.9%
나래나노텍	2022-02-08	36.1%	25.2%
아셈스	2022-02-07	28.3%	18.0%
케이옥션	2022-01-24	40.7%	30.2%
오토앤	2022-01-20	28.5%	18.3%
KTB네트워크	2021-12-16	41.7%	27.6%
알비더블유	2021-11-22	38.1%	29.1%
트윔	2021-11-17	36.7%	27.5%
아이티아이즈	2021-11-11	32.1%	22.3%
디어유	2021-11-10	34.1%	12.2%
피코그램	2021-11-03	19.1%	8.1%
엔켐	2021-11-01	34.2%	23.2%
리파인	2021-10-29	28.3%	18.1%
지앤비에스엔지니어링	2021-10-29	41.2%	28.4%
아이패밀리에스씨	2021-10-28	36.7%	22.1%
지아이텍	2021-10-21	26.2%	15.9%
씨유테크	2021-10-08	32.9%	26.3%
원준	2021-10-07	41.7%	32.8%
아스플로	2021-10-07	23.1%	10.9%
실리콘투	2021-09-29	47.2%	39.6%
프롬바이오	2021-09-28	24.4%	13.9%
바이오플러스	2021-09-27	29.0%	21.5%
평균		33.5%	22.5%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1) SPAC 상장, SPAC 합병, 리츠 공모, 특례상장, 이전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코스닥시장 신규 일반상장 기준입니다.

(4) 기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포바이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업종유사성,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비교가능성,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국내외 5개 기업을 최종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회사들은 일정 수준의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포바이포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교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비교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 및 2021년 온기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표: 동사 및 비교회사 2021년 온기요약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동사	자이언트스텝	코퍼스코리아	덱스터	위지윅스튜디오	Shutterstock
회계기준	K-IFRS, IFRS 연결					
유동자산	35,108	120,661	54,951	46,395	192,991	388,215
비유동자산	9,349	23,064	53,757	48,327	177,479	463,495
[자산총계]	44,457	143,725	108,708	94,721	370,469	851,710
유동부채	6,411	14,126	54,003	24,875	98,286	333,784
비유동부채	1,542	2,448	5,868	7,524	8,171	49,444
[부채총계]	7,953	16,574	59,871	32,399	106,457	36,966
자본금	4,290	10,917	3,576	12,700	21,366	392
[자본총계]	36,504	126,797	48,837	58,522	192,637	468,482
매출액	22,276	33,157	33,859	43,025	120,284	756,843
영업이익	4,013	(2,909)	10,292	(570)	(3,955)	124,683
당기순이익	3,763	(3,472)	8,092	(447)	(18,272)	99,996
당기순이익(지배)	3,763	(3,515)	8,092	(943)	(8,406)	99,996

주1) 동사 및 비교회사 주요 재무비율은 2021년 온기 기준입니다.

(나) 비교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표: 동사 및 비교회사 주요 재무비율, 단위: %]

구 분		동사	자이언트스텝	코퍼스코리아	덱스터	위지윅스튜디오	Shutterstock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59.2%	64.0%	56.4%	63.4%	9.2%	13.5%
	영업이익 증가율	121.4%	93.5%	92.4%	-381.3%	-313.9%	46.2%
	순이익 증가율	177.9%	147.1%	281.6%	-69.0%	547.9%	39.3%
	총자산 증가율	198.8%	534.2%	115.9%	38.1%	107.0%	16.7%
활동성 (회)	재고자산 회전률	재고자산 없음	134.6회	47.4회	재고자산 없음	20.9회	재고자산 없음
	매출채권 회전률	3.9회	8.3회	4.1회	4.2회	4.6회	16.5회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18.0%	영업손실	30.4%	영업손실	영업손실	16.5%
	매출액 순이익률	16.9%	당기순손실	23.9%	당기순손실	당기순손실	13.2%
	총자산 순이익률	8.5%	당기순손실	10.2%	당기순손실	당기순손실	0.1%
	자기자본 순이익률	10.3%	당기순손실	924.0%	당기순손실	당기순손실	0.9%
안정성 (%)	부채비율	21.8%	13.1%	122.6%	55.4%	55.3%	7.9%
	차입금의존도	4.1%	1.7%	5.4%	7.9%	2.2%	5.8%
	유동비율	547.6%	854.2%	101.8%	186.5%	196.4%	116.3%

주1) 동사 및 비교회사 주요 재무비율은 2021년 온기 기준입니다.

※ 재무비율 산정방법

구 분	산 식	설 명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당기영업이익 / 당기매출액 ×100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당기매출액 ×100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100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100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당기말 유동자산 / 당기말 유동부채 ×100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당기말 총부채 / 당기말 자기자본 ×100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당기말 차입금 / 당기말 총자산 ×100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100 - 100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 영업이익 / 전기 영업이익 ×100 - 100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순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 ×100 - 100 전기순이익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 총자산 ——————— ×100 - 100 전기말 총자산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매출채권 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매출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당기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재고자산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유동성과 자본배분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총액 (1)	27,030,000,000
자기 주식 매출 총액 (2)	3,144,439,000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총액 (3)	905,250,000
발행제비용 (4)	1,489,429,805
순수입금 [(1) + (2) + (3) - (4)]	29,590,259,195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물량입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	1,398,586,005	**총 발행금액 및 매출금액의** 4.5% (의무인수분 포함)
상장심사수수료	5,000,000	-
상장수수료	11,900,000	-
등록세	3,286,50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657,300	등록세의 20.0%
기타비용	70,000,000	IR 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	1,489,429,805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22년 04월 18일)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계
-	-	9,000	-	20,590	-	29,590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31,080백만원 중 발행제비용 1,489백만원을 제외한 29,590백만원을 운영자금(스톡 콘텐츠 매입, 미국법인 설립 및 운영, 전문인력 충원 등), 타법인증권 취득자금(국내 및 해외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 및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용도별 자금의 규모와 지출시기는 당사가 직면한 사업환경 변화 및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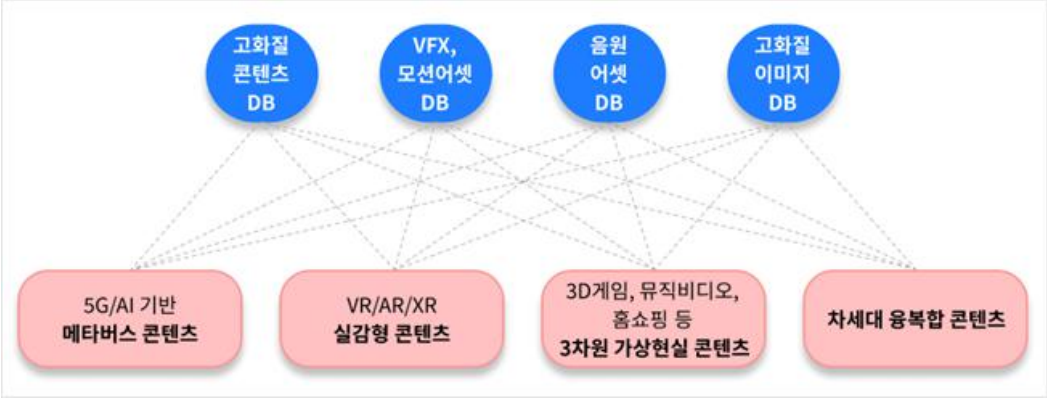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내 용
운영자금	4,300	1,800	2,900	9,000	스톡 콘텐츠 매입, 해외법인 설립, 전문인력 충원 등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12,350	8,240	-	20,590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등
합 계	16,650	10,040	2,900	29,590	-

(1) 운영자금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스톡 콘텐츠 매입	300	800	1,900	3,000
해외법인(미국) 설립	2,000	-	-	2,000
전문인력 충원	2,000	1,000	1,000	4,000
합계	4,300	1,800	2,900	9,000

(가) 스톡 콘텐츠 매입



당사는 2020년 10월, 신규사업으로서 초고화질 스톡 영상(Stock Videos; 짧은 클립으로 촬영 및 제작된 영상 소스) 유통 플랫폼 '키컷스톡(KEYCUT STOCK)' 서비스를 런칭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약 100만건 이상의 고화질 스톡 영상 등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당사 플랫폼처럼 스톡 영상을 유통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은 셔터스톡, 게티이미지 등이 있으나 해당 플랫폼들은 주로 이미지와 저화질 영상 유통에 주력하고 있으며 당사와 같이 8K 이상 스톡 영상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플랫폼은 많지 않습니다.

KEYCUT STOCK 플랫폼은 1) 해당 스톡 영상을 공급하는 글로벌 아티스트, 필름메이커 등에게는 판매 수익 창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2) 영상 제작 및 후반제작사,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효율적으로 제작비용/시간을 단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공급/수요자 모두와 제작 프로세스 전반의 패러다임 혁신에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KEYCUT STOCK의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탑 티어 필름메이커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으로부터 촬영된 일반 콘텐츠를 수집(당사에서 직접 콘텐츠 소유권 매입 또는 외부 작가 간 위탁판매 계약)
2) 콘텐츠에 대한 상품화(클립화, AI기반 딥러닝 화질개선솔루션 PIXELL을 통한 화질 개선, 키워딩 등의 작업)
3) 콘텐츠 수요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타겟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콘텐츠의 상품성 증대 및 유통, 이에 따른 당사 판매 수수료 확보(① 당사 자체 보유 콘텐츠 라이선스 판매시 판매 이익금 전체 당사에 귀속, ② 외부 작가 소유의 콘텐츠 라이선스 위탁판매시, 판매 이익금에서 각 작가별 계약에 따른 정산 수수료 지급)

다른 스톡 영상 플랫폼 업체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2) 상품화 과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사용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고화질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클립화 및 편집 등의 무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당사가 개발한 AI 화질개선 솔루션인 PIXELL을 통해 구현 가능하였으며, 공급자가 어떤 화질의 영상을 올리더라도, 수요자가 구매 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할 수 있는 화질의 영상으로 개선하여 고화질 콘텐츠 DB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가 수요자의 제작 니즈를 충족할 수 있어 판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콘텐츠 산업은 산업간 경계약화, 기술의 발달, 고객수요의 다형화 등의 요인에 의해 빠

르게 융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의 진보가 근본적으로 콘텐츠 산업에서의 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기술 진보에 맞춰 당사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관련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방식은 실제 촬영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가상 인물, 가상 스튜디오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CG(컴퓨터 그래픽스), VFX(Visual Effects, 시각특수효과)의 활용이 보편화 되었으며, 실제 촬영된 결과물과 VFX Asset(CG, VFX 제작 기법 등을 활용해 사전 제작된 오브젝트, 캐릭터, 특수효과 등 소스)을 합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업들이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노동집약적 환경 속에서 신규로 제작하기보다, 당사가 사전 제작하거나 외부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VFX Asset의 사용권(라이선스)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키컷스톡 플랫폼을 통하여 공급했던 고화질 스톡 영상 외에 내부 모션그래픽과 VFX 작업 역량 등을 활용한 VFX Asset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유통 콘텐츠 카테고리 확장을 위하여 비디오 콘텐츠에 몰입감과 임장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오디오 음원 콘텐츠(상업적 음악이 아닌 콘텐츠 내에 활용되는 BGM, Sound Effect와 같은 음원 소스를 의미)등을 확보하여 유통하고자 합니다. 비디오와 오디오는 유사한 알고리즘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당사의 AI기반 딥러닝 화질개선솔루션 PIXELL 개발에 사용되었던 수학적 접근 방식을 활용한 음질 개선 서비스 제공 및 이를 통한 음원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차별적인 부가가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VFX Asset을 통해서 방송, 영화 등의 대형 콘텐츠 제작사 및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으로의 판매처를 확보하고, 오디오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비디오와 오디오, VFX Asset까지 공급하여 글로벌 최대 비디오 및 오디오의 초고품질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는 플랫폼사로의 확장과 시장 내 입지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향후 3개년 키컷스톡 콘텐츠 확보 목표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키컷스톡 향후 3개년 콘텐츠 확보 목표치, 단위: Clip]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콘텐츠 수	2,856,351	8,569,053	25,707,159
- 당사 자체 소유(KEYCUT Original)	36,000	108,000	324,000
- 작가 간 유통 계약	2,820,351	8,461,053	25,383,159

당사는 키컷스톡 유통 콘텐츠 확보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톡 콘텐츠의 경우 당사가 직접 저작권을 매입하여 상품화 과정을 거쳐 "KEYCUT Original" 이라는 레이블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통상 외부 작가 간 계약에 따라 당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판매의 경우, 판매액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작가 정산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KEYCUT Original 콘텐츠의 경우 당사 소유 의 콘텐츠이므로 판매와 관련된 이익 전부를 당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직접 매입한 단일 콘텐츠를 가공, 컷팅 등 편집 과정을 거쳐 복수의 상품화 가능 스톡 콘텐츠로 확장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콘텐츠 확보 및 수익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의 가정을 통해 향후 3개년 KEYCUT Original 확보를 위한 스톡 콘텐츠 매입 금액을 도출하였습니다.

[표: KEYCUT Original 확보금액 도출을 위한 가정사항]

(1) 당사 자체 촬영 및 제작		10%		
(2) 외부 저작권 매입		90%		
(2)	(2)-1. 스톡 콘텐츠 매입	15%(본 건 자금 사용 목적)		
	(2)-2. Contents Provider 등 타법인 증권 투자 등을 통한 간접 소유	85%		
	가공, 컷팅 등 통한 상품화 활용 배수	2022년: 3배	2023년: 4배	2024년: 5배

주1) 당사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 저작권 매입을 통해 KEYCUT Original로 상품화된 수는 최초 원본 매입 스톡 콘텐츠수의 약 2배 수준으로, 당사는 기 확보된 오리지널 콘텐츠 간의 합성 등 기법을 추가로 적용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3배~5배까지 상품화 활용 배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상기 가정사항에 따라 당사에서 추정한 연도별 스톡 콘텐츠 매입 필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키컷스톡 향후 3개년 콘텐츠 매입 필요 금액, 단위: Clip,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스톡 콘텐츠 매입 필요량	1,080	2,430	5,832	9,342
필요금액	300	800	1,900	3,000

주1) 스톡 콘텐츠 매입 필요량은 연도별 당사 자체 소유(KEYCUT Original) 목표치 증감분에 외부 저작권 매입 비율(90%)×스톡 콘텐츠 매입 비율(15%)÷연도별 상품화 활용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필요금액 산정시 Clip 당 매입금액은 현재까지 당사가 외부로부터 매입한 스톡 콘텐츠건들의 Clip당 평균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나) 해외법인(미국) 설립

당사는 향후 신규사업인 키컷스톡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해외 지역 중에서는 현재 리테일 결제 구매 고객 중 미국 이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한 운영 시 현지 이용자들의 구매 결제 시스템을 보다 간편하게 구축(페이팔(Paypal), 페이오니아(Payoneer), 스트라이프(Stripe) 등)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또한 동 법인을 통해 미국 현지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발굴, 현지 법인 마케팅 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2년 미국법인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수익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투입에 필요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표: 미국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필요 투입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인건비	500
서버 등 설비 구축비용	800
판관비 등 기타 운영비용(임대료 포함)	700
합계	2,000

주1) 인건비는 초기 필요 인원수 5인을 가정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평균 임금 격차(65.3%, 2020년, OECD)를 고려한 당사 미국법인 인건비 목표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다) 업무 개발 및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인력 충원

당사는 초고화질 영상 및 뉴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키컷비주얼(KEYCUT Visual)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고화질 영상 제작 영역의 경우, 수요처 확대 추진에 따른 작업량 증가가 예상되며, 뉴미디어 콘텐츠 영역은 당사의 신규사업인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 엔터테인먼트 관련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 추진 검토 등으로 작업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작업 공정 표준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해 인당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으나, 각 사업부문별 신규 사업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고도화된 작업 시스템 개발, 콘텐츠 제작 관련 합성(2D, 3D) 및 게임엔진 기반 개발 인력 등을 지속 충원하고자 합니다.

[표: 키컷 비주얼(KEYCUT Visual) 연도별 전문인력 충원 계획, 단위: 명]

분야	상세	2022년	2023년	2024년
초고화질 영상 영역	클라우드 기반 초고화질 영상 처리 시스템 개발 및 응용 인력	10	5	5
뉴미디어 콘텐츠 영역	합성(2D, 3D) 및 게임엔진 기반 작업 시스템 개발 및 콘텐츠 기획/제작 인력	10	5	5
합계	-	20	10	10

당사는 상기 연도별 신규 인력 충원 계획을 기준으로, 급여, 상여, 복리후생, 개인 전산장비 등을 포함한 총 신규인력 관련 비용을 1인당 1억원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3개년간 총 4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최근 글로벌 콘텐츠 유통 플랫폼사들은 1) 기존 유통 품목인 이미지, 영상 품목을 확대하거나, 2) 음원 및 3D 어셋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자 다양한 관련 업체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콘텐츠 유통 플랫폼사 Shutterstock사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콘텐츠 보유 및 유통사로의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표: Shutterstock의 타법인증권취득 내역, 단위: 백만달러, 출처: Bloomberg]

투자주체	투자시기	투자대상	거래규모	비고
Shutterstock	2021-01-26	TurboSquid Inc	77.3	3D 어셋 플랫폼 회사
	2020-11-11	Amper Music Inc	미공시	콘텐츠 제작용 음원 추천 회사
	2018-02-22	ZCool Network Technology Hong Kong Ltd	1.9	크리에이터 및 디자이너용 콘텐츠 공급 회사
	2017-06-27	Flashstock Technology Inc	51.2	이미지, 영상 유통 플랫폼 회사
	2015-01-15	Arbour Interactive Inc	32.0	콘텐츠용 음원 공급 회사

당사 역시 신규 사업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키컷스톡의 콘텐츠 제품군 확보와 고객 시장 확대를 위해 향후 경쟁력 있는 국내 및 해외 기업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표 기업군은 당사의 키컷스톡 플랫폼과 같이 영상, VFX Asset, 이미지, 음원 등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사이며, 추가적으로 당사가 스톡 콘텐츠 소유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스톡 콘텐츠 자체 제작 및 보유기업(Contents Provider)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의 투자 목표 기업군에 따른 당사의 타법인증권 취득 후 기대 효과를 기재하였습니다.

[표: 타법인증권 취득 관련 당사 목표 기업 유형]

영위 사업 유형	콘텐츠 종류	기대 효과
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또는 Contents Provider	신규 유형 콘텐츠 (VFX Asset, 음원, 이미지 등)	- 당사 콘텐츠 유통 영역의 효율적 확장 가능 - 이용자 수 추가 확보 및 당사가 기 유통 중인 영상 콘텐츠 간 교차 소비 유도 가능 - 현재 영상 분야에 활용 중인 당사 PIXELL 솔루션 적용 용이한 분야로서, 고품질 변환 콘텐츠(부가가치 제공) 유통 가능 - 해당 법인 자체 소유 콘텐츠 존재 시, 당사 자체 소유 콘텐츠 등 간 합성, 편집 및 상품화 과정을 거쳐 KEYCUT Original 콘텐츠 확충 및 수익성 제고 가능
	영상	- 고품질 영상 콘텐츠 및 이용자 수 추가 확보에 따라 영상 유통 분야 내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 - 해당 법인 자체 소유 콘텐츠 존재 시, 당사 자체 소유 콘텐츠 등 간 합성, 편집 및 상품화 과정을 거쳐 KEYCUT Original 콘텐츠 확충 및 수익성 제고 가능

본 스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사 중인 법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을 물색하고 투자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검토는 당사가 직면한 사업환경의 변화 및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인수/투자과정에서 인수/투자대상의 지분가치가 상승/하락하거나 당사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수/투자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사 및 검토 중인 법인 등과 협상이 결렬되어 투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자체적으로 ① 다양한 스톡 콘텐츠를 확보

(자체 매입 및 작가 간 유통 계약)하고 ② 전문 인력 충원을 통한 사업 및 서비스 기획,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 개발 고도화로 이용 편의성 증대 및 다양한 부가가치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③ 마케팅 강화를 통해 공급자층 및 수요자층을 확대시키는 등 스톡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내재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세부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스톡 콘텐츠 유통 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투자가 없을 시 자금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스톡 콘텐츠 매입	2,000	3,000	4,000	9,000
키컷스톡 사업 기획,콘텐츠 큐레이션및 플랫폼 개발 인력 충원	1,500	1,500	1,500	4,500
키컷스톡 공급자 및 수요자층 대상 마케팅	-	4,000	3,090	7,090
합계	3,500	8,500	8,590	20,590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타 콘텐츠 플랫폼사 또는 Contents Provider사 투자 등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스톡 콘텐츠를 당사 자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표: 키컷스톡 향후 3개년 콘텐츠 추가 매입 목표 금액, 단위: Clip,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책정 예산	2,000	3,000	4,000	9,000
매입 가능 콘텐츠 수	6,266	9,399	12,533	28,198

주1) 필요금액 산정시 Clip 당 매입금액은 현재까지 당사가 외부로부터 매입한 스톡 콘텐츠건들의 Clip당 평균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추가적으로 키컷스톡 사업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한 기획 인력, 콘텐츠 큐레이션 (Contents Curation) 인력 및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인력을 아래와 같이 충원할 예정입니다.

[표: 키컷스톡(KEYCUT Stock) 연도별 전문인력 충원 계획,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사업 및 서비스 기획	5	3	3	11
콘텐츠 큐레이션	3	6	6	15
플랫폼 개발	7	6	6	19
합계	15	15	15	45

당사는 상기 연도별 신규 인력 충원 계획을 기준으로 급여, 상여, 복리후생, 개인 전산장비 등을 포함한 총 신규인력 관련 비용을 1인당 1억원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3개년간 총 45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밖에, 당사는 키컷스톡 플랫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콘텐츠 공급자 및 수요자층 확대 등을 위해 2023~2024년(2개년)간 약 71억원의 자금을 마케팅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 기타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매년 미사용 잔여자금을 신용평가등급이 우량한 국내시중은행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MMF, MMDA 및 기타 금융상품 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수단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동 자금의 운용에 대한 사항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자금담당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상장 이후 제출할 사업보고서를 통해 그 내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포바이포"으로 표기하며, 영문명은 "4by4 Inc."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7년 08월 3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분	내용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12층, 13층, 14층
전화번호	02-511-4416
홈페이지	http://www.4by4inc.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발급번호 : 0010-2021-159565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기 업 명 : 주식회사 포바이포

사업자등록번호 : 712-87-00690 법인등록번호 : 110111-6501830

대표자명 : 윤준호

주 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4길 30 (신사동)

유효기간 : 2021-04-01 ~ 2022-03-31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위 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04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바. 벤처기업 해당 여부

제 20200105390 호

벤처기업확인서

업 체 명 : (주)포바이포
대 표 자 : 윤준호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4길 30 (신사동)
확 인 유 형 :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
평 가 기 관 : 기술보증기금
유 효 기 간 : 2020년05월04일 ~ 2022년05월03일

위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05월 04일

KIBO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자체 개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을 기반으로, 초고화질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주얼 콘텐츠 전문 솔루션 기업입니다.

당사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감콘텐츠 제작, 버추얼휴먼 기반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사업 영역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콘텐츠 유통 플랫폼 'KEYCUT STOCK'에서 유통하는 콘텐츠의 카테고리 및 고객군 확대를 통한 외형 확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Ⅱ. 사업의 내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정관상 주요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목적사업

영위하고 있는 목적사업	1. 영화 및 광고관련 영상물 제작업 1.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업 1. 영상물 기술 및 장비개발업 1. 디자인, 산업디자인업 1. 전시 및 행사대행업 1. 문화, 기타 영화의 제작 및 수출입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등 관련사항 1. 컨텐츠온라인정보제공업 1. 전자상거래업 1. 저작권대리중개업 1. 사진, 이미지, 솔루션 개발업 1. 광고업 1.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업 1. 인터넷, 온라인 광고대행 서비스업 1. 실내건축공사업 1. 디지털 콘텐츠 제작 플랫폼 사업 1.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1. 디지털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업 1. 인공지능(AI)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업 1. 캐릭터개발 및 디자인업 1. 캐릭터 라이센싱사업 1. 국내외 영화 및 기타 영상물, 방송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수출입업 1.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그와 관련된 유통, 서비스업 1.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시각 디자인업 1. 컴퓨터 그래픽 제작, 판매업 1.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업 1. 각호에 관련된 제조업 일체 1. 각호에 관련된 도매 및 소매업 일체 1.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수출입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영위하고 있지 않은 목적사업	1. 비디오 및 영상기기, 디스플레이 제조업 1. 기억장치,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1. 일반음식점업 1. 통신판매업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신논현타워) 12층, 13층, 14층에 위치해 있으며,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변경 주소	비고
2017.08.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12층(서초동)	설립
2017.10.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5, 403호(가산동, 가산비즈니스센터)	이전
2018.04.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906호(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 10차)	이전
2019.09.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4길 30 (신사동)	이전
2021.09.2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12층, 13층, 14층 (반포동, 신논현타워)	이전

나. 경영진의 주요한 변동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내이사는 총 3명, 사외이사는 총 1명, 감사는 총 1명입니다. 당사의 최근 5년간의 경영진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사임
		신규	재선임	
2017.08.29	발기인주주총회	대표이사 윤준호 사내이사 박상준 감사 한명수	-	-
2018.06.28	임시주주총회	사내이사 이진아	-	사내이사 박상준
2019.02.12	임시주주총회	사내이사 오준명 사내이사 이용길	-	사내이사 이진아
2020.03.30	정기주주총회	-	감사 한명수	-
2020.08.14	임시주주총회	-	대표이사 윤준호	-
2020.11.09	이사회	-	-	감사 한명수
2021.03.31	정기주주총회	감사 이정인 사외이사 조재문	-	-
2022.03.21	정기주주총회	사내이사 김일균 사내이사 정민희	-	사내이사 오준명 사내이사 이용길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 자	주 요 사 항
2017.08.	주식회사 포바이포 설립
2017.10.	본사 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5, 403호
2018.04.	본사 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906호
2018.05.	벤처기업 인증
2018.12.	LG전자 IFA(유럽 가전 전시회) 세계 최초 8K OLED 데모 영상 제작
2019.03.	1차 무상증자 실시 (1주당 3주)
2019.05.	시연용 텔레비전 저장매체 관련 특허 등록 (10-1981033)
2019.07.	Series-A Funding (전환사채 20억원)
2019.09.	본사 확장 이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길 30
2019.10.	기업부설연구소 및 화질연구 연구소 설립 및 인증 (과기부)
2019.11.	LG전자, LG디스플레이 공식 콘텐츠 제작 협력사 선정
2019.12.	화질개선 인공지능 기반 영상출력 특허 등록 (10-2054453) 초고해상도 영상 콘텐츠의 화질 개선 특허 등록 (10-2058355)
2020.01.	미국 가전사 VIZIO CES OLED 데모영상 제작
2020.06.	유심 탑재 저장매체 관련 특허 등록 (10-2123312)
2020.07.	기술보증기금 프론티어 벤처기업 선정
2020.08.	Series-B Funding (상환전환우선주 51억원)
2020.09.	고화질 영상 플랫폼 키컷스톡 (Keycut Stock) 런칭

2020.10.	디지털 영상 선예도 강화 방법 특허 등록 (10-2164998) 제15회 과기부 디지털 이노베이션 (IT/라이선스 플랫폼 부문) 대상 이노비즈 AA등급 인증
2020.12.	디지털 영상 노이즈 제거 방법 특허 등록 (10-2194447) 메인비즈 (Main-Biz) 인증
2021.03.	제7회 대한민국 산업대상 기술혁신대상 (비주얼테크 부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시각 및 지능 시스템 연구실' 산학협력 협약
2021.04.	입력영상 전처리를 이용한 화질보정방법 특허 등록 (10-2245835) 중국 염성홀랜드빌리지 XR 실감콘텐츠 제작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안심 기업 지정
2021.05.	중소벤처기업부 '아기 유니콘' 선정
2021.06.	대표주관계약 체결 (미래에셋증권)
2021.07.	제12회 소비자 선정 품질만족대상 (메타버스/실감콘텐츠 기술분야 부문) 국내 콘텐츠사 최초 8K 협회 합류
2021.08.	2차 무상증자 실시 (1주당 9주)
2021.09.	본사 이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12~14층 (신논현타워) 국내 최초 자이언트 스크린 시네마 협회 (Giant Screen Cinema Association, GSCA) 가입 Pre-IPO Funding (보통주 105억원)
2021.10.	돌비 비전(Dolby Vision) 인증 취득
2021.11.	추가 Pre-IPO Funding (보통주 85억원)
2021.12.	제58회 무역의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2.01.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2022.03.	제8회 대한민국 산업대상 기술혁신대상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부문)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

(단위 : 주, 원)

종류	구분	2021년말 (제5기)	2020년말 (제4기)	2019년말 (제3기)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8,580,985	456,000	456,000
	액면금액	500	500	500
	자본금	4,290,492,500	228,000,000	228,0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114,601	-
	액면금액	-	500	-
	자본금	-	57,300,500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4,290,492,500	285,300,500	228,000,000

주1) 상기 우선주는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주2) 2017.11.14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처리에 따라, 재무제표상 자본금 금액과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금액(주식수x액면가)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표 내용은 재무제표상 자본금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전환 또는 미상환된 전환사채가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포함)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된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포함)가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8,580,985주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8,580,985	342,627	8,923,612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342,627	342,627	-
세부 감소 내역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55,000	55,000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4. 기타	-	287,627	287,627	보통주 전환
Ⅳ. 발행주식의 총수(Ⅱ-Ⅲ)		8,580,985	-	8,580,985	-
Ⅴ. 자기주식수		184,967	-	184,967	-
Ⅵ. 유통주식수(Ⅳ-Ⅴ)		8,396,018	-	8,396,018	-

주1) 당사가 현재까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총 342,627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상환 및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 수량	변동 수량			기말 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가능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184,967	-	-	-	184,967	(주1), (주2)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184,967	-	-	-	184,967	(주1), (주2)
			우선주	-	-	-	-	-	-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	보통주	-	-	-	-	-	-

	취득	물량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184,967	-	-	-	184,967	(주1), (주2)
			우선주	-	-	-	-	-	-

주1) 당사는 2020년 7월 14일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상법 제462조제1항 및 상법 제341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550,000주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15일 및 2021년 11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각각 자기주식 93,300주, 271,733주를 처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자기주식수는 184,967주입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자기주식수 184,967주는 금번 공모 시 전량 구주매출 예정입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1년 9월 29일(제4기 임시주주총회) 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8.01.26	제1기 임시주주총회	- 제2조(목적)	-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신규 사업목적 추가 (비디오 및 영상기기, 디스플레이 제조업 등)
2019.04.16	제2기 임시주주총회	- 제8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 제9조(신주인수권) -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 제63조(주식의 소각)	- 종류주식 발행에 따른 조문 변경 - 종류주식 발행에 따른 조문 변경 - 조문 정비 (일반) - 상법 및 표준정관 반영
2019.07.03	제2기 임시주주총회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 제23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24조(신주인수권부사채)	-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수정 -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및 발행조건 수정 -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및 발행조건 수정
2019.11.04	제2기 임시주주총회	- 제2조(목적)	- 사내 복리후생을 위한 신규 사업목적 추가 (일반음식점업)
2020.01.14	제3기 임시주주총회	- 제2조(목적)	-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신규 사업목적 추가 (사진, 이미지, 솔루션 개발업 등)
2020.08.14	제3기 임시주주총회	- 제2조(목적)	-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신규 사업목적 추가 (실내건축공사업)
2021.03.31	제4기 정기주주총회	- 제2조(목적)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신규 사업목적 추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 플랫폼 사업 등)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및 조정 근거 마련

2021.09.29	제4기 임시주주총회	- 제4조(공고방법) -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 제8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9조(신주인수권)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 제10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17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17조의3(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 제28조(의결권의 대리 행사) - 제31조(이사의 수) -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 제54조(중간배당)	- 상법 개정사항 및 코스닥 상장을 위한 코스닥협회 표준정관 반영

II. 사업의 내용

[용어 안내표]

용어	용어 설명
실감형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New Media Contents)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문, TV와 같은 기존 정보 수단을 대신해 새롭게 등장한 정보 매체를 뉴미디어라 하며, 뉴미디어 콘텐츠는 해당 매체에 활용되는 콘텐츠를 총칭
화소 (Pixel)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해상도 (Resolution)	화면 또는 인쇄 등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면이 얼마나 많은 수의 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나타냄.
올레드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빛을 내는 층이 전류에 반응하여 빛을 발산하는 유기 화합물의 필름으로 이루어진 박막 발광 다이오드(LED)로, 액정 디스플레이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음
4K 콘텐츠	화면 비율 16:9, 해상도 가로 3,840×세로 2,160, 화소 수 829만 4,400개에 해당하는 영상 품질 규격을 충족하는 콘텐츠
8K 콘텐츠	화면 비율 16:9, 해상도 가로 7,680×세로 4,320, 화소 수 3317만 7,600개에 해당하는 영상 품질 규격을 충족하는 콘텐츠. 4K 콘텐츠 대비 4배 높은 해상도를 보이며, 현실과 동일한 수준의 깊이감 및 현장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 광고로, 공공장소 및 상업공간 등에 설치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오락, 광고 등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복합 정보매체
미디어 어트랙션 (Media Attraction)	미디어(Media)와 테마파크 놀이기구(Attraction)의 합성어로, 플라잉 씨어터 등 테마파크 내 초고화질 실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대형 놀이기구를 의미
VFX (Virtual Effects)	영상물에서 컴퓨터 그래픽 또는 아날로그 테크닉을 써서 실재하지 않은 시각효과를 내는 기술의 총칭
VFX Asset	컴퓨터그래픽스, 시각특수효과 등의 제작 기법을 활용해 가상 공간에 사전 제작된 오브젝트, 캐릭터, 특수효과 등의 소스
VR (Virtual Reality)	가상을 뜻하는 Virtual과 현실을 뜻하는 Reality의 합성어. 가상현실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
AR (Argu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XR (eXtended Reality)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초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를 가리킴
버추얼 휴먼 (Virtual Human)	CG, VFX 기술을 통해 생성된 가상의 디지털 인물로서, 실제 사람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임

MCN (Multi Channel Network)	1인 혹은 중소 콘텐츠 창작자들과 제휴해 마케팅, 저작권 관리, 콘텐츠 유통 등을 지원, 관리하는 사업. 일반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기획사를 지칭
리마스터링 (Remastering)	예전 매체를 현시대에 맞는 화질 또는 음질로 보정 또는 다시 작업해 재구성하는 작업을 총칭
스톡 영상	스토리가 없는 비디오 영상으로,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 제작자들의 영상 제작 및 편집과 광고, 마케팅 캠페인 등에 주로 사용되는 영상 촬영소스를 의미
B2B (Business-to-Business)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
B2C (Business-to-Customer)	기업과 개인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
선예도 (Sharpness)	영상 및 이미지에서 대상의 각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대상의 판별이 용이한 정도를 말하며, 선예도가 높을 수록 영상 및 이미지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남
노이즈 (Noise)	영상의 처리 과정, 데이터의 전송 및 저장 과정에서 외부 환경조건과 같은 다양한 원인과 시스템 내부의 간섭으로 인하여 디지털 영상을 훼손시키는 불필요한 데이터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컴퓨터를 인간처럼 학습시켜 스스로 규칙(알고리즘)을 형성하게 하기 위한 기계 학습 방법으로 주로 통계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결과를 도출
딥러닝 (Deep Learning)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으로,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구축한 기계 학습 기술.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해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학습.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DNN)	복잡하고 다양한 비선형적 관계의 학습에 활용되는 인공 신경망의 한 종류.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다중의 은닉층을 포함하여 하위 계층들의 특징 학습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알고리즘 대비 효율적인 모델링 가능
훈련 데이터 (Training Data Set)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 양질의 다수 훈련데이터를 적용할수록 알고리즘의 고도화 가능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	당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우수한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인지적 화질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모델로, 저품질/저화질의 미디어 콘텐츠 투입 시 자동적으로 콘텐츠 별 이상적인 인지적 화질을 파악하여 짧은 시간 내 화질 개선 작업을 거쳐 고품질/고화질 미디어 콘텐츠로 전환해주는 솔루션

1. 사업의 개요

주식회사 포바이포는 자체 개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PIXELL")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주얼 콘텐츠 전문 솔루션 기업입니다.

당사는 독보적인 비주얼 구현 역량과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기반으로 높은 실감도를 필요로 하는 초고화질콘텐츠나 뉴미디어 실감형 콘텐츠를 다수 제작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작 역량에 더해 수년간 축적해온 다양한 화질 개선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사만의 화질개선 딥러닝 솔루션 PIXELL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인 고

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당사는 차세대 콘텐츠 제작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실감화 역량을 내재화하고 PIXELL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버추얼 휴먼이나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실감화로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직접 촬영을 수행하는 기존 영상제작 방식을 넘어 영상 및 VFX Asset을 구매 후 합성, 보정 공정을 거쳐 영상을 제작하는 Full-Digital 기반 제작방식으로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전문 유통 플랫폼 KEYCUT STOCK을 런칭하였으며 스톡 시장에서 세계 최다 8K 콘텐츠를 보유한 영상 전문 플랫폼으로의 포지션을 공고히 하고자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사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II 사업의 내용 - 7. 기타 참고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품목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콘텐츠 제작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20,679	92.8%	12,904	92.2%	10,645	100.0%
콘텐츠 유통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1,597	7.2%	1,089	7.8%	-	-
합계		22,276	100.0%	13,993	100.0%	10,645	100.0%

나. 주요 제품 가격변동 추이

당사가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인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에서 주요 제품의 가격은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고객사와의 계약금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계약금액은 당사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규모, 제작 기간, 투입 예정 원가 등에 따라 각 프로젝트별로 상이하며, 금액의 추이가 일관성이 없고 그 또한 유의미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독보적인 비주얼 구현 역량을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 내에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작업 효율화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초고화질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등의 비주얼 콘텐츠 제작과 초고화질 영상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사 인력과 SW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원재료의 매입이나 별도의 물리적인 생산설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주요 원재료와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사의 2021년말 기준 유·무형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자산별	기초 가액	당기증가		대체	감가상각비	기말 가액	비 고
			증가	감소				
유형 자산	비품	1,580,325	1,881,611	(1,009)	789,881	(490,466)	3,760,342	-
	시설장치	89,020	606,138	-	41,900	(153,070)	583,988	-
	건설중인자산	-	1,786,531	-	(831,781)	-	954,750	-
무형 자산	소프트웨어	22,781	10,756	-	-	(7,188)	26,349	-
	특허권	14,542	25,547	-	-	(4,890)	35,199	-
	저작권	2,193,958	29,240	-	-	(237,987)	1,985,211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유형	품 목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콘텐츠 제작	서비스 매출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수출	4,828	412	173
			내수	15,851	12,492	10,473
			합계	20,679	12,904	10,645
콘텐츠 유통	플랫폼 매출	영상 콘텐츠 플랫폼 유통	수출	10	13	-
			내수	1,587	1,076	-
			합계	1,597	1,089	-
합 계			수출	4,838	425	173
			내수	17,438	13,568	10,473
			합계	22,276	13,993	10,645

나. 판매 경로, 판매방법 및 주요 매출처 등

(1) 판매조직 및 경로

당사의 주요 사업은 콘텐츠 제작 및 실감화로, 최종 결과물은 주로 영상의 형태로 송출됩니다. 당사의 클라이언트는 일반 대중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영상을 송출하기 원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나 일반 기업, 테마파크 사업체, 정부/지자체 등이기에 통상적으로 당사의 과거 작업 결과물이나 제안하는 영상의 주제/형태 등을 보고 제작비 예산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콘텐츠 실감화를 담당할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영업활동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 당사의 기술수준과 기획안을 제안하고 진행하기에 별도의 판매 조직이나 정해진 경로 없이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활동은 당사의 팀장 이상의 인력 및 콘텐츠 제작 기획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기존 고객사에 대한 영업 이외에도 콘텐츠의 실감화를 필요로 할 다양한 산업군의 신규 매출처에 대한 영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고화질 영상 유통 플랫폼인 KEYCUT STOCK 역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상을 유통/판매하는 것으로, 별도 조직이나 경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사 온라인 플랫폼 내 구매 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유통/판매합니다.

(2) 주요 거래처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글로벌 가전사 및 디스플레이사와 제일기획, HS애드, 대홍기획 등의 광고대행사, 글로벌 테마파크 운영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 당사는 초고화질 콘텐츠를 공급하던 전통적인 거래처에서 홈쇼핑사, 엔터테인먼트사, 스포츠 레저 콘텐츠 제공 업체 등으로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판매방법 및 조건

- 판매 방법

당사의 초고화질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영화/드라마 후반 제작 등은 보통 의뢰를 통한 고객사와의 수의 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제작이 개시됩니다. 최근 당사는 기존 제작을 주력하던 고화질 콘텐츠 외에 버추얼 휴먼, 대형 미디어 월 등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거래처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함에 따라 당사가 직접 영업하여 수주하는 프로젝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판매 조건

판매 조건은 거래처나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선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되어 현금이 지급됩니다. 잔금의 경우 완성된 제작물에 대하여 거래처의 검수가 완료될 시 통상 한달 이내에 잔금지급이 완료됩니다. 다만, 프로젝트 별 자세한 조건은 상이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3) 판매전략

당사는 글로벌 가전사 및 디스플레이사, 광고대행사 등의 주요 거래처를 대상으로 꾸준히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공급함에 따라 거래처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서비스하는 프로젝트 수와 규모의 수준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 거래처 외에도 콘텐츠의 실감화가 필요할 수 있는 홈쇼핑사, 엔터테인먼트사 등 다양한 산업군의 거래처로 매출을 확대하고자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 서비스 품목별 판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품목	판매전략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1. 기존 고객사와의 relationship 강화를 통한 수익 유지 2. 신규 고객사에의 적극적인 마케팅 및 및 콘텐츠 수요처 발굴을 통해 매출 확대 3. VFX 전문 인력 추가 영입을 통한 제작 capacity 확충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1. 기존 고객사와의 relationship 강화를 통한 수익 유지, 기존 고객사에 현재 제공중인 서비스 외에도 콘텐츠 실감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 적극적 발굴 2. 홈쇼핑사, 엔터테인먼트사, 스포츠 레저 콘텐츠사, 게임사 등 다양한 산업군 내 고객사로의 적극적인 마케팅 개진을 통한 신규 매출원 확보
영상 유통 플랫폼 운영	1. 기존 B2B 고객사와의 네트워크 강화 2. 유수 아티스트들에게의 콘텐츠 큐레이션 활성화로 플랫폼 내 콘텐츠 공급 확대 3. 신규 영상 콘텐츠 제작사 등에의 적극적인 B2B 마케팅을 통한 플랫폼 유입사 확장 4. 퍼포먼스 마케팅 확대, 플랫폼 생태계 확장을 통해 B2C로의 고객군 확대

다. 수주 상황

수주잔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거래 상대방(글로벌 가전사, 광고대행사 등)과의 영업과 관련된 기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고객사의 비공개 신제품 관련 프로젝트 등)

이에 증권신고서에 수주계약 현황을 기재하여야 하나 상기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추후 언론과의 인터뷰, 공시 등의 기타의 방법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당사의 CFO 이하 경영전략본부 및 경영관리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전략본부 및 경영관리본부는 영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업하에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과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을 문서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 2021년 말 및 2020년 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부터 12개월 간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연도 말		2020연도 말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이자비용	(19,000)	19,000	(13,000)	13,000

(2) 환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회사는 기능통화인 원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및 구매에 대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의 금융상품을 통한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인 위험회피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율변동위험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및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21연도 말		2020연도 말	

	10%상승시	10%하락시	10%상승시	10%하락시
USD	53,813	(53,813)	34,219	(34,219)
EUR	450	(450)	2,194	(2,194)
JPY	-	-	241	(241)
CNY	256,890	(256,890)	-	-
합계	311,153	(311,153)	36,654	(36,654)

(3) 가격위험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율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가격위험과 관련하여 중대하게 노출된 위험이 없어 해당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신용위험

당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21연도 말	2020연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4,443,256	4,536,485
기타금융자산	60,373	60,050
매출채권,계약자산 및 기타채권	8,283,303	4,223,389
합 계	32,787,000	8,819,924

다. 유동성위험

당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6개월이내	6개월~12개월	1년 이상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526,876	1,526,876	1,526,876	-	-
리스부채	1,335,373	1,375,212	145,000	383,044	847,168
차입금	1,900,000	1,930,899	1,416,941	8,375	505,583

합계	4,762,249	4,832,987	3,088,817	391,419	1,352,751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6개월이내	6개월~12개월	1년 이상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708,541	708,541	708,541	-	-
리스부채	242,641	245,552	139,611	95,611	10,330
차입금	1,500,000	1,524,938	1,014,021	6,550	504,367
전환사채	1,847,332	2,185,454	-	-	2,185,454
합계	4,298,514	4,664,485	1,862,173	102,161	2,700,151

라. 자본위험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부채총계	7,953,909	11,308,691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24,443,256)	(4,536,485)
순부채	-	6,772,206
자본총계	36,504,089	3,571,483
순부채비율	-	189.6%

마.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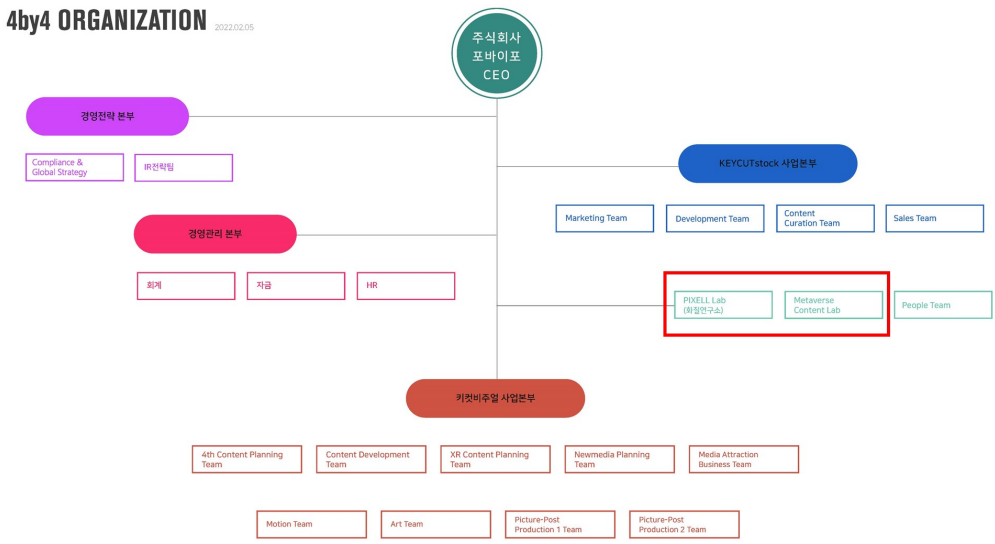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조직

당사는 초고화질 콘텐츠 및 뉴미디어 콘텐츠 등 실감화를 요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2019년 화질연구 기업부설연구소 PIXELL Lab과 기업부설연구소 Metaverse Lab을 설립하였으며, 콘텐츠 시각적 실감화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화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습니다.



(2) 연구개발비용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21연도 (제5기)	2020연도 (제4기)	2019연도 (제3기)	2018연도 (제2기)
자산	원재료비	-	-	-	-

처리	인건비	-	-	-	-
	감가상각비	-	-	-	-
	위탁용역비	-	-	-	-
	기타 경비	-	-	-	-
	소 계	-	-	-	-
비용 처리	영업비용 주)	809,055	339,155	233,003	160,482
합 계 (영업수익 대비 비율)		809,055	339,155	233,003	160,482
		3.63%	2.42%	2.19%	2.58%

주1) 당사 재무제표 상 경상연구개발비 금액 외 연구개발과 관련한 급상여, 지급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연구개발실적

당사는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콘텐츠 실감화를 위한 딥러닝 화질 개선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고해상도 영상 콘텐츠 생산 및 구현을 위한 높은 수준의 기술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관성 있는 연구 방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당사에서 진행해온 주요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제명	초고해상 화질개선 공정 개발
연구기관	화질 연구 기업부설연구소 (자체 개발)
기간	2018.04 ~ 2020.11
연구목표	화질 개선 및 복원 공정에 대한 표준화를 통한 작업 효율 극대화
연구 결과	- VFX 기술 기반 화질 개선 및 복원 공정 표준 정립 - 글로벌 가전사의 국제 전시 참가용 콘텐츠 제작 경쟁 입찰, 납품 과정에 해당 공정 반영 - 특허 등록 : 초고해상도 영상 콘텐츠의 화질 개선 방법 (등록번호: 10-2058355) - 특허 등록: 디지털 영상 노이즈 제거 방법 (등록번호: 10-2194447) - 특허 등록: 디지털 영상 선예도 강화 방법 (등록번호: 10-2164998)

과제명	적응형 자동 화질개선 기술 개발
연구기관	화질 연구 기업부설연구소 (자체 개발)
기간	2020.11 ~ 2021.10
연구목표	적응형 자동 화질개선 기술 개발을 통한 작업 인력/시간 절감

연구 결과	- 영상처리 고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채도/명암비 자동 보정 알고리즘 개발 - 화질 보정 작업용 상용 툴에 당사 전용 plug-in 화 - 당사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플랫폼 KEYCUTSTOCK 등의 작업 공정에 반영 - 공정 도입 전/후 해당월 평균 생산 효율 향상 효과 - 특허 등록: 입력영상 전처리를 이용한 화질보정방법 (등록번호:10-2245835)

과제명	학습형 자동 화질개선 기술 개발
연구기관	화질 연구 기업부설연구소 (자체 개발)
기간	2021.05 ~ 현재
연구목표	학습형 자동 화질개선 기술 개발을 통한 작업 인력/시간 추가 절감
연구 결과	- 딥러닝 기반 자동 화질 개선 알고리즘 개발 - 개선 대상 인자로, 잡음/선예도를 추가하여, 당사에서 직접 DB를 생산하는, 당사 화질 개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지도 학습으로 훈련된 알고리즘 개발. 현재 적용가능한 시스템 개발 및 성능 고도화 단계 진행 중 - 공인 기관 중간 점검 결과 개선 품질 기대 수준 달성 - 특허 등록: 선예도 개선을 위한 심층 기울기 사전정보기반 L0 스무딩 방법 (등록번호:10-2342940)

과제명	에스디(SD: standard definition)급 저해상 구작(old-fashioned) 영상의 초해상화 (super resolution) 및 현대화 원천기술 개발
연구기관	화질 연구 기업부설연구소 (자체 개발)
기간	2021.04 ~ 현재
연구목표	학습 기반 업스케일링 기술로 기존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자동화 솔루션 적용
연구 결과	- 전처리 및 후처리를 배제한 초해상화 기법 개발 - 얼굴 보정 (face enhancement)을 적용한 초해상화 기법 개발 - 디인터레이스 (deinterlace) 방법을 적용한 초해상화 기법 개발

7. 기타 참고사항

가. 상표관리정책 및 고객관리 정책 등이 사업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소유한 지적재산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등록번호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출원국
특허권	정지장면의 연속프레임 영상에 기반한 영상분할장치 및 방법	10-1223046	당사	11.02.08	13.01.10	대한민국
	개선된 영상 생성 모델과 적응적 필터를 이용한 컬러 영상 보정 방법	10-1242069		11.07.04	13.03.05	
	변형된 영상 생성 모델을 이용한 컬러 영상 보정방법	10-1242070		11.07.04	13.03.05	
	시연 및 홍보용 텔레비전과 영상 제공용 유에스비 메모리 간의 잠금 장치	10-1981033		18.08.22	19.05.16	
	화질 개선된 인공지능 기반 영상 출력 방법	10-2054453		19.04.03	19.12.04	
	초고해상도 영상 콘텐츠의 화질 개선 방법	10-2058355		19.04.19	19.12.17	
	유심 탑재 저장매체	10-2123312		19.04.03	20.06.10	
	디지털 영상 선예도 강화 방법	10-2164998		19.04.25	20.10.06	
	디지털 영상 노이즈 제거 방법	10-2194447		19.04.25	20.12.17	
	입력영상 전처리를 이용한 화질보정방법	10-2245835		20.07.31	21.04.22	
	화질개선 초해상도 심층신경망 처리 방법	-		21.02.05	-.	
	선예도 개선을 위한 심층 기울기 사전정보기반 L0 스무딩 방법	10-2342940		21.06.23	21.12.21	
상표권	주식회사 포바이포 상표-영문	40-1474848		18.08.29	19.05.02	
	주식회사 포바이포 상표-한글	40-1474847		18.08.29	19.05.02	
	주식회사 포바이포 38류 상표 - 한글	40-1499884		18.09.06	19.07.15	
	주식회사 포바이포 38류 상표 - 영문	40-1499891		18.09.06	19.07.15	
	MATCH 상표- 로고	40-1503829		18.06.28	19.07.26	
	MATCH 상표- 로고(2)	40-150383		18.06.28	19.07.26	
	MATCH 상표- 로고(3)	40-1503832		18.06.28	19.07.26	
	국내 상표(KEYCUT)beta	40-1711013		20.04.14	21.04.02	
	K로고	40-1758146		20.07.07	21.07.30	
	KEYCUTstock로고	40-175815		20.07.07	21.07.30	
	KEYCUTstock	40-1758145		20.07.07	21.07.30	
	KEYCUT STUDIO	-		20.11.16	-	
	KEYCUT VISUAL	-		20.11.16	-	
	키컷 비주얼	-		20.11.16	-	
	키컷 스튜디오	-		20.11.16	-	
	키컷스톡	-		20.11.16	-	

다.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1)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광고 성격을 띄는 옥외 디스플레이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는 간판으로 분류되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도시와 거리의 경관을 해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 효과로 인해 광고의 크기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등은 규제의 주요 대상이었고, 특정 기준을 벗어나는 광고물은 설치가 불가하였습니다. 반면 미국 타임스퀘어, 일본의 도톤보리 등 유명 관광지에서는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였고, 광고 자체가 해당 도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랜드마크로 기능하여 관광객 모객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5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를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만들고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지역으로 선정,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초대형, 고화질의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삼성동 일대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된 이후, 글로벌 기업의 제품 홍보 영상 및 K-POP 관련 영상 등을 상영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실감형 초고화질 VFX 콘텐츠가 다수 상영되며 단순 광고를 넘어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20년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10개 지자체에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을 위해 각 지자체 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사업 결과를 분석해 다양한 옥외광고 사업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VFX 콘텐츠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VFX 기반 후반제작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5G 네트워크 기술 및 VR/AR/XR 등 4차 산업 혁명 기반 기술이 디지털 콘텐츠와 융합되기 시작하며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실감형 콘텐츠 시장은 2022년 현재에도 여전히 개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시장으로, 콘텐츠의 구현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법제적 틀이 기존 콘텐츠 제작방식에 근간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산업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10월 31일 아래와 같이 9개의 실감형 콘텐츠 규제 혁신방안을 배포하였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규제 혁신방안,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분류	세부 내용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도 탑재 허용
영화비디오법	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관광진흥법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행정조치	VR시뮬레이터 '전기용품 안전확인' 기준 마련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플랫폼별(PC게임/모바일게임 등) 게임등급의 중복심의 개선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복합장르 게임 등급심의에 따른 수수료 기준 별도 마련
관광진흥법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에 안전성 검사 대상 VR시뮬레이터 설치 허용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동일 기종 VR시뮬레이터에 대한 확인검사 간소화
행정조치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이처럼 발표된 내용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신설 및 강화 기조가 아닌,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장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혁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XR, 5G 등 향후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조를 향후에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규제로 인해 당사의 사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정부 규제의 준수 여부 및 환경개선설비에 대한 중요한 자본지출 계획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마.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산업의 개요 및 특성

(가) 주요 목표 시장

당사는 VFX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인 KEYCUT VISUAL과 영상 콘텐츠 유통 사업인 KEYCUT STOCK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VFX(Visual Effects)란 시각적 특수효과를 의미하는 용어로, 실사 촬영이 어려운 조건에 놓인 영상 제작 단계에서 이미지 변경, 생성 또는 합성 등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실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사실적인 캐릭터 및 환경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글로벌 VFX 시장은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전통적 미디어의 주도 하에 발전해왔으나, 최근 네트워크의 발전 및 실감형 콘텐츠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초대형 오프라인 디지털 사이니지, 다면 XR 콘텐츠, 미디어 어트랙션 등 뉴미디어 콘텐츠 영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급성장하는 VFX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자 기존 VFX 관련 업체들과 같이 CG 등을 활용한 시각적 특수효과에 더해 '화질 개선' 공정을 추가하여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주요 목표 시장은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에 따라 초고화질 콘텐츠(고화질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글로벌 VFX 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그리고 스톡 영상 시장으로 분화됩니다.

[㈜포바이포 서비스 품목별 추이 및 목표시장]

구 분		목표시장
콘텐츠 제작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고화질 콘텐츠 시장 (고화질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화/드라마 후반 제작	글로벌 VFX 시장
콘텐츠 유통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스톡 영상 시장

(나) 시장의 특성

당사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수요는 상기와 같이 글로벌 VFX 시장 및 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 그리고 스톡 영상 시장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의 대형화, 고도화로 고화질 영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현실감, 몰입감 있는 고화질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VFX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목표시장인 글로벌 VFX 시장 및 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 스톡 영상 시장은 모두 실감형 콘텐츠로 발전한 콘텐츠 전반의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시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 자원 및 기술력의 중요성

콘텐츠 제작은 니즈에 맞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감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해당 사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또한 고화질/실감 콘텐츠 후반제작에 특화되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하는 실감형 콘텐츠 제작 서비스는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이 단기간에 개발 및 시행하기 어려운 서비스이며, 이는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COVID-19 로 촉발된 디지털, 비대면 전환 기조

2020년 발생한 COVID-19의 확산은 비대면 콘텐츠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실감형 콘텐츠는 일반적인 온라인 환경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현장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교육, 콘서트,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언택트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시대의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기술과 콘텐츠의 수요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활동 등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가상 공간 플랫폼을 이용한 행사와 활동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실과 동일한 체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상세계 환경에서는 기존 디지털 콘텐츠 시장보다 더욱 많은 고화질 실감형 콘텐츠가 제공되고 소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콘텐츠 제작 방식의 변화

스마트기기의 대중화, 통신기술의 발달, 플랫폼의 확산은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물며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함과 동시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플랫폼의 증가는 개별 플랫폼마다 차별화된 특성을 지님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들의 유통에 기여하였습니다. 콘텐츠 공급자 역시 방송사, 영화사와 같이 대형 CP(Contents Provider)사들을 넘어 개인 크리에이터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촬영에 의존하던 제작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클립형 스톡) 영상, 가상 스튜디오, 버츄얼 휴먼 AI 활용 등으로 콘텐츠 제작 방식에 변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공급자의 경계가 광범위해지고 제작 방식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개인도 콘텐츠를 소비하여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대/중/소형의 제작사부터 개인 제작자의 영역까지 확장되었고,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작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허물어져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수요자 규모가 증가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유관 산업과의 연관성

콘텐츠 시장의 지향점인 실감형 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ICT) 을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이며, 콘텐츠가 사용될 수 있는 인프라 및 전송이 가능한 통신 기술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적입니다.

VR(가상현실)은 디바이스 착용을 통해 360도 영상을 바탕으로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끔 하는 기술이며, AR(증강현실)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 환경에 가상 이미지를 덧입혀 정보 및 콘텐츠를 표시하는 기술입니다. XR(확장현실) 기술은 VR 및 AR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XR 기술이 상용화 됨에 따라 콘텐츠의 활용범위는 현실 뿐 아니라 가상현실

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VR/AR/XR 기술의 발전은 사용자에게 가상현실에서 현실과 동일한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로의 콘텐츠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VFX 기술이 적용된 현실감 있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초고화질/실감형 콘텐츠는 기존 저화질 콘텐츠 대비 제작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 작업이 요구됩니다. 5G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실감형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제작을 용이하게 했으며, 제작된 대용량 콘텐츠의 실시간 전송 또한 원활하게 하여 스마트폰 등 무선 환경에서의 고화질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5G 기술의 발전은 실감형 콘텐츠 기술의 발전 및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실감형 콘텐츠의 사용처가 다양화됨에 따라 5G 네트워크 구축 여부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고화질 콘텐츠 시장

당사의 주 매출원인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서비스는 고화질 콘텐츠 시장에 속합니다. 고화질 콘텐츠만의 시장 규모는 추산이 불가능하나, 고화질/고실감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이나,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1)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은 가정 내 대형 디스플레이 TV가 상용화되고 기존 고화질로 분류되던 4K 해상도 이상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확산됨에 따라 점차 시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홈엔터테인먼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OTT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대형 디스플레이 TV 출하량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글로벌 TV 시장에서 70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의 비중은 아래와 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글로벌 TV 시장 내 70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 비중, 금액 기준, 출처: Om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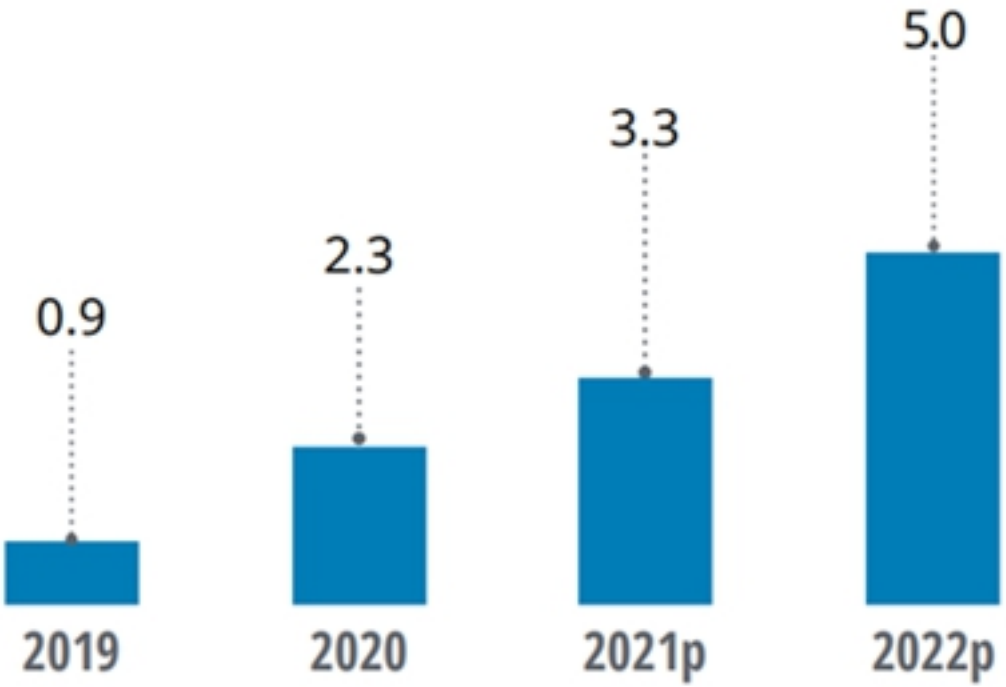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
비중 (%)	10.2%	14.4%	18.2%	20.6%

4K/8K급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8K란 고화질 디지털 비디오 포맷의 한 종류로, 화면 비율 16:9, 해상도 가로 7,680×세로 4,320, 화소 수 3317만 7,600개에 해당하는 영상 품질 규격을 뜻합니다. 표준 수평 시야각은 100도이며 표준 시청 거리는 0.75H이고 화소당 비트 수는 24~36비트를 사용합니다. 현재까지는 4K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으나 실체감, 무게감 등을 화면을 통해 체감할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선명한 색을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TV 제조사들이 8K TV를 출시하면서 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다양한 글로벌 가전사, 플랫폼사, 콘텐츠 전문 업체들 또한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8K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나소닉(일본), 하이센스/TCL(중국), AUO(대만) 등이 8K 화질 콘텐츠 확보와 산업 표준 제정을 위해 2019년 1월 열린 'CES 2019'에서 8K 협회를 출범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8K TV 인증 마케팅을 시작하여 글로벌 제조사가 생산한 총 71종 TV가 8K 협회 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협회는 8K 제품이 갖춰야 할 규격과 성능을 정의하고 이를 충족하는 제품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며, 협회가 정한 기준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사양, 8K 영상 신호, 입력단자 규격, 미디어 포맷 등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8K 기준 디스플레이 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더 발전할 전망입니다.

Deloitte의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2021'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8K 디스플레이 패널 매출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며 2021년 기준 약 33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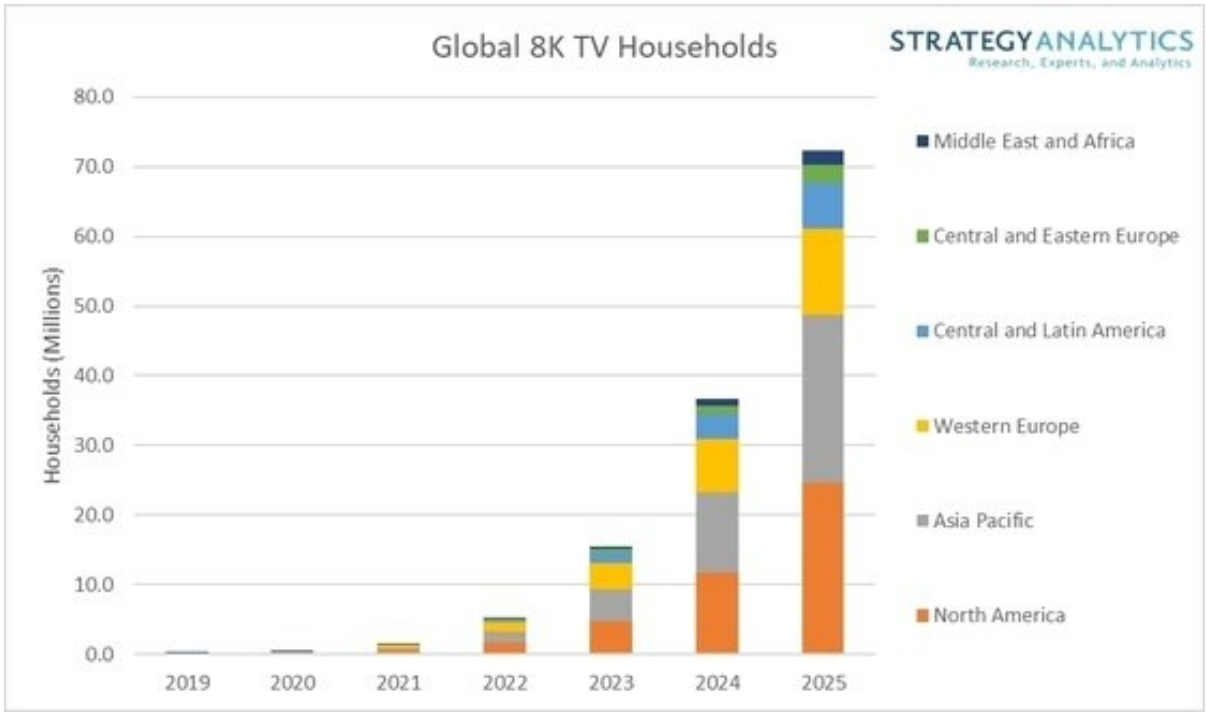
[그림: Global Revenues from 8K Panels , 단위: 십억달러, 출처: Deloitte TMT Predictions]



8K 디스플레이 패널 전체 수익 전망

Strategyanalytics 의 'UHD 해상도 TV 디스플레이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글로벌 8K TV 보급량 또한 7,2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림: Global 8K TV Households, 단위: 백만 가구, 출처: Strategyanalytics]



이처럼 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은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초고화질, 나아가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2)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란 신호를 의미하는 사이니지(Signage) 와 디지털(Digital) 의 합성어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스플레이 매체를 통해 정보 및 광고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소자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해상도 콘텐츠 표현능력의 증가, 옥외광고 규제 완화, 네트워크 기술 발달 등의 흐름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MarketsandMarkets의 2019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2018년 2024년에는기준으로 296.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유형에 따른 분류 중, 하드웨어 시장은 2024년 기준 18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공급유형별 Digital Signage Market , 단위: 십억달러, 출처: MarketsandMarkets, 2019]

공급유형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4	CAGR
하드웨어	9.84	11.51	12.81	13.99	15.19	17.34	18.83	6.1%
소프트웨어	3.43	3.60	3.80	4.12	4.54	5.72	6.79	10.5%
서비스	1.84	2.06	2.40	2.71	3.01	3.54	4.01	8.2%
합 계	15.11	17.18	19.01	20.82	22.73	26.60	29.63	7.3%

하드웨어 시장의 경우, 다시 하드웨어 유형으로 시장을 분류할 수 있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표: Hardware Type Digital Signage Market , 단위: 백만달러, 출처: MarketsandMarkets, 2019]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4	CAGR
디스플레이	8,220.7	9,647.3	10,749.2	11,770.3	12,829.7	14,826.0	16,190.0	6.6%
프로젝터	646.5	767.9	873.4	964.9	1,036.6	1,083.3	1,119.7	3.0%
미디어 플레이어	533.3	592.0	642.5	674.6	701.6	740.7	759.3	2.4%
기타	441.4	504.3	543.6	581.7	619.5	692.8	756.5	5.4%
합 계	9,841.9	11,511.6	12,808.7	13,991.6	15,187.4	17,342.7	18,825.5	6.1%

이 중 당사가 영위 중인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과 상관관계가 높은 Display 시장 규모는 2019~2024 년 동안 연평균성장률 6.6%로 성장하여 2024년 기준 16,190 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시장은 UHD, 4K, 8K 와 같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등장 및 발전으로 인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8K 와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성장과 함께, 뉴미디어 콘텐츠로 대표되는 초고화질 콘텐츠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에 필요한 초고화질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글로벌 가전사들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새 홈구장 등에 초대형 사이니지를 설치한 바가 있고, LG전자도 매년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 5인치 올레드 사이니지 200장 이상을 이어 붙여서 만든 초대형 조형물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내 고층 빌딩에 대형 사이니지가 상용화되고 있는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정부도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2018년 코엑스 일대를 첫 옥외광고 자유표시지역으로 지정,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으며 이에 초대형/곡면 초대형 사이니지 등의 공급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 옥외 광고 규제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성장 과정에 있어 초대형, 대형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초고화질 콘텐츠 수요 증가 기조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 화질 개선 솔루션 등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시장 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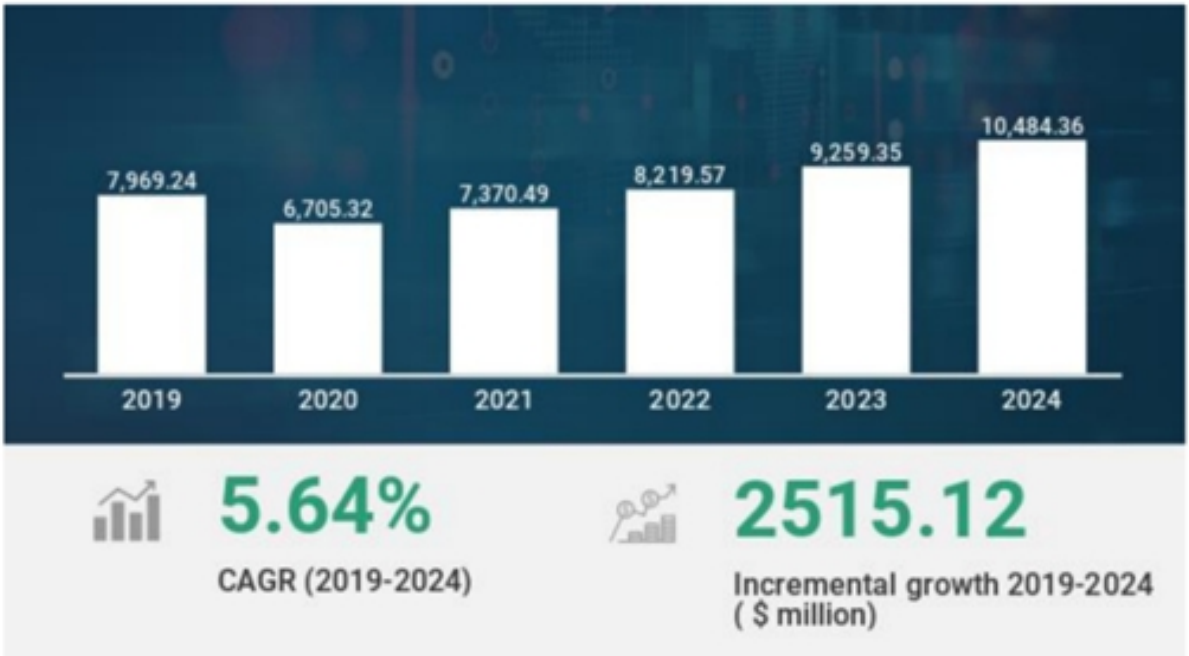
(나) VFX 시장

당사의 주 매출원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서비스는 글로벌 VFX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Technavio 보고서 'Visual Effects(VFX) Market by Application and Geography Forecast and Analysis 2020-2024'에 의하면, 글로벌 VFX 시장은 2019년 7,969.24 백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까지 CAGR 5.64% 로 성장하며 2024년 10,484.36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 지능 기술과 증강 현실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VFX 렌더링 기술은 글로벌 VFX 시장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4K/8K 스마트 TV,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통한 고화질 영상 시청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Technavio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VFX 시장은 ① 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② VFX 프로덕션에서의 실시간 렌더링 기술 발전 ③ 업체 간 인수 및 파트너십 체결 기조가 강화되며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림: Global VFX Market Size and Forecast 2019-2024, 단위: 백만달러, 출처: Technavio]



글로벌 VFX 시장 규모 및 전망 2019-2024

글로벌 VFX 시장은 적용 분야에 따라 영화, TV, 게임, 광고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영화 관련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2.21%로 가장 높고, 광고 관련 시장 규모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글로벌 VFX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화 VFX 시장은 전체 VFX 시장의 성장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영화 VFX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G/XR 등 게임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현실에서 보다 생존감 있는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 게임 관련 VFX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4년에는 전체 VFX 시장 중 약 21%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기준 2위 규모를 차지했던 TV VFX 시장 규모는 점진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고 VFX 시장은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옥외 초대형 스크린 광고, 버추얼휴먼 AI 등 광고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콘텐츠의 발전으로 인해 전체 시장의 성장률을 추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 분야별 세부 VFX 시장의 규모 및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Global Market Size by Application 2019-2024, 단위: 백만달러, 출처: Technavio]

유형	2019A	2020E	2021E	2022E	2023E	2024E
영화	4,160.7	4,529.4	4,944.3	5,412.0	5,940.8	6,537.8
게임	1,266.3	1,362.2	1,468.0	1,585.0	1,714.3	1,858.0
TV	2,067.2	2,235.9	2,425.0	2,637.5	2,876.2	3,145.7
광고	475.0	412.5	467.4	536.3	620.7	720.9

당사는 위의 세부 시장 중 영화, TV, 광고 시장과 관련한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당 세부시장이 성장할수록 관련한 사업 기회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VFX 시장은 다양한 유관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실감형 콘텐츠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시장 내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기에 국내외 실감형 콘텐츠 시장 성장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나)-1 국내 실감형 콘텐츠 시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5G시대, 실감산업 육성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실감 콘텐츠 시장은 5G 성능 향상과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2023년 기준 5조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국내 실감콘텐츠 시장 규모, 단위: 억원,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구분	2021(E)	2022(E)	2023(E)	연평균 성장률 ('21-'23)
실감콘텐츠 시장	32,400	46,800	57,600	33.3%

실감형 콘텐츠의 근간을 이루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국가간 경계 등이 존재하지 않고, 소비 및 생산 확대가 빠르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 나아가 실감형 콘텐츠 시장 역시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빠른 확장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 시장의 경우, 상기에 서술하였듯이 정부 차원에서의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나)-2 세계 실감형 콘텐츠 시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019)의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자료" 중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에 따르면, 실감 콘텐츠 시장은 2018년부터 2023년 까지 연평균 56.1%의 높은성장률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2023년 910억 2,40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림: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국내 실감 콘텐츠 시장 전망과 마찬가지로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따른 실감콘텐츠 중심의 산업변화, 기업/공공기관 내 XR 기술 적용 증가, 고품질 실감콘텐츠 제작 확산에 따라 급속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다) 스톡 영상 시장

당사는 다양한 고화질 콘텐츠 및 VFX 기반 콘텐츠를 제작함과 동시에, 글로벌 최대 고화질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KEYCUT STOCK'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KEYCUT STOCK은 단순히 영상 작가가 업로드한 영상을 유통하는 것만이 아닌, 당사만의 영상 고화질 작업 과정을 거쳐 고화질 콘텐츠로 변환시킨 뒤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며, 업로드된 영상 콘텐츠를 바탕으로 영상 작가들의 고화질 콘텐츠 2차 창작을 용이하게 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KEYCUT STOCK과 같은 콘텐츠 유통 플랫폼과 연관된 시장으로는 스톡 영상 시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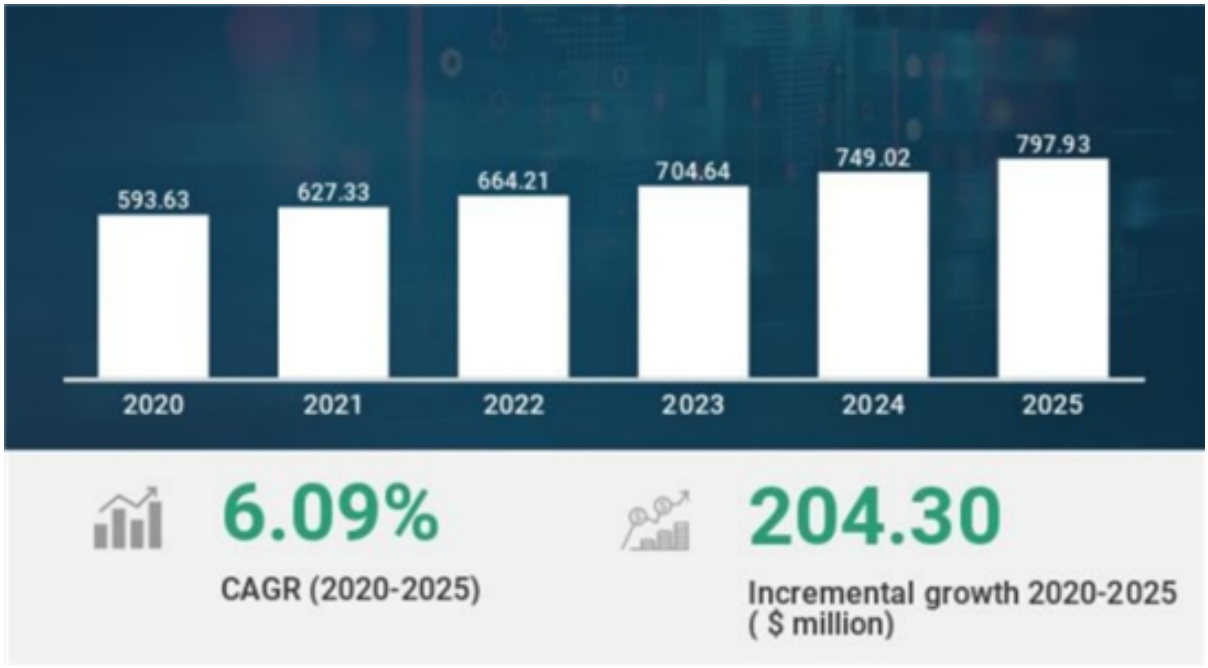
스톡 영상 플랫폼은 전문 이미지/영상 작가들의 상업적 콘텐츠/영상을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수요자는 비용을 지급하여 촬영 영상의 라이선스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톡 영상 플랫폼 회사는 1980년대 중반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기존에 확립된 스톡 이미지 산업을 기반으로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스톡 영상은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 제작자들의 영상 제작 및 편집과 광고, 마케팅 캠페인 등에 주로 사용되는 영상 촬영소스를 의미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대부분의 스톡 영상들은 주로 도시와 랜드마크, 야생과 자연환경, 역사 관련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스톡 영상은 다큐멘터리, 뉴스, 영화 등 모든 영상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 등 미디어 업계에서는 영상물의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스톡 영상을 이용합니다.

Technavio 에 의하면 스톡 영상 시장은 2020년 593백만 달러 수준으로, 2021 년부터 2025년까지 CAGR 6.09%로 성장해, 2025년 798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 프로모션과 마케팅 콘텐츠의 증가, 인터넷 연결성의 증대, 스마트폰 사용량의 증가, OTT 플랫폼을 통한 영상 콘텐츠 시청 수요의 증가 등의 요소가 글로벌 스톡 영상 시장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림: Global Stock Footage Market Size and Forecast 2020-2025, 단위: 백만달러, 출처: Technavio]



Global Stock Footage Market Size and Forecast 2020-2025

또한, 스톡 영상 시장은 다음과 같이 향후 꾸준한 시장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동인이 존재합니다.
① 시각 콘텐츠 창작에 있어서 스톡 영상이 가지는 이점
② 웹 시리즈/단편 영화 등에서 증가하는 스톡 영상 수요
③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의 증대

(3) 경기변동의 특성

(가) 고화질 콘텐츠 시장

당사의 고화질 콘텐츠가 주로 적용되는 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장치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로 제작하는 고화질 콘텐츠는 디스플레이사/가전사 광고 콘텐츠처럼 광고 성격이 강한 콘텐츠가 많기에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높은 탄력성을 보입니다. 경기 호황 시 기업의 신제품 런칭도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른 광고주의 마케팅 예산 또한 증대될 수 있어 해당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역시 주로 광고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거시경제 요인 등 경기변동에 따라 시장에 대한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은 고화질 디스플레이의 단기적 수급이 아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제품 개발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CES/ISE 등 글로벌 가전 전시회에서 당사의 초고화질 콘텐츠가 주로 소비되는 점 등을 고려 시, 단기적인 경기변동이 당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당사의 고화질 콘텐츠 사업은 가전/디스플레이 기업의 화질 데모영상 후반 제작에 집중되어 있지만, 추후 8K 이상 해상도 콘텐츠가 활용되는 분야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사 콘텐츠가 적용되는 범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시장에서의 당사 고화질 콘텐츠는 산업 수명 주기 상 도입기에 해당하며, 향후 고화질 디스플레이 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당사의 초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글로벌 VFX 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당사의 주요 목표 시장인 글로벌 VFX 시장은 적용 분야에 따라 전통적 미디어인 영화, TV, 게임, 광고 분야 및 뉴미디어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전통 미디어 분야가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 TV, 게임, 광고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최우선적으로 소비가 감축되는 산업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VFX 시장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세부 산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COVID-19 이후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 OTT 산업의 발전과 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개인 디바이스 콘텐츠 소비 증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외에 뉴미디어 산업 등 VFX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의 확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VFX 콘텐츠 시장은 경기변동과 크게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시장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실감형 콘텐츠 산업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초연결기술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등의 발달 격화로 지속 성장해 가는 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실감형 콘텐츠 시장 내에서도 고화질, 뉴미디어 콘텐츠 및 드라마/영화 후반 제작 등의 콘텐츠 화질 개선 및 실감화 과정에 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기술 발달에 따른 매출 확대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에 경기변동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4) 계절성

당사가 서비스 중인 고화질 콘텐츠 제작 서비스는 고화질 디스플레이/가전의 마케팅 활동에 큰 영향을 받기에, 광고시장의 계절성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인 2분기와 연말시즌인 4분기에 광고활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당사 사업이 연결되는 시장을 고려했을 때 신제품이 출시되는 시점이나 통상 국제전시가 열리는 시점에 시장이 확대되는 계절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VFX 시장과 실감형 콘텐츠 시장의 경우 기온이 아주 높거나 낮은 1~2월, 7~8월 등 실내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확대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스톡영상 시장의 경우 수요처가 다변화되어 있기에 큰 계절성을 보이지 않는 산업으로 판단됩니다.

(5) 경쟁현황

(가) 경쟁 상황 및 시장 점유율

당사는 콘텐츠의 고화질화 및 VFX 등 시각효과 기술을 기반으로 실감형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① 초고화질 콘텐츠, ② 뉴미디어 콘텐츠, ③ 영화, 드라마 콘텐츠의 제작 전 프로세스에 있어 기획/제작/후반작업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와중 독보적인 고화질구현 솔루션을 지닌 비주얼테크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당사 주 매출의 근원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세스 내에 VFX/CG 기술 및 고화질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아우르는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장에는 당사와 유사한 기술을 바탕으로 뉴미디어 콘텐츠나 광고, 영화, 드라마의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에 관여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존재하기에 경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가 자체 파악한 자료로는 당사와 Major 8~9개사가 광고, 뉴미디어, 영화, 드라마 콘텐츠 VFX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기타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나머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가 2020년 'KEYCUT STOCK' 런칭 후 플랫폼 사업으로 영위 중인 스톡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우, 당사처럼 고화질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는 세계적으로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스톡 영상 및 이미지 온라인 거래 플랫폼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셔터스톡(Shutter Stock), 픽셀(Pexels), 픽사베이(Pixabay), Videvo, 어도비스톡 (Adobe Stock), 게티이미지 (Getty Image), Artgrid 등 다양한 경쟁 플랫폼이 존재하기에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경쟁 우위

1) 우수한 Picture Quality 구현 역량

당사는 VFX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 기술력 및 당사만의 Picture Quality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운용을 바탕으로 산업 내 다양한 reference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삼성전자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 콘텐츠 화질 협의체인 '8K협회'에 국내 콘텐츠 업체 최초로 가입하였고, 국내 최초로 자이언트 스크린 시네마 협회 가입 및 글로벌 테마파크 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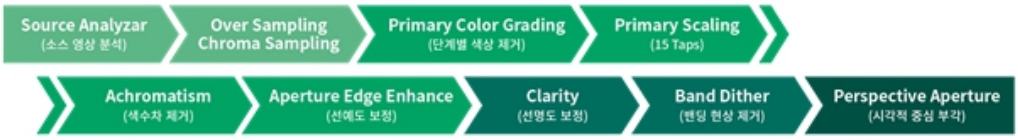
텐츠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테마파크협회에도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콘텐츠 화질 관련 다양한 글로벌 협회 가입 이력은 고화질/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있어 당사의 글로벌 수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또한 당사는 8K 이상 콘텐츠 화질을 실감 있게 구현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Dolby, Ateme, Spin Digital 등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당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퀄리티 및 제작력과 관련된 다양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2) 자체 화질 개선 공정 구축

당사는 전문 인력의 제작 역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화질 개선 및 VFX에 대한 경험적 결과를 자동화/내재화 하기 위해 화질 개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당사만의 화질개선 및 VFX 공정을 확립하여 특허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림: 당사 9단계 화질 보정 공정 System]



당사는 자체 구축한 화질 보정 공정을 통해, 당사의 업무 시스템을 기반으로 업무 수행시, 누구나 일정 퀄리티 이상의 작업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부 작업 공정에 대한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이익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 PIXELL의 데이터 우수성 기반 기술 경쟁력

딥러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것은 알고리즘 자체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훌륭한 training data set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당사의 AI기반 딥러닝 화질 개선 솔루션 PIXELL은 딥러닝 알고리즘 모델로, 인지적 화질 개선 부분에 대한 딥러닝 강화를 위해 당사 전문 인력 주도의 화질 개선 작업을 거친 양질의 콘텐츠를 training data set으로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알고리즘 학습에 있어 경쟁업체 대비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4) PIXELL 솔루션 및 인력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당사 PIXELL 솔루션은 인지적 화질을 포함한 대부분의 화질개선 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당사의 9단계 화질 보정 공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극적으로 절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PIXELL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감소하여 당사 영업이익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IXELL 솔루션은 다량의 저화질 영상 콘텐츠가 투입되는 KEYCUT STOCK의 고화질화 과정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PIXELL 솔루션을 사용했을 시 KEYCUT STOCK의 고화질 영상 생산량이 이전 대비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타 영상 콘텐츠 실감화 작업 시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생산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는 이 외에도 VFX사업부문을 전문 인력 위주로 고용하여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작업 가능량이 인력 규모와 비례하는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인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휴인력을 최소화 하는 등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5) 플랫폼 구축을 통한 확장성 확보

당사는 콘텐츠 제작 업계 최초로 자체 구축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 KEYCUT STOCK을 통해 초고화질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B2C 소비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영상 제작 친화 플랫폼으로의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KEYCUT STOCK 플랫폼 내 초고화질 스톡 영상 외에도 VFX Asset, 이미지, 음원 등 유통되는 콘텐츠의 카테고리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PIXELL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실감 콘텐츠를 유통하고, 이를 통해 기존에 영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영업의 개황

(가) 고화질 콘텐츠 제작

당사는 설립 이후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 최고 화질을 구현하는 가전사/디스플레이사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의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CES/IFA 등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 가전 전시회 등에서 LG전자/LG디스플레이의 TV, 모니터 및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질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데모영상을 직접 기획, 제작해왔습니다. 기존 주 매출처 외에도, 당사는 타 글로벌 가전사/디스플레이사 콘텐츠와 관련하여 신규 매출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 관련 프로젝트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감성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부분 초대형 디스플레이 내에서 콘텐츠가 실감 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초해상도의 콘텐츠로 제작되며, 당사가 제작해온 뉴미디어 콘텐츠로는 1) 건물 외벽, 전시장 등 대형 오프라인 공간에 송출되는 초실감형 대형 광고 영상 콘텐츠, 2) 다면을 활용한 XR 콘텐츠, 3) 미디어 어트랙션용 실감형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버추얼 휴먼 제작이나, 엔터테인먼트사, 홈쇼핑사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 스포츠 레저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매출처로의 영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드라마 후반 제작의 경우, 영화/드라마 등의 제작에 있어서 실감성이 필요하거나 제작을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한 VFX 등 후반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뉴미디어 및 영화/드라마 VFX 등의 후반 제작 작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VFX 스튜디오 출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 제작 인력 외에도 다수의 슈퍼바이징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소비자들이 특히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실성 있는 CG 작업을 초기 단계부터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가 갖고 있지 못하는 화질 개선이라는 추가적인 후반제작 공정을 더해 전반적인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KEYCUT STOCK은 고화질 스톡 영상을 유통하는 플랫폼입니다. 당사 플랫폼처럼 스톡 영상을 유통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은 셔터스톡, 게티이미지 등이 있으나 해당 플랫폼들은 주로 이미지와 저화질 영상 유통에 주력하고 있으며 당사와 같이 8K 이상 스톡 영상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플랫폼은 많지 않습니다.

KEYCUT STOCK 플랫폼은 1) 해당 스톡 영상을 공급하는 글로벌 아티스트, 필름메이커 등에게는 판매 수익 창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2) 영상 제작 및 후반제작사,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효율적으로 제작비용/시간을 단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공급/수요자 모두와 제작 프로세스 전반의 패러다임 혁신에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KEYCUT STOCK의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탑 티어 필름메이커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으로부터 촬영된 일반 콘텐츠를 수집
2) 콘텐츠에 대한 상품화 (클립화, AI기반 딥러닝 화질개선솔루션 PIXELL을 통한 화질 개선, 키워딩 등의 작업)
3) 콘텐츠 수요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타겟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콘텐츠의 상품성 증대 및 유통, 이에 따른 수수료 확보

다른 스톡 영상 플랫폼 업체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2) 상품화 과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사용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고화질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클립화 및 편집 등의 무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당사가 개발한 AI 화질개선 솔루션인 PIXELL을 통해 구현 가능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3세대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어떤 화질의 영상을 올리더라도, 수요자가 구매 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할 수 있는 화질의 영상으로 개선하여 고화질 콘텐츠 DB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가 수요자의 제작 니즈를 충족할 수 있어 판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7) 사업부문별 주요 재무 정보

(단위 : 백만원)

구분	품목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콘텐츠 제작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20,679	92.8%	12,904	92.2%	10,645	100.0%
콘텐츠 유통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1,597	7.2%	1,089	7.8%	-	-
합계		22,276	100.0%	13,993	100.0%	10,645	100.0%

사. 신규사업

(1)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 가상인간)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버추얼 휴먼은 CG, VFX 기술을 통해 생성된 가상의 디지털 인물로서, 과거에는 게임 속 캐릭터를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이질감 없는 외형 구현이 가능하고, 사건/사고에서 자유롭고 관리가 수월하며, 활동에 제약이 없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언택트 상황에서 TV 및 소셜미디어 광고마케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에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전략적 투자자인 롯데홈쇼핑의 버추얼 휴먼 '루시'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루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MCN(Multi Channel Network) 루시 온라인 마케팅 대행 등을 진행 중입니다.

루시는 롯데홈쇼핑 자체 제작 버추얼 휴먼이나, 최근 다양한 활용처가 발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품질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품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협의를 통해 향후 당사는 당사 VFX 사업 담당 조직을 통해 버추얼 휴먼 '루시'의 콘텐츠 품질 개선 및 활용처별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게 되며, 이에 따른 당사의 버추얼 휴먼 제작 역량에 대한 홍보 효과도 기대 가능합니다.

당사는 상기 롯데홈쇼핑 '루시' 외 다양한 업체로부터 버추얼 휴먼 제작과 관련된 논의 요청을 받아 협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당사의 자체 버추얼 휴먼 제작 및 활용처 발굴을 통한 라이선스 수익화 모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구작 드라마 등 콘텐츠 리마스터링

당사는 과거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은 구작 드라마 중 현재 사양의 디스플레이에서 화질 등 문제로 시청 만족도가 낮은 구작 콘텐츠를 리마스터링 하여 유통하는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당사는 파일럿 스터디로 2010년 KBS2 TV 방영드라마였던 '성균관 스캔들'의 방영권을 바탕으로 고화질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무료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본격적인 사업 확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작 영화나 드라마 이외에도, 기타 엔터테인먼트 영상 등과 관련하여 리마스터링 수요가 있을 경우 동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영상 유통 플랫폼 KEYCUT STOCK 생태계 확장

- B2C 생태계 확장

당사는 현재의 전문 제작자 중심의 KEYCUT STOCK의 소비자층 확대를 위해 일반 SNS 사용자들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원천 재료와 편집툴을 제공하고, 당사 KEYCUT STOCK 플랫폼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당사는 이 과정에서 부가 서비스(화질 개선 및 VFX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 등)를 통한 서비스 수익 또는 상업화 시 수익 배분, 2차 저작물 확보를 통한 자체 콘텐츠 판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사업의 경우, 다양한 사업 파트너와 업무 제휴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방식, 마케팅 전략 구체화 논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당사 플랫폼 사업 실적 확대에 따라 영업수익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VFX Asset 등으로의 카테고리 확장

당사는 콘텐츠 유통 라인업 확장의 일환으로, VFX Asset 유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제작 방식은 실제 촬영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가상 인물, 가상 스튜디오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CG(컴퓨터 그래픽스), VFX(Visual Effects, 시각효과)의 활용이 보편화 되었으며, 실제 촬영된 결과물과 VFX Asset을 합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화질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내부 모션그래픽과 VFX 파이프라인을 활용, KEYCUT STOCK에 VFX Asset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가상 환경 관련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사들의 VFX 콘텐츠 작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업들이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노동집약적 환경 속에서 신규로 제작하기보다, 당사가 사전 제작하거나 외부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VFX Asset의 사용권(라이선스)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요약개별재무정보

(단위 : 원)

사업연도	2021년 말 (제5기)	2020년 말 (제4기)	2019년 말 (제3기)
감사인 (감사의견)	삼덕회계법인 (적정)	이촌회계법인 (적정)	- (감사받지 않음)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유동자산]	35,108,383,668	9,810,593,819	4,423,830,181
현금및현금성자산	24,443,256,320	4,536,484,765	574,089,184
매출채권	7,764,988,990	3,586,834,565	3,201,793,772
기타유동채권	73,248,716	161,575	825,300
기타유동금융자산	20,000,000	20,000,000	20,000,000
기타유동자산	2,806,889,642	1,667,112,914	627,121,925
[비유동자산]	9,349,614,017	5,069,580,074	1,858,483,820
기타비유동채권	445,065,208	636,392,637	621,013,69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0,373,431	40,049,598	-
유형자산	5,299,080,521	1,917,042,413	898,205,140
사용권자산	1,330,973,952	-	-
무형자산	2,046,758,352	2,231,281,243	338,750,548
이연법인세자산	187,362,553	244,814,183	514,435
자 산 총 계	**44,457,997,685**	**14,880,173,893**	**6,282,314,001**
[유동부채]	6,411,828,667	3,791,440,165	959,599,268
매입채무	804,767,000	128,993,645	-
기타유동채무	722,108,651	579,547,433	443,061,870
계약부채	2,137,956,929	-	-
유동리스부채	504,109,997	232,418,181	269,992,851
기타유동부채	144,534,551	1,657,909,156	166,034,100
단기차입금	1,0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400,000,000	1,000,000,000	-
당기법인세부채	698,351,539	192,571,750	80,510,447
[비유동부채]	1,542,080,294	7,517,250,817	3,223,488,545
장기차입금	500,000,000	500,000,000	1,000,000,000
전환사채	-	1,847,331,684	1,980,848,042

비유동성전환상환우선주부채	-	3,606,178,957	-
비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553,517,854	-
장기리스부채	831,262,644	10,222,322	242,640,503
복구충당부채	210,817,650	-	-
부 채 총 계	**7,953,908,961**	**11,308,690,982**	**4,183,087,813**
자본금	4,290,492,500	228,000,000	228,000,000
자본잉여금	24,890,735,981	-	-
기타자본	1,061,866,838	846,406,263	728,440,726
이익잉여금	6,260,993,405	2,497,076,648	1,142,785,462
자 본 총 계	**36,504,088,724**	**3,571,482,911**	**2,099,226,188**
구분	**2021.01~2021.12**	**2020.01~ 2020.12**	**2019.01~ 2019.12**
영업수익	22,276,034,842	13,993,496,988	10,645,126,168
영업비용	18,262,065,121	12,180,606,536	9,831,262,681
영업이익(손실)	4,013,969,721	1,812,890,452	813,863,487
당기순이익(손실)	3,763,916,757	1,354,291,186	688,220,533
주당순이익(손실)	580	315	151
희석주당순이익(손실)	511	294	144

주1) 상기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은 기간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 14일(1주당 3주) 및 2021년 8월 19일(1주당 9주) 실시한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 수 증가 영향을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주2) 제3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당) 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4(전)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3(전전) 기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포바이포 (단위 : 원)

과 목	제5(당)기말	제4(전)기말	제3(전전)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35,108,383,668	9,810,593,819	4,423,830,181
현금및현금성자산	24,443,256,320	4,536,484,765	574,089,184
매출채권	7,764,988,990	3,586,834,565	3,201,793,772
기타유동채권	73,248,716	161,575	825,300
기타유동금융자산	20,000,000	20,000,000	20,000,000
기타유동자산	2,806,889,642	1,667,112,914	627,121,925
Ⅱ. 비유동자산	9,349,614,017	5,069,580,074	1,858,483,820
기타비유동채권	445,065,208	636,392,637	621,013,69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0,373,431	40,049,598	-
유형자산	5,299,080,521	1,669,346,111	898,205,140
사용권자산	1,330,973,952	247,696,302	-
무형자산	2,046,758,352	2,231,281,243	338,750,548
이연법인세자산	187,362,553	244,814,183	514,435
자 산 총 계	44,457,997,685	14,880,173,893	6,282,314,001
부 채			
Ⅰ. 유동부채	6,411,828,667	3,791,440,165	959,599,268
매입채무	804,767,000	128,993,645	-
계약부채	2,137,956,929	-	-
기타유동채무	722,108,651	579,547,433	443,061,870
유동리스부채	504,109,997	232,418,181	269,992,851
기타유동부채	144,534,551	1,657,909,156	166,034,100
단기차입금	1,0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400,000,000	1,000,000,000	-
당기법인세부채	698,351,539	192,571,750	80,510,447
Ⅱ. 비유동부채	1,542,080,294	7,517,250,817	3,223,488,545
장기차입금	500,000,000	500,000,000	1,000,000,000
전환사채	-	1,847,331,684	1,980,848,042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3,606,178,957	-
파생상품부채	-	1,553,517,854	-
비유동리스부채	831,262,644	10,222,322	242,640,503
복구충당부채	210,817,650	-	-
부 채 총 계	7,953,908,961	11,308,690,982	4,183,087,813
자 본			

Ⅰ. 자본금	4,290,492,500	228,000,000	228,000,000
Ⅱ. 자본잉여금	24,890,735,981	-	-
Ⅲ. 기타자본	1,061,866,838	846,406,263	728,440,726
Ⅳ. 이익잉여금	6,260,993,405	2,497,076,648	1,142,785,462
자 본 총 계	36,504,088,724	3,571,482,911	2,099,226,188
부채 및 자본 총계	44,457,997,685	14,880,173,893	6,282,314,001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당)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전전)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포바이포 (단위 : 원)

과 목	제5(당)기	제4(전)기	제3(전전)기
Ⅰ.영업수익	22,276,034,842	13,993,496,988	10,645,126,168
Ⅱ.영업비용	18,262,065,121	12,180,606,536	9,831,262,681
Ⅲ.영업이익	4,013,969,721	1,812,890,452	813,863,487
Ⅳ.기타수익	91,472,109	53,348,017	100,358,400
Ⅴ.기타비용	58,031,810	54,710,860	21,778,711
Ⅵ.금융수익	152,313,931	36,529,137	8,260,508
Ⅶ.금융비용	219,304,746	518,572,978	129,778,739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980,419,205	1,329,483,768	770,924,945
Ⅸ.법인세비용(수익)	216,502,448	(24,807,418)	82,704,412
Ⅹ.당기순이익	3,763,916,757	1,354,291,186	688,220,533
Ⅺ. 당기총포괄이익	3,763,916,757	1,354,291,186	688,220,533
Ⅻ.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580	315	151
희석주당이익	511	294	144

주1) 상기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은 기간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 14일(1주당 3주) 및 2021년 8월 19일(1주당 9주) 실시한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 수 증가 영향을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5(당)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전전)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포바이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2019년 1월 1일 (전전기초)	57,000,000	-	390,000,000	640,504,436	1,087,504,436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688,220,533	688,220,533
총포괄손익 합계	-	-	-	688,220,533	688,220,533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전환상환우선주의소각	-	-	(390,000,000)	(14,939,507)	(404,939,507)
주식선택권부여	-	-	200,390,727	-	200,390,727
전환사채발행	-	-	528,049,999	-	528,049,999
무상증자	171,000,000		-	(171,000,000)	-
2019년 12월 31일(전전기말)	228,000,000	-	728,440,726	1,142,785,462	2,099,226,188
2020년 1월 1일(전기초)	228,000,000	-	728,440,726	1,142,785,462	2,099,226,18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1,354,291,186	1,354,291,186
총포괄손익 합계	-	-	-	1,354,291,186	1,354,291,186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자기주식의 취득	-	-	(282,150,000)	-	(282,150,000)
주식선택권의 부여	-	-	303,730,006	-	303,730,006
전환사채의 상환	-	-	(88,008,334)	-	(88,008,334)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	-	-	184,393,865	-	184,393,865
2020년 12월 31일(전기말)	228,000,000	-	846,406,263	2,497,076,648	3,571,482,911
2021년 1월 1일(당기초)	228,000,000	-	846,406,263	2,497,076,648	3,571,482,91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3,763,916,757	3,763,916,757
총포괄손익 합계	-	-	-	3,763,916,757	3,763,916,757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의 부여	-	-	652,634,176	-	652,634,176
전환사채의 전환	40,485,500	2,321,404,764	(440,041,665)	-	1,921,848,599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57,300,500	5,377,212,134	(184,393,865)	-	5,250,118,769
유상증자	812,515,000	18,165,342,480	-	-	18,977,857,480
무상증자	3,152,191,500	(3,199,932,040)	-	-	(47,740,540)
자기주식의 처분	-	2,226,708,643	187,261,929	-	2,413,970,572
2021년 12월 31일(당기말)	4,290,492,500	24,890,735,981	1,061,866,838	6,260,993,405	36,504,088,724

현 금 흐 름 표

제 5(당)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전전)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포바이포 (단위 : 원)

과 목	제5(당)기	제4(전)기	제3(전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44,796,557	2,996,474,527	(1,772,059,880)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170,522,368	3,143,776,246	(1,713,149,736)
(1) 당기순이익	3,763,916,757	1,354,291,186	688,220,533
(2) 수익 및 비용의 조정	2,351,961,092	1,457,419,170	610,158,798
(3) 자산 및 부채의 증감	(3,945,355,481)	332,065,890	(3,011,529,067)
(4) 이자의 수취	6,190,313	2,452,358	7,308,279
(5) 이자의 지급	(50,599,067)	(42,323,050)	(20,768,823)
(6) 법인세의 납부	(281,317,057)	(107,431,027)	(45,449,60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97,059,830)	(3,653,818,862)	(661,929,278)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9,103,620	-	-
임차보증금의 감소	600,000,000	-	46,000,000
기타보증금의 감소	-	-	60,000
대여금의 회수	-	-	567,824,219
유형자산의 취득	(4,060,341,787)	(1,535,066,264)	(332,328,847)
무형자산의 취득	(65,542,663)	(2,078,203,000)	(343,484,65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9,630,00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40,049,598)	-
임차보증금의 증가	(470,649,000)	-	(600,000,000)
기타보증금의 증가	-	(500,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017,716,840	4,633,109,016	1,903,738,493
단기차입금의 차입	1,0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500,000,000	800,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	-	2,400,000,000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	-	5,094,481,016	-
전환상환우선주의 소각	-	-	(575,939,507)
유상증자	19,000,438,000	-	-
자기주식의 처분	3,042,016,6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600,000,000)	-	-
전환사채의 상환	-	(400,000,000)	(577,500,000)
리스부채의 지급	(354,416,700)	(279,222,000)	(142,822,000)
자기주식의 취득	-	(282,150,000)	-
신주발행비용	(70,321,06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 변동효과	41,317,988	(13,369,100)	840,354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9,906,771,555	3,962,395,581	(529,410,311)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536,484,765	574,089,184	1,103,499,49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4,443,256,320	4,536,484,765	574,089,184

5. 재무제표 주석

제 5(당)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4(전)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포바이포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포바이포(이하 "회사")는 2017년 8월 29일에 설립되어 국내 외 광고, 영화에 사용되는 초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신논현타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4,290,492,500원으로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윤준호(대표이사)	2,850,280	33.22%
비에이피제2호 퍼스트펭귄투자조합	854,650	9.96%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543,480	6.33%
UI벤처투자조합5호	449,430	5.24%
주식회사 에코투자파트너스	380,435	4.43%
비에이피제3호 플라잉펭귄투자조합	354,060	4.13%
유경PSG범블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348,280	4.06%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326,100	3.80%
유경코스닥벤처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24,710	2.62%
롯데홈쇼핑이노베이션펀드1호	217,400	2.53%
주식회사 에이온파트너스	210,000	2.45%
티제이시너지 사모투자 합자회사	168,770	1.97%
유경PSG범블비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호	165,910	1.93%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디지털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163,040	1.90%
비에이피제1호 첨단기술투자조합	112,350	1.31%
키움증권 주식회사	108,700	1.27%
미래에셋증권㈜	108,700	1.27%
자기주식	184,967	2.16%
기타	809,723	9.44%
합계	8,580,985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4)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개정 기준서에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기존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무보고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특정 요건 충족 시 금융상품 재측정에 따른 손익을 미인식
・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
・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5)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할 것입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용손실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비품	5년	정액법
시설장치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각방법
특허권	7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저작권	10년	정액법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

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7)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증분차입이자율이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고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회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

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전환사채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1)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2)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

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수익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초고화질 영상콘텐츠를 제작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초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VFX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용역제공으로부터의 수익은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인식됩니다. 가격이 확정된 계약의 경우 수익은 제공하기로 한 전체 용역 중 보고기간 말까지 실제로 제공된 용역에 근거하여 인식합니다. 이는 예상 총 용역원가 대비 실제 용역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며, VFX 서비스 용역의 경우 고객이 통제하고 있는 자산을 회사가 수행하여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4)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입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한 투입원가(직접노무원가 및 외주용역원가)가 회사의 수행 정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그 진척도에 비례하므로 용역의 수행 정도를 충실히 나타냅니다. 수익, 원가 또는 진척도의 추정은 상황이 변경되면 수정됩니다. 이로 인한 예상 수익 및 원가의 증감은 경영진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수정이 발생한 것을 알게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반영됩니다.

5)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4)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7)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8)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COVID-19으로 회사의 추정 및 가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기말 현재 그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금융자산의 범주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	24,443,256	24,443,256
단기금융자산	-	20,000	20,000
매출채권	-	7,764,989	7,764,989
단기기타채권	-	73,249	73,24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0,373	-	40,373
장기기타채권	-	445,065	445,065
합계	40,373	32,746,559	32,786,932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	4,536,485	4,536,485
단기금융자산	-	20,000	20,000
매출채권	-	3,586,835	3,586,835
단기기타채권	-	162	16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0,050	-	40,050
장기기타채권	-	636,393	636,393
합계	40,050	8,779,875	8,819,925

(2) 금융부채의 범주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합계
매입채무	-	804,767	804,767
단기기타채무	-	722,109	722,109
단기차입금	-	1,000,000	1,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	400,000	400,000

장기차입금	-	500,000	500,000
합 계	-	3,426,876	3,426,876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합계
매입채무	-	128,994	128,994
단기기타채무	-	579,547	579,547
유동성장기차입금	-	1,000,000	1,000,000
전환사채	-	1,847,332	1,847,332
전환상환우선주	3,606,179	-	3,606,179
파생상품부채	1,553,518	-	1,553,518
장기차입금	-	500,000	500,000
합 계	5,159,697	4,055,873	9,215,570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익(비용)	이자수익(비용)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69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1,128
합계	969	21,128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216,462)
합계	-	(216,462)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익(비용)	이자수익(비용)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7,493
합계	-	17,493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33,488	(424,284)
합계	33,488	(424,284)

4. 공정가치

(1)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종 류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8,283,303	(*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40,373	40,373	40,373	-	-
현금 및 단기예치금	24,443,256	(*1)	-	-	-
단기금융상품	20,000	(*1)	-	-	-
합계	32,786,932	40,373	40,373	-	-
<금융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526,876	(*1)	-	-	-
이자부차입금	1,900,000	(*1)	-	-	-
합계	3,426,876	-	-	-	-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종 류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223,389	(*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40,050	40,050	40,050	-	-
현금 및 단기예치금	4,536,485	(*1)	-	-	-
단기금융상품	20,000	(*1)	-	-	-
합계	8,819,924	40,050	40,050	-	-
<금융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708,541	(*1)	-	-	-
이자부차입금	1,500,000	(*1)	-	-	-
전환사채	1,847,332	1,847,332	-	-	1,847,332
전환상환우선주	3,606,179	3,606,179	-	-	3,606,179
파생상품부채	1,553,518	1,553,518	-	-	1,553,518
합계	9,215,570	7,007,029	-	-	1,553,518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채무증권)	40,373	40,373	-	-	40,373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채무증권)	40,050	40,050	-	-	40,050
<부채>					

파생상품부채	1,553,518	-	-	1,553,518	1,553,518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 관련 공시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자산·부채의 당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기초잔액	1,553,518
매입, 발행, 매도 및 결제	
전환	(1,553,518)
기말잔액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기초잔액	-
당해 기간의 총손익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	80,493
매입, 발행, 매도 및 결제	
발행	1,473,025
기말잔액	1,553,518

2)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투입변수 범위
파생상품부채	1,553,518	3	옵션모델	기초자산 변동성	46.20%
				할인율	13.50%

3)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의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공정가치 변동 효과	
	당기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파생상품부채	(133,570)	113,449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현금시재액	-	5,807
요구불예금	24,443,256	4,530,678
합계	24,443,256	4,536,485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채권액	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손실충당금	장부금액
매출채권	7,792,169	(27,180)	7,764,989	3,586,835	-	3,586,835
단기기타채권 :						
미수금	24,231	-	24,231	-	-	-
미수수익	262	-	262	162	-	162
임차보증금	-	-	-	-	-	-
기타보증금	48,756	-	48,756	-	-	-
소계	7,865,418	(27,180)	7,838,238	3,586,997	-	3,586,997
장기기타채권 :						
임차보증금	444,565	-	444,565	588,278	-	588,278
기타보증금	500	-	500	48,115	-	48,115
소계	445,065	-	445,065	636,393	-	636,393
합계	8,310,483	(27,180)	8,283,303	4,223,390	-	4,223,390

(2) 당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연체된 일수					
	미연체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개월 초과	계
총장부금액	5,227,055	2,565,114	-	-	-	7,792,169
기대손실율	0.00%	1.06%	0.00%	0.00%	0.00%	
전체기간기대손실	-	(27,180)	-	-	-	(27,180)
순장부금액	5,227,055	2,537,934	-	-	-	7,764,989

(3)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설정	제각	환입	기말
매출채권	-	27,180	-	-	27,180

7. 기타금융자산

(1)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단기기타금융자산 :		
정기예금	20,000	20,000
장기기타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0,373	40,050
합계	60,373	60,050

(2) 당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40,373	40,050

8. 기타자산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257,812	6,481
선급비용-계약원가(주)	2,416,312	1,656,865
선급비용	132,765	3,766
합계	2,806,889	1,667,112

(주) 선급비용-계약원가는 회사의 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주거래처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이 완료되어 수익이 인식될 경우 외주제작비로 대체됩니다. 회사는 당기말 현재 프로젝트 계약 별 선급비용-계약원가가 해당 프로젝트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보다 클 경우 이와 관련한 예상손실을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기 중 71,263천원이 영업비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9.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비품	4,487,809	(727,467)	3,760,342	1,817,998	(237,673)	1,580,325
시설장치	643,420	(59,432)	583,988	135,382	(46,362)	89,020
건설중인자산	954,750	-	954,750	-	-	-
합계	6,085,979	(786,899)	5,299,080	1,953,380	(284,035)	1,669,345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 초	취득	감소	대체	감가상각비	기말
비품	1,580,325	1,881,611	(1,009)	789,881	(490,466)	3,760,342
시설장치	89,020	606,138	-	41,900	(153,070)	583,988
건설중인자산	-	1,786,531	-	(831,781)	-	954,750
합계	1,669,345	4,274,280	(1,009)	-	(643,536)	5,299,080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 초	취득	감소	대체	감가상각비	기말
비품	252,998	1,535,066	-	-	(207,739)	1,580,325
시설장치	116,097	-	-	-	(27,077)	89,020
합계	369,095	1,535,066	-	-	(234,816)	1,669,345

10.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42,586	(16,237)	26,349	31,830	(9,049)	22,781
특허권	44,750	(9,551)	35,199	19,203	(4,661)	14,542
저작권	2,404,240	(419,029)	1,985,211	2,375,000	(181,042)	2,193,958
합계	2,491,576	(444,817)	2,046,759	2,426,033	(194,752)	2,231,281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감소	상각비	기말
소프트웨어	22,781	10,756	-	(7,188)	26,349
특허권	14,542	25,547	-	(4,890)	35,199
저작권	2,193,958	29,240	-	(237,987)	1,985,211
합계	2,231,281	65,543	-	(250,065)	2,046,759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감소	상각비	기말
소프트웨어	28,291	790	-	(6,300)	22,781
특허권	14,627	2,413	-	(2,498)	14,542
저작권	295,833	2,075,000	-	(176,875)	2,193,958
합계	338,751	2,078,203	-	(185,673)	2,231,281

11. 리스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건물	1,485,423	576,099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65,047)	(354,522)
차량운반구	71,386	71,386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60,787)	(45,266)
합계	1,330,975	247,697

(2) 당기와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247,696	529,110

취득	1,485,423	-
감소	(22,157)	-
감가상각비	(379,987)	(281,413)
기말	1,330,975	247,697

(3) 당기와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242,641	512,634
증가	1,456,182	-
감소	(21,957)	-
지급	(354,417)	(279,222)
이자비용	12,924	9,229
기말	1,335,373	242,641

(4) 당기와 전기 중 리스와 관련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건물	(364,466)	(265,891)
차량운반구	(15,522)	(15,522)
감가상각비 계	(379,988)	(281,413)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12,924)	(9,229)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	14,838	14,879
단기리스료	10,922	(1,933)

당기와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한 총 현금유출은 343,495천원 및 281,155천원입니다.

(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가 지급할 최소리스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리스기간	최소리스료	조정액	현재가치
1년이내	528,044	(23,934)	504,110
1년초과 5년이내	847,168	(15,905)	831,263
합계	1,375,212	(39,839)	1,335,373

<전기>

(단위 : 천원)

리스기간	최소리스료	조정액	현재가치
1년이내	235,222	(2,804)	232,418
1년초과 5년이내	10,330	(107)	10,223
합계	245,552	(2,911)	242,641

1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유동 :		
매입채무	804,767	128,994
미지급금	495,840	136,094
미지급비용	226,268	443,454
합계	1,526,875	708,542

13. 차입금

(1)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차입처	만기일		당기	전기
단기차입금 :					
운전자금일반대출	우리은행(*1)	2022.03.04	2.60%	500,000	-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1)	2022.03.04	2.05%	500,000	-
소계				1,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운전자금일반대출	우리은행(*1)	2022.04.29	2.63%	200,000	2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1)	2022.04.22	1.50%	200,000	2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1)	-	2.18%	-	600,000
소계				400,000	1,000,000
합계				1,400,000	1,000,000

(*1) 당기말 현재 회사는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29 참조).

(2) 장기차입금

1)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차입처	만기일	연이자율	당기	전기	상환방법
운전자금일반대출	우리은행(*1)	2023.04.28	3.35%	500,000	500,000	만기일시상환

(*1) 당기말 현재 회사는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29 참조).

2) 장기차입금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1년이내	-
1년초과 2년이내	500,000
합계	500,000

14. 종업원급여

(1)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2,720,446	1,703,920
상여금	65,000	317,611
복리후생비	567,367	384,944
확정기여제도에 의한 납부	210,677	133,268
주식보상비용	652,634	303,730
합계	4,216,124	2,843,473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종업원급여관련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미지급비용	443	12,499
유급휴가부채	79,168	81,741

15.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복구충당부채
충당부채변동내용 :	
기초	-
설정	213,938
이자비용	1,497
감소	(4,100)
환입	(517)
기말 :	
유동성	-
비유동성	210,818

16. 기타부채

(1)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타유동부채 :		
예수금	35,102	13,724
부가세예수금	109,433	214,995
합계	144,535	228,719

17. 전환사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종류	차 수	발행일	보장수익율	당기말	전기말
전환사채	1차	2019-07-05	3%	-	2,000,000
상환할증금				-	185,454
전환권조정				-	(338,122)
합 계				-	1,847,332

(2) 전기말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1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일	2019-07-05
만기일	2022-07-05
권면총액	2,000,000,000
액면이자율	-
만기보장수익률	3%
원금상환	만기에 원금의 109.273%를 일시상환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또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비율	100%
전환청구가능기간	발행 후 6개월부터 만기전까지
전환가액	24,700원/주
전환가액조정	주식분할, 병합 등에 의한 조정만 가능

(*) 전환사채는 2021년 5월11일 전액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3)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일반적인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액 조정 이외 행사가액에 대한 조정 조건이 없으므로 발행시점의 전환권 대가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최초 인식시점 이후의 공정가액 변동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일반사채의 현재가치)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전환사채발행금액	-	2,000,000
전환권대가(자본)	-	(440,042)
발생이자	-	287,374
장부가액	-	1,847,332

(5) 당기 및 전기의 전환사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전환사채발행금액	2,000,000	-	(2,000,000)	-
전환권대가(자본)	(440,042)	-	440,042	-
발생이자	287,374	74,517	(361,891)	-
합 계	1,847,332	74,517	(1,921,849)	-

②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전환사채발행금액	2,400,000	-	(400,000)	2,000,000
전환권대가(자본)	(528,050)		88,008	(440,042)
발생이자	108,898	211,963	(33,487)	287,374
합 계	1,980,848	211,963	(345,479)	1,847,332

18. 전환상환우선주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종류	차 수	발행일	보장수익율	당기말	전기말
전환상환우선주	1회차	2020-07-01	5%	-	2,699,904
	2회차	2020-07-31	5%	-	2,299,849
	3회차	2020-08-28	5%	-	99,992
할인발행차금				-	(5,264)
상환할증금				-	1,733,352
전환권조정				-	(3,221,654)
합 계				-	3,606,179

(2) 전기말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주요 발행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환상환우선주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발행주식수	60,672주	51,682주	2,247주
주당 발행가액	44,500원	44,500원	44,500원
발행일	2020-07-01	2020-07-31	2020-08-28
발행가액	2,699,904,000원	2,299,849,000원	99,991,500원
우선배당	1%	1%	1%
전환청구기간	발행일의 익일부터 10년내 전환가능		
전환가액	44,500원	44,500원	44,500원
전환가액의 조정	주식분할, 병합 등에 의한 조정만 가능	1) IPO 공모가의 70% 또는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타법인의 인수 및 합병 시 주식평가액의 70%가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70%로 조정 2)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비례적으로 조정 3) 합병, 주식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주식분할, 병합 등에 의한 조정만 가능
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청구 가능		

상환가액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해 투자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복리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 단, 본건 우선주식 거래완결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함

(*) 2회차 전환상환우선주는 2021년 1월 25일 전액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1회차 및 3회차 전환상환우선주는 2021년 5월 11일 전액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3)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중 1회차, 3회차 전환상환우선주는 일반적인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액 조정 이외 전환가액에 대한 조정 조건이 없으므로 발행시점의 전환권 대가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최초 인식시점 이후의 공정가액 변동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회차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권대가는 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행시점 전환권 대가를 파생금융부채로 분류하였으며, 회계연도말 파생금융부채를 재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의 부채요소(일반사채의 현재가치)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전기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합계
전환사채발행금액	2,697,118	2,297,475	99,888	5,094,481
전환권대가	(177,623)	(1,473,025)	(6,771)	(1,657,419)
발생이자	109,826	56,482	2,809	169,117
장부가액	2,629,321	880,932	95,926	3,606,179

(5) 당기와 전기 중 전환상환우선주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상각	당기말
전환사채발행금액	5,094,481	-	(5,094,481)	-
전환권대가	(1,657,419)	-	1,657,419	-
발생이자	169,117	90,422	(259,539)	-
합 계	3,606,179	90,422	(3,696,601)	-

②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상각	전기말
전환사채발행금액	-	5,094,481	-	5,094,481
전환권대가	-	(1,657,419)	-	(1,657,419)
발생이자	-	169,117	-	169,117
합 계	-	3,606,179	-	3,606,179

19.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발행할주식의 총수	100,000,000주	100,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수	8,580,985주	456,000주
보통주자본금	4,290,492,500	228,000,000

2)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일자	증감주식수	주당발행금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전기>					
기초	2020.1.1	456,000	-	-	-
기말	2020.12.31	456,000	500	-	-
<당기>					
기초	2021.1.1	456,000			
전환상환우선주전환	2021.1.25	51,682	500	25,841,000	2,417,469,344
전환사채전환	2021.5.11	80,971	500	40,485,500	1,881,363,099
전환상환우선주전환	2021.5.11	62,919	500	31,459,500	3,399,784,455
유상증자	2021.7.30	48,915	500	24,457,500	4,472,506,500
무상증자	2021.8.19	6,304,383	500	3,152,191,500	(3,199,932,040)
유상증자	2021.9.13	652,200	500	326,100,000	5,665,967,660
유상증자	2021.11.18	923,915	500	461,957,500	8,026,868,320
기말	2021.12.31	8,580,985			

(2)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주식발행초과금	22,664,027	-
자기주식처분이익	2,226,709	-
합 계	24,890,736	-

2)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발행초과금	-	22,664,027	-	22,664,027
자기주식처분이익	-	2,226,709	-	2,226,709
합계	-	24,890,736	-	24,890,736

20. 기타자본

(1)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주식선택권	1,156,755	504,121
전환권대가	-	624,435
자기주식	(94,888)	(282,150)
합계	1,061,867	846,406

(2) 기타자본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선택권	504,121	652,634	-	1,156,755
전환권대가	624,435	-	(624,435)	-
자기주식	(282,150)	-	187,262	(94,888)
합계	846,406	652,634	(437,173)	1,061,867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선택권	200,391	303,730	-	504,121
전환권대가	528,050	96,385	-	624,435
자기주식	-	(282,150)	-	(282,150)
합계	728,441	117,965	-	846,406

(3) 자기주식

자사주식의 가격안정과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시 발행한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식을 시가로 취득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기초	550,000	(282,150)	-	-
취득	-	-	550,000	(282,150)
처분	(365,033)	187,262	-	-
기말	184,967	(94,888)	550,000	(282,150)

(4) 주식기준보상제도

1)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식선택권 1차	주식선택권 2차	주식선택권 3차	주식선택권 4차	주식선택권 5차
부여일	2019년 04월 16일	2020년 04월 01일	2021년 04월 01일	2021년 06월 21일	2021년 10월 01일
최초부여수량	300,000주	403,000주	333,000주	142,000주	191,000주
취소수량	40,000주	182,000주	16,000주	47,000주	6,000주
현재잔여수량	260,000주	221,000주	317,000주	95,000주	185,000주
부여방법	신주발행				
행사가격(원)	50원	2,470원	2,650원	2,650원	5,810원
가득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 이후로써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행사기간	가득일로 부터 2년 이내				

(*)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2) 보상원가의 산정
회사가 산정한 보상원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식선택권 1차	주식선택권 2차	주식선택권 3차	주식선택권 4차	주식선택권 5차
옵션가격결정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주식선택권 부여일 시점의 주식가치	1,932원	2,236원	5,003원	5,058원	8,813원
무위험이자율	1.85%	1.33%	1.49%	1.57%	1.88%
예상주가변동성	45.48%	46.65%	44.88%	42.73%	42.88%
주당 보상원가	1,885원	771원	2,883원	2,896원	4,413원

(*)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3) 주식선택권의 수량
당기 중 회사가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식선택권 1차	주식선택권 2차	주식선택권 3차	주식선택권 4차	주식선택권 5차
기초 주식선택권	300,000	403,000	333,000	142,000	191,000

취소된 주식선택권	(40,000)	(182,000)	(16,000)	(47,000)	(6,000)
행사된 주식선택권	-	-	-	-	-
기말 주식선택권	260,000	221,000	317,000	95,000	185,000
기말 행사가능 주식선택권	260,000	221,000	317,000	95,000	185,000

(*)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4) 주식기준보상원가
주식선택권의 부여로 인하여 전기 및 당기 중 인식된 보상원가 및 당기말 이후에 인식될 잔여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주식선택권 1차	주식선택권 2차	주식선택권 3차	주식선택권 4차	주식선택권 5차	합계
전기까지 인식한 보상원가	419,093	85,028	-	-	-	504,121
당기에 인식한 총보상원가	71,078	64,031	343,030	72,725	101,771	652,635
잔여보상원가	-	21,227	570,881	202,348	714,634	1,509,090
총보상원가	490,171	170,286	913,911	275,073	816,405	2,665,846

21. 영업수익

(1) 영업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사업계열 :		
미디어서비스매출	22,276,035	13,993,497
수익인식시기 :		
한 시점에 이행	22,017,735	13,993,497
기간에 걸쳐 이행	258,300	-
소계	22,276,035	13,993,497

(2) 계약잔액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계약자산	-	-
계약부채	788,175	1,429,190

가격이 확정된 계약에서 고객은 지급일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용역이 지급액을 초과하면 계약자산을 인식하고 지급액이 제공된 용역을 초과하면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전기말 인식된 계약부채 중 1,429,190천원은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되었으며 전기에 이행한

수행의무에 대해 당기에 인식된 수익은 없습니다.

(3) 당기말 현재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한 주요 용역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외화, 천원)

구분	총계약금액	누적수익	계약자산		매출채권		계약부채
			총액	손실충당금	총액	손실충당금	
프로젝트A	CNY 22,500,000	258,300	-	-	1,046,475	-	788,175

당기말 현재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한 용역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매출액의 5%이상인 주요 계약은 없습니다.

22. 영업비용

영업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외주제작비	10,544,460	7,631,796
급여	2,720,446	1,747,705
상여금	65,000	317,611
퇴직급여	210,677	133,268
복리후생비	567,367	384,944
주식보상비용	652,634	303,730
세금과공과	141,329	95,998
지급임차료	93,620	1,933
지급수수료	1,155,114	401,879
감가상각비	1,023,524	516,229
연구인력개발비	194,235	-
대손상각비	27,180	-
광고선전비	176,874	34,899
판매촉진비	39,575	-
무형자산상각비	250,066	185,672
소모품비	87,294	142,209
보험료	81,063	64,640
접대비	25,719	11,849
여비교통비	60,453	138,027
수도광열비	28,702	23,992
통신비	12,142	6,144
기타	104,591	38,081

합계	18,262,065	12,180,606

23.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이자수익-보증금	14,838	14,879
외환차익	18,359	406
외화환산이익	55,896	261
복구충당부채환입	517	-
잡이익	1,862	37,802
합계	91,472	53,348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이자비용	12,924	9,229
외환차손	8,381	19,463
외화환산손실	36	463
유형자산폐기손실	1,009	-
기부금	1,000	-
잡손실	34,682	25,556
합계	58,032	54,711

24.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이자수익	6,290	2,614
배당금수익	645	-
외환차익	103,737	-
외화환산이익	41,318	428
사채상환이익	-	33,48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324	-

합계	152,314	36,529

(2)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이자비용	216,462	424,283
외환차손	2,317	-
외화환산손실	-	13,797
파생상품평가손실	-	80,49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526	-
합계	219,305	518,573

25.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법인세부담액	787,097	219,492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8,415)	(244,299)
세무상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75,867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628,046)	-
법인세비용(수익)	216,503	(24,807)

(2)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자기주식처분이익	(628,046)	-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3,980,419	1,329,484
적용세율(22%)에 따른 법인세	875,692	292,486
조정사항 :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164,216	1,478,679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액	16,123	-
비과세수익으로 인한 효과	(17,223)	(1,291,533)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75,867	(255,721)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978,661)	(282,085)
기타	80,489	33,367
법인세비용(수익)	216,503	(24,807)
평균유효세율	5.44%	-

(4)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기말
전환사채	(152,668)	(152,668)	-	-
미수수익	161	423	-	(262)
미지급비용	94,240	14,629	-	79,611
사용권자산	(247,696)	1,083,278	-	(1,330,974)
임차보증금	13,747	(13,221)	-	26,968
리스부채	242,641	(1,092,732)	-	1,335,373
유가증권	-	324	-	(324)
감가상각비	-	(5,863)	-	5,863
복구충당부채	-	(24,755)	-	24,755
외화환산이익	-	97,214	-	(97,214)
외화환산손실	-	(36)	-	36
일시적차이 합계	(49,575)	(93,407)	-	43,832
이월세액공제	255,721	310,952	-	224,817
이연법인세자산	244,814	57,452	-	187,362

(주1)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기말
선급비용	2,338	(2,338)	-	-
전환사채	-	-	-	(152,668)
미수수익	-	(162)	-	162
미지급비용	-	(94,240)	-	94,240
사용권자산	-	247,696	-	(247,696)
임차보증금	-	(13,747)	-	13,747

리스부채	-	(242,641)	-	242,641
일시적차이 합계	10,627	(105,432)	-	(49,574)
이월세액공제	-	(255,721)	-	255,721
이연법인세자산	2,338	(242,476)	-	244,814

(5)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주식보상비용	956,364	303,730
미사용세액공제	-	237,133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회수(결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12개월 이내에 회수(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2,134	(10,907)
12개월 이후에 회수(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185,228	255,721
합계	187,362	244,814

(7) 회사는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6.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기본주당순이익>		
보통주당기순이익	3,763,916,757	1,354,291,18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484,902주	4,301,530주
기본주당이익	580	315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분	당기	전기
발행주식수	4,560,000	4,560,000

전환사채전환	521,320	-
전환상환우선주전환	887,932	-
유상증자	515,650	-
자기주식의 취득	-	(258,47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484,902	4,301,530

(*) 당기에 발생한 무상증자 효과를 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시 반영하였습니다.

(2) 희석주당이익

1)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3,912,461,909	1,603,900,846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7,658,595주	5,447,540주
희석주당이익	511	294

2)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보통주당기순이익	3,763,916,757	1,354,291,186
가산 :		-
전환사채이자비용	58,123,194	-
전환상환우선주이자비용	90,421,958	169,116,955
전환상환우선주 파생상품평가손실	-	80,492,705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3,912,461,909	1,603,900,846

3)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분	당기	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484,902	4,301,530
희석성잠재적보통주 :		-
전환사채 전환효과	288,390	1,146,010
전환상환우선주 전환효과	258,078	-
주식매수선택권 효과	627,225	-
합계	7,658,595	5,447,540

(*) 당기에 발생한 무상증자 효과를 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시 반영하였습니다.

4) 잠재적 보통주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주)

구분	청구기간	발행될보통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2021년 10월 1일 ~ 2023년 10월 1일	185,000

<전기>

(단위 : 주)

구분	청구기간	발행될보통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2021년 4월 16일 ~ 2022년 4월 1일	491,000

27.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주식보상비용	652,634	303,730
감가상각비	1,023,524	516,229
무형자산상각비	250,066	185,672
대손상각비	27,180	-
유형자산폐기손실	1,00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526	-
기타손상차손	71,263	-
파생상품평가손실	-	80,493
이자비용	229,386	433,513
외화환산손실	36	14,259
법인세비용	216,502	(24,807)
이자수익	(6,290)	(2,614)
이자수익-보증금	(14,838)	(14,87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324)	-
사채상환이익	-	(33,488)

외화환산이익	(97,214)	(689)
기타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1,499)	-
합계	2,351,961	1,457,419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채권의감소(증가)	(4,149,438)	(385,242)
미수금의감소(증가)	(24,231)	825
선급금의감소	(1,082,041)	(1,066,262)
선급비용의감소(증가)	(128,999)	26,271
매입채무의증가	675,737	128,994
미지급금의증가(감소)	359,747	(262,312)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216,612)	397,917
계약부채의증가	708,767	1,429,190
복구충당부채의감소	(4,100)	-
예수금의증가(감소)	21,378	(4,599)
부가세예수금의증가(감소)	(105,563)	67,284
합계	(3,945,355)	332,066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전환사채전환	1,921,849	-
전환상환우선주전환	5,250,119	-
장기차입금유동성대체	-	1,000,000
건설중인자산대체	614,581	-

(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기말
			취득	기타	
단기차입금	-	1,000,000	-	-	1,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000,000	(600,000)	-	-	400,000
장기차입금	500,000	-	-	-	500,000
리스부채	242,641	(354,417)	1,456,182	(9,033)	1,335,373

합계	1,742,641	45,583	1,456,182	(9,033)	3,235,373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기말
			취득	기타	
장기차입금	1,000,000	500,000	-	-	1,500,000
전환사채	1,980,848	(345,479)	-	211,963	1,847,332
리스부채	85,022	(43,158)	-	9,229	51,093
합계	3,065,870	111,363	-	221,192	3,398,425

28.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말 현재 회사의 최상위 지배자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윤준호입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3)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운영・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단기종업원급여	295,813	297,300
퇴직급여	24,651	24,775
주식기준보상	36,348	80,006
합계	356,812	402,081

29.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사용제한 금융자산

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종류	금융기관	당기	전기	사용제한내용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우리카드	20,000	20,000	질권설정

(2) 당기말 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및 담보는 없습니다.

(3)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내용

1)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보증기간	내용
기술보증기금	475,000	우리은행	2021.03.05 - 2022.03.04	대출보증
기술보증기금	475,000	중소기업은행	2021.03.05 - 2022.03.04	대출보증
기술보증기금	190,000	우리은행	2018.05.04 - 2022.04.29	대출보증
기술보증기금	180,000	중소기업은행	2019.04.22 - 2022.04.22	대출보증
기술보증기금	500,000	우리은행	2020.04.28 - 2023.04.28	대출보증
합계	1,820,000			

(4)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단위 : 천원)

구분	금융기관	한도약정액	미사용액
일반자금 대출약정	우리은행	1,200,000	-
일반자금 대출약정	기업은행	700,000	-
합계		1,900,000	

(5) 당기말 회사가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30. 영업부문

(1) 회사의 영업부문은 초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부문의 단일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회사 전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금액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천원)

구분	금액	비율
주요거래처(A)	3,305,165	14.8%
주요거래처(B)	2,790,614	12.5%
주요거래처(C)	2,272,100	10.2%
합계	8,367,879	37.6%

<전기>

(단위:천원)

구분	금액	비율
주요거래처(B)	2,443,151	17.5%
주요거래처(D)	700,000	5.0%
주요거래처(E)	885,000	6.3%
합계	4,028,151	28.8%

(3) 회사의 지역별 영업수익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주요 지리적 시장 :		
국내	18,228,066	13,568,019
해외	4,047,969	425,478
합계	22,276,035	13,993,497

31.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분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4,443,256	4,536,485
기타금융자산	60,373	60,050
매출채권,계약자산 및 기타채권	8,283,303	4,223,389

합 계	32,787,000	8,819,924

2) 유동성위험관리

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6개월이내	6개월~12개월	1년 이상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526,876	1,526,876	1,526,876	-	-
리스부채	1,335,373	1,375,212	145,000	383,044	847,168
차입금	1,900,000	1,930,899	1,416,941	8,375	505,583
합계	4,762,249	4,832,987	3,088,817	391,419	1,352,751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6개월이내	6개월~12개월	1년 이상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708,541	708,541	708,541	-	-
리스부채	242,641	245,552	139,611	95,611	10,330
차입금	1,500,000	1,524,938	1,014,021	6,550	504,367
전환사채	1,847,332	2,185,454	-	-	2,185,454
합계	4,298,514	4,664,485	1,862,173	102,161	2,700,151

3) 시장위험

회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관리

회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USD	53,813	(53,813)	34,219	(34,219)
EUR	450	(450)	2,194	(2,194)
JPY	-	-	241	(241)

CNY	256,890	(256,890)	-	-
합계	311,153	(311,153)	36,654	(36,654)

(나) 이자율위험관리

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차입금	1,900,000	1,300,000

이자율 1% 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1%상승	1%하락	1%상승	1%하락
이자비용	(19,000)	19,000	(13,000)	13,000

(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부채총계	7,953,909	11,308,691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24,443,256)	(4,536,485)
순부채	-	6,772,206
자본총계	36,504,089	3,571,483
순부채비율	-	189.6%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 52조(이익금의 처분), 제53조(이익배당), 제 54조 (중간배당), 제 5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등)를 아래와 같이 배당관련 규정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52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3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4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업연도중 1회의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제5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중 배당을 결의한 바가 없으며, 주요배당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2021년 (제5기)	2020년 (제4기)	2019년 (제3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당기순이익(백만원)	3,764	1,354	688
주당순이익(원)	580	315	151
현금배당금총액(원)	-	-	-
주식배당금총액(원)	-	-	-
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주식배당수익률(%)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주1) 상기 주당순이익의 계산은 기간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 14일(1주당 3주) 및 2021년 8월 19일(1주당 9주) 실시한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 수 증가 영향을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다. 과거 배당 이력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주, 원)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주1) 당사는 과거 배당 이력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 이익참가부사채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및 감소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원)

주식발행 (감소) 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가액	비고
2017-08-30	설립자본금	보통주	114,000	500	500	설립자본금
2017-11-14	유상증자	전환상환우선주	55,000	500	10,200	제3자배정
2019-03-14	우선주 상환	전환상환우선주	(55,000)	500	10,200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2019-03-14	무상증자	보통주	342,000	500	500	1주당 3주 무상증자
2020-07-01	유상증자	전환상환우선주	60,672	500	44,500	제3자배정
2020-07-31	유상증자	전환상환우선주	51,682	500	44,500	제3자배정
2020-08-28	유상증자	전환상환우선주	2,247	500	44,500	제3자배정
2021-01-25	전환권 행사	전환상환우선주	(51,682)	500	-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	51,682	500	-	보통주전환
2021-05-11	전환권 행사	전환상환우선주	(62,919)	500	-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	62,919	500	-	보통주전환
2021-05-11	전환사채 보통주전환	보통주	80,971	500	24,700	전환사채 보통주전환
2021-07-30	유상증자	보통주	48,915	500	92,000	제3자배정
2021-08-19	무상증자	보통주	6,304,383	500	500	1주당 9주 무상증자
2021-09-11	유상증자	보통주	652,200	500	9,200	제3자배정
2021-11-18	유상증자	보통주	923,915	500	9,200	제3자배정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채 발행 관련 미상환 잔액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공모자금의 조달 내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차	발행 일자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 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 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17-11-14	운영자금	561	운영자금	561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20-07-01	운영자금	2,700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신사업투자	2,700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20-07-31	운영자금	2,300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신사업투자	2,300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20-08-28	운영자금	100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신사업투자	100	-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2021-05-11	운영자금	2,000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신사업투자	2,000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21-07-30	운영자금	4,500	운영자금	4,500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21-09-11	운영자금	6,000	운영자금	6,000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21-11-18	운영자금	8,500	운영자금	2,969	주1)

주1) 상기 미집행 자금은, 향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 구입 등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기 미집행 자금은 안정성이 높은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종류	금융상품명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예・적금	보통예금(우리은행)	5,531	-	2021.11.17~현재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과거기간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로 개시되는 2020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비교표시된 전전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자산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및 추정내용연수를 변경하였습니다.

2) 사용권자산/리스부채

당사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단기리스 또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않을 경우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총액 표시한 후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당기비용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자산부채 증감 및 손익 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3) 법인세효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반영하였습니다.

4) 금융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5) 주식보상비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를 반영하였습니다.

6) 이 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연차수당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나) 과거회계기준으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정

1) 2019년 1월 1일(전환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차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과거회계기준	전환효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자 산			
Ⅰ.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103,500	-	1,103,500
매출채권	459,862	-	459,862
기타유동채권	568,156	-	568,156
기타유동금융자산	20,000	-	20,000
기타유동자산	3,532	-	3,532
Ⅱ.비유동자산	-	-	-
기타비유동채권	95,700	(5,657)	90,043
유형자산	74,531	130,395	204,926
무형자산	4,426	-	4,426
이연법인세자산	-	251	251
자 산 총 계	2,329,707	124,989	2,454,696
부 채			
Ⅰ.유동부채			
기타유동채무	58,739	24,525	83,264
유동리스부채	-	68,174	68,174
기타유동부채	166,497	-	166,497
당기법인세부채	42,992	-	42,992
Ⅱ.비유동부채	-	-	-
장기차입금	200,000	-	2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577,500	-	577,500
장기리스부채	-	57,764	57,764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171,000	171,000
부 채 총 계	1,045,728	321,463	1,367,191
자 본			
자본금	84,500	-	84,500
자본잉여금	533,500	-	533,500
기타자본	-	390,000	390,000
이익잉여금	665,979	(25,474)	640,505
자 본 총 계	1,283,979	(196,474)	1,087,505
부채및자본총계	2,329,707	124,989	2,454,696

2)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차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과거회계기준	전환효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자 산			
Ⅰ.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73,249	840	574,089
매출채권	3,206,212	(4,419)	3,201,794
기타유동채권	825	-	825
기타유동금융자산	20,000	-	20,000
기타유동자산	611,659	15,463	627,122
Ⅱ.비유동자산	-	-	-
기타비유동채권	649,640	(28,626)	621,014
유형자산	369,095	529,110	898,205
무형자산	338,751	-	338,751
이연법인세자산	-	514	514
자 산 총 계	5,769,431	512,882	6,282,314
부 채			
Ⅰ.유동부채			
기타유동채무	405,105	37,956	443,062
유동리스부채	-	269,993	269,993
기타유동부채	166,034	-	166,034
당기법인세부채	80,510	-	80,510
Ⅱ.비유동부채	-	-	-
장기차입금	1,000,000	-	1,000,000
전환사채	2,400,000	(419,152)	1,980,848
장기리스부채	-	242,641	242,641
부 채 총 계	4,051,650	131,438	4,183,088
자 본			
자본금	255,500	(27,500)	228,000
자본잉여금	362,500	(362,500)	-
기타자본	-	728,441	728,441
이익잉여금	1,099,781	43,004	1,142,785
자 본 총 계	1,717,781	381,445	2,099,226
부채및자본총계	5,769,431	512,883	6,282,314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 - 2. 중요한 회계정책'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2021년 (제5기)	매출채권	7,792,169	27,180	0.35%
	합계	7,792,169	27,180	0.35%
2020년 (제4기)	매출채권	3,586,835	-	0.00%
	합계	3,586,835	-	0.00%
2019년 (제3기)	매출채권	3,201,794	-	0.00%
	합계	3,201,794	-	0.00%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주식회사 포바이포 (단위 : 천원)

구분	2021연도 (제5기)	2020연도 (제4기)	2019연도 (제3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27,180)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27,180)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7,180)	-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미연체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계
금액	일반	5,227,055	2,565,114	-	-	-	7,792,169
	특수관계자	-	-	-	-	-	-
	계	5,227,055	2,565,114	-	-	-	7,792,169
구성비율		67.08%	32.92%	-	-	-	100.00%

다. 재고자산 현황

당사는 영상 콘텐츠 제작 등(용역)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기타 사업부문의 영향이 적어 재고자산 현황 등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수주잔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거래 상대방(글로벌 가전사, 광고대행사 등)과의 영업과 관련된 기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객사의 비공개 신제품 관련 프로젝트 등)

이에 증권신고서에 수주계약 현황을 기재하여야 하나 상기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추후 언론과의 인터뷰, 공시 등의 기타의 방법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공정가치 평가 내역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40,373	40,373	40,050	40,050
합계	40,373	40,373	40,050	40,050

<금융부채>				
전환사채	-	-	1,847,332	1,847,332
전환상환우선주	-	-	3,606,179	3,606,179
파생상품부채	-	-	1,553,518	1,553,518
합계	-	-	7,007,029	7,007,029

주1) 상기 기재사항 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2021연도 (제5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1연도 3분기 (제5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1연도 반기 (제5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0연도 (제4기)	이촌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감사용역 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5기	삼덕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60	-	60	262
		3분기 재무제표 감사	80	-	80	222
		반기 재무제표 감사	135	-	135	664
제4기	이촌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40	-	40	303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당사는 2020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과 아래와 같은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법인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보수	비고
이촌 회계법인	2021.02.03	2020년 세무조정	2021.02.03.~2021.03.31	5	-
	2021.07.19.	2021년 회계자문	2021.07.19.~2022.03.14	100	-
	2021.08.05.	2021년 세무조정	2021.08.05.~2022.03.31	12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1년 07월 23일	감사인, 감사, 대표이사	대면 및 서면	온기 감사 계획
2	2021년 07월 25일	감사인, 감사, 대표이사	서면회의	3분기 감사 계획
3	2021년 07월 25일	감사인, 감사, 대표이사	서면회의	반기 감사 계획
4	2021년 10월 29일	감사인, 감사, 대표이사	대면 및 서면	반기 감사 종료사항 보고
5	2021년 11월 26일	감사인, 감사, 대표이사	대면 및 서면	3분기 감사 결과
6	2022년 03월 02일	감사인, 감사, 대표이사	대면 및 서면	온기 감사 결과

마. 조정협의회 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2021년 6월 14일 삼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받았고 2021년 7월 12일 삼덕회계법인과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 유효성 감사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회사가 작성, 공시하는 회계정보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2021년 07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12월 한미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성실하게 운영실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 등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사 정관에 근거하여 윤준호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1	1	-	-

주1) 당사는 2021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재문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3)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34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10조 (결의방법)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의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의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직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보수 기밀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의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9.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 등기임원의 이사회 참석 여부 및 의사결정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사내이사				
				조재문 (출석률: 90%)	윤준호 (출석률: 100%)	오준명 (출석률: 100%)	이용길 (출석률: 100%)	김일균 (출석률: 100%)	정민희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1-01	2021.01.25	- 상환전환우선주식 보통주 전환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
21-02	2021.02.10	-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1-03	2021.03.08	- 일반자금대출 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1-04	2021.03.16	-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1-05	2021.03.19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일부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1-06	2021.04.0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예정 진행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07	2021.05.12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승인/보고의 건 - 전환사채 출자 전환 승인/보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08	2021.06.04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09	2021.06.25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10	2021.07.19	- 신주식(보통주식) 발행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21-11	2021.07.27	- 내부회계관리 규정 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12	2021.08.12	-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21-13	2021.08.27	- 신주식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14	2021.09.13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본점 이전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15	2021.09.2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진행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16	2021.10.13	- 노사협의회규정 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17	2021.11.01	- 삼성디스플레이 물품대금 관련 대출 약정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18	2021.11.02	-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19	2021.11.19	- 자기주식 처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20	2021.11.26	- 코스닥 상장 추진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21	2021.12.08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2-01	2022.02.16	-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2-02	2022.03.03	- 정기주주총회 일정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2-03	2022.03.10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2-04	2022.03.21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당사는 상장 이후 「상법」 제542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및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 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충실히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설립 이후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에 의해 당사의 이사선임 의안이 제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정관에 의거하여 의장을 맡습니다. 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 충족 시 결의됩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주주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본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담당분야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	임기	연임여부 (회수)
대표이사	윤준호	경영총괄	주주총회	없음	없음	3년	2
사내이사	김일균	재무총괄	주주총회	없음	없음	3년	-
사내이사	정민희	신사업총괄	주주총회	없음	없음	3년	-
사외이사	조재문	사외이사	주주총회	없음	없음	3년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또한, 이사회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 경영 감독과 자문을 위해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사외이사 지원 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경영전략본부 IR전략팀	3	CFO(1년) 외 2명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 여부 및 구성방법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이정인)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경력	결격요건여부	비고
이정인	- 한국공인회계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10) - 삼정KPMG 회계사('09~'15) - 영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15~'20) - 바름회계법인 이사('20~현재) - 포바이포 감사('21~현재)	미해당	비상근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당사의 지원부서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하여 감사직무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감사 직무규정 및 정관 상에서 감사가 감사업무 수행 필요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46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신청을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내부감사규정	
제6조 (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7조 (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신청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신청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회사 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의 실시방법)	감사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일상감사 가. 일상감사는 회사의 업무 중 감사가 정한 일정 범위의 업무와 중요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건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종합감사 가. 종합감사는 본부·공장 등 사업장 단위별로 업무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나.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경영, 업무, 재무, 준법,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기능별 업무수행체계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13조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제13조(부정행위 발생 시 대응) ① 감사는 회사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등 중요 회의에의 출석)	① 감사는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사회,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 (문서 등의 열람)	① 감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② 감사가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③ 감사는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제37조 (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①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21-06	2021.04.0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예정 진행 취소의 건	가결	-
21-07	2021.05.12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승인/보고의 건 - 전환사채 출자 전환 승인/보고의 건	가결	-
21-08	2021.06.04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1-09	2021.06.25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
21-11	2021.07.27	- 내부회계관리 규정 제정의 건	가결	-
21-13	2021.08.27	-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
21-14	2021.09.13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본점 이전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
21-15	2021.09.2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진행 취소의 건	가결	-
21-16	2021.10.13	- 노사협의회규정 제정의 건	가결	-
21-17	2021.11.01	- 삼성디스플레이 물품대금 관련 대출 약정 체결의 건	가결	-
21-18	2021.11.02	-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건	가결	-
21-19	2021.11.19	- 자기주식 처분의 건	가결	-
21-20	2021.11.26	- 코스닥 상장 추진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의 건	가결	-
21-21	2021.12.08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
22-01	2022.02.16	-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
22-02	2022.03.03	- 정기주주총회 일정 변경의 건	가결	-
22-03	2022.03.10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
22-04	2022.03.21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

마. 감사 교육 실시 계획 및 현황

당사의 감사는 회계와 업무 감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기 실시된 교육 현황은 없습니다. 향후 필요 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경영전략본부	2	CFO(1년) 외 1명	이사회 운영 및 감사 직무수행과

Compliance & Global strategy팀			관련된 지원 업무 일체
경영관리본부	5	본부장(2년) 외 4명	

사. 준법지원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 정관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정관 제32조 (이사의 선임)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8,580,985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84,967	자기주식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8,396,018	-
	우선주	-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자기주식수 184,967주는 금번 공모 시 전량 구주매출 예정입니다.

마. 주식사무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정관상 주식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결산기

주주명부폐쇄시기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2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권의 종류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방법 (공고게재신문)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4by4inc.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의안내용	결의내용	비고
2018.01.26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목적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18.03.23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2017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18.06.20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18.06.20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대여금 지급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18.06.28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18.10.31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신설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18.12.28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부담금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19.02.12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19.03.13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19.04.16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옵션 투자옵션부보증을 통한 자금차입 및 투자옵션계약의 건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19.04.16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행사기간 수정)	원안대로 가결	-
2019.07.03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19.11.04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20.01.14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20.03.30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20.06.04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20.08.14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21.03.31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7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21.06.21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21.09.29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코스닥 상장을 위한 표준정관으로의 전면 개정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22.01.06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022.03.21	정기주주총회	제 1호 의안 : 제5기(2021.01.01 ~ 20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2022.01.01)		기말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윤준호	본인	보통주	2,850,280	33.22%	2,850,280	33.22%	본인
김일균	특수관계인	보통주	79,000	0.92%	79,000	0.92%	등기임원
정민희	특수관계인	보통주	52,000	0.61%	52,000	0.61%	등기임원
합계			2,981,280	34.75%	2,981,280	34.75%	-

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성명	직책명	약 력	비고
윤준호	대표이사	-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 학사('09) - CJ파워캐스트 Art&Tech 슈퍼바이저('09~'14) -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미디어개발실장('14~'17) - 포바이포 대표이사('17~현재)	-

(2)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주식의 분포

(1)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윤준호	2,850,280	33.22%	최대주주
	비에이피제2호 퍼스트펭귄투자조합	854,650	9.96%	벤처금융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543,480	6.33%	일반법인
	UI벤처투자조합5호	449,430	5.24%	벤처금융
우리사주조합		-	-	-

(2)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주주수	전체주주수	비율(%)	소액주식수	총발행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21	38	55.26%	809,723	8,396,018	9.64%	-

주1)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주2)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자기주식 184,967주는 전체 주주 수 및 총발행주식수 산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마.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윤준호	남	1983.02.	대표이사	등기	상근	경영총괄, CEO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 학사('09) CJ파워캐스트 Art&Tech 슈퍼바이저('09~'14)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미디어개발실장('14~'17) 포바이포 대표이사('17~현재)	2,850,280	-	본인	4년 4개월	2023.08.13
김일균	남	1986.06.	사내이사	등기	상근	전략기획, CFO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12)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11~'14) IBK투자증권 IB부문 IPO팀('15~'17) 삼성증권 IB부문 IPO2팀('17~'21) 포바이포 경영전략본부장('21~현재)	79,000	-	해당사항 없음	6개월	2025.03.20
정민희	여	1982.12.	사내이사	등기	상근	키컷스톡 사업총괄	호서대학교 해외개발학과('07) 디지털존 해외마케팅 차장('06~'17)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콘텐츠큐레이션('17) 포바이포 키컷스톡 사업본부장('17~현재)	52,000	-	해당사항 없음	4년 4개월	2025.03.20
박경선	여	1975.09	본부장	미등기	상근	경영관리	충북대학교 회계학 학사('99) 상록회계법인('03~'06) 메리트세무법인('08~'11) 유텍스세무회계('11~'14)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본부장('14~'19) 엔진비주얼웨이브 본부장('19~'20) 포바이포 경영관리본부장('20~현재)	-	-	해당사항 없음	1년 4개월	-
조재문	남	1961.08.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경영자문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84) KAIST 전기전자공학과 석사('86), 박사('91) 삼성전자 신호처리연구소 수석연구원('00) 삼성전자 DMC 연구소 상무('01~'11)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부사장('11~'16) - 삼성펠로우 2회 선임(신호처리분야) 퍼스트스텝랩스 대표이사(('21~현재) 포바이포 사외이사('21~현재)	-	-	해당사항 없음	11개월	2024.03.31
이정인	남	1981.04.	감사	등기	비상근	감사	한국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10) 삼정KPMG 회계사('09~'15) 영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15~'20) 바름회계법인 회계사('20~현재) 포바이포 감사('21~현재)	-	-	해당사항 없음	11개월	2024.03.31

나. 임원의 겸직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성명	당사직책	겸직회사명	겸직회사 직책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비 고
조재문	사외이사	퍼스트스텝랩스(유)	대표이사	경영총괄	21.02~현재	-

다. 직원 등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소속외 근로자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남	여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사	남	37	-	-	-	37	1년 10개월	1,635	44	-	-	-	-
	여	44	-	-	-	44	1년 4개월	1,336	30	-	-	-	-
합 계		81	-	-	-	81	1년 6개월	2,971	37	-	-	-	-

주1) 사내이사(등기),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를 제외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연간 급여총액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금액입니다.

주3) 평균급여액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 총액을 전체 직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라. 미등기임원의 보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명, 천원)

구분	인원수	연간급여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1	101,965	101,965	-

주1) 연간급여총액 및 1인당 평균 급여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지급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감사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4	1,000	-
감사	1	100	-

(2) 보수지급금액

(가) 이사・감사 전체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명,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비고
5	306	61	-

주1) 보수총액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한 총액 기준이며, 1인당 평균 보수액은 보수총액을 등기임원의 수로 단순 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나) 유형별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명,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제외)	3	297	99	-
사외이사	1	9	9	-
감사	1	-	-	-

주1) 보수총액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한 총액 기준이며, 1인당 평균 보수액은 보수총액을 등기임원의 수로 단순 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당사는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 보수의 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각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1) 이사・감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천원)

구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주1)	비고 (주2)
등기이사	3	82,023	-
사외이사	1	3,828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	-
계	5		-

주1) 공정가치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에 적용되는 이항모형을 사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주2) 공정가치 산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부여받은 자	관계	부여일	부여 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 변동수량		총 변동수량		기말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행사	취소	행사	취소			
정민희	등기임원	19.04.16	신주발행	보통주	40,000	-	-	-	-	40,000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이후 2년간	50
기타 8명	직원				260,000	-	-	-	40,000	220,000		
소계					300,000	-	-	-	40,000	260,000	-	-
기타 34명	직원	20.04.01	신주발행	보통주	403,000	-	-	-	182,000	221,000	2022.04.01 ~ 2024.03.31	2,470
소계					403,000	-	-	-	182,000	221,000	-	-
정민희	등기임원	21.04.01	신주발행	보통주	21,000	-	-	-	-	21,000	2023.04.01 ~ 2025.03.31	2,650
박경선	미등기임원				100,000	-	-	-	-	100,000		
기타 44명	직원				212,000	-	-	-	16,000	196,000		
소계					333,000	-	-	-	16,000	317,000	-	-
정민희	등기임원	21.06.21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	-	10,000	2023.06.21 ~ 2025.06.20	2,650
조재문	사외이사				5,000	-	-	-	-	5,000		
기타 20명	직원				127,000	-	-	-	47,000	80,000		
소계					142,000	-	-	-	47,000	95,000	-	-

김일균	등기임원	21.10.01	신주발행	보통주	74,000	-	-	-	-	74,000	2023.10.01 ~ 2025.09.30	5,810
기타 37명	직원				117,000	-	-	-	8,000	109,000		
소계					191,000	-	-	-	8,000	183,000	-	-
정민희	등기임원	22.01.06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	-	10,000	2024.01.06 ~ 2026.01.05	5,810
김일균	등기임원				16,000	-	-	-	-	16,000		
기타 61명	직원				183,100	-	-	-	2,000	181,100		
소계					209,100	-	-	-	2,000	207,100	-	-
합계					1,578,100	-	-	-	295,000	1,283,100	-	-

주1) 총 변동수량의 취소는 직원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여취소 수량입니다.

주2)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2021년 8월 19일 무상증자(1주당 9주)가 반영된 행사가격과 행사수량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계열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계열회사간 계통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 현황

당사의 윤준호 대표이사는 과거 주소변경 등기해태의 사유로 「상법」 제635조에 의거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100,000원을 처분받아 납부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조사기관	종류	위반사항	위반사항 발생일	위반기간	사후관리 사항	과태료 등 처분사항	근거 법령
인천지방법원	상법 위반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해태	2018.03.22	해태기간: 9개월 27일	등기 정정	대표이사 과태료 100,000원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당시 대표이사 및 당사 등기업무 처리 실무자 간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단순 실수로 등기사항 누락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업무 전문성을 갖춘 경영관리본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유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건 외에,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환경관련법률, 세무조사를 포함한 제반 법률 위반으로 회사 또는 경영주가 징계 또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연도	2020.01.01 ~ 2020.12.3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주식회사 포바이포
			사업자등록번호	712-87-00690

구분		①요 건	②검 토 내 용	③적합 여부	④적정 여부
중기업	⑩1 사업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 업태별 | 기준경비율코드 | 사업수입금액 (01) (정보통신업)업 | (04) 921501 | (07) 13,993,496,988 (02) ( )업 | (05) | (08) (03) 그밖의 사업 | (06) | (09) 계 | | 13,993,496,988	(17) 적 합 (Y) 부적합 (N)	(26)
	⑩2 규모요건	○아래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봄) 이내일 것 ②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출액 - 당 회사 (10) (139.9 억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11) (800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0.0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적 (Y)
	⑩3 독립성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⑩2의①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부 (N)
	⑩4 유예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사유발생 연도(13)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⑩5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⑩1)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⑩3)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 (Y)
	⑩6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 매출액 - 당 회사 (14) (139.9 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15) (50.0 억원) 이하	(22) (Y) (N)	부 (N)

210㎜X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table>
<tr><th>구분</th><th>①요 건</th><th>②검 토 내 용</th><th>③적합
여부</th><th>④적정
여부</th></tr>
<tr><td rowspan="3">중
견
기
업</td><td>㉠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td><td>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 ㉠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td><td>(23)
(Y) (N)</td><td rowspan="3">(28)
적
(Y)</td></tr>
<tr><td>㉡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td><t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td><td>(24)
(Y) (N)</td></tr>
<tr><td>㉢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억원 미만</td><td>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직전 3년 / 직전 2년 / 직전 1년 / 평 균
0.0 억원 / 0.0 억원 / 0.0 억원 / 0.0 억원</td><td>(25)
(Y) (N)</td><td>부
(N)</td></tr>
</table>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보호예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공모에 따라 예정된 보호예수 사항 이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호예수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계열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타법인 출자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